

2018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심사 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습니다.

2018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60년 만에 소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활성화하였습니다.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하여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였고, 귀화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다양화하여 국적취득 신청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와 영주권자 등 재한외국인이 국민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류민원서비스를 개선하였고, 농·어촌과 산업현장의 극심한 인력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숙련기능인력을 확대 배정하였으며, 외국인관광객, 우수 유학생과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출국금지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세금 체납 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제주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술포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난민법 개정 검토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익이 조화되는 난민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개정 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감이 직원들에게는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며, 국민들에게는 출입국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연감에 실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사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규 근

2019. 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CONTENTS

## 제1장 일반 사항

<b>제1절</b>	<b>기본 방향</b>	14
	제1항 정책 여건	14
	제2항 2018년 전략 목표	15
<b>제2절</b>	<b>비전과 미션</b>	16
<b>제3절</b>	<b>기구·인원 및 시설·예산</b>	18
	제1항 기구·인원	18
	제2항 인사	26
	제3항 시설·예산	36

##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b>제1절</b>	<b>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b>	40
	제1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시행	40
	제2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국가 확대	43
	제3항 출국금지제도 운영개선	44
	제4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출입국 제도개선	46
	제5항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안정적 운영	48
	제6항 출입국우대카드 전담추진체계 마련	49
	제7항 출입국자 현황	51
<b>제2절</b>	<b>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b>	54
	제1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농어가 일손부족 지원	54
	제2항 세금·공과금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을 통한 국가재정 누수 방지	56
	제3항 재외동포 포용정책 추진	57
	제4항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59
	제5항 글로벌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정편의 제공 확대	62



	<u>제6항</u>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65
	<u>제7항</u> 영주자격 관련 제도 정비	67
	<u>제8항</u> 체류민원 서비스 개선	68
	<u>제9항</u>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수비자 확대	71
<b>제3절</b>	<b>불법체류외국인 및 이민범죄 단속 강화</b>	<b>74</b>
	<u>제1항</u>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지속 추진	74
	<u>제2항</u> 불법고용 방지 홍보활동 강화	76
	<u>제3항</u>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76
	<u>제4항</u>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활동 강화	77
	<u>제5항</u>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79
	<u>제6항</u>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80
<b>제4절</b>	<b>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b>	<b>81</b>
	<u>제1항</u>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81
	<u>제2항</u>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83
	<u>제3항</u> 국적취득 신청자의 처우 개선	84
	<u>제4항</u> 국적업무 처리 현황	85
<b>제5절</b>	<b>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b>	<b>87</b>
	<u>제1항</u>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87
	<u>제2항</u>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88
	<u>제3항</u>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92
	<u>제4항</u>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운영	92
	<u>제5항</u>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93
	<u>제6항</u> 제8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개최	94
	<u>제7항</u>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95
	<u>제8항</u>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지원	97

## CONTENTS

<b>제6절</b>	<b>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및 정책역량 강화</b>	<b>99</b>
제1항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 '22) 수립	99
제2항	20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102
제3항	출입국·이민 실무 정책발표회 개최	104
제4항	이민정책포럼 개최	106
<b>제7절</b>	<b>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b>	<b>108</b>
제1항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108
제2항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111
제3항	제주 예멘 난민	116
제4항	난민업무 처리 현황	121
<b>제8절</b>	<b>국제협력 강화</b>	<b>122</b>
제1항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 협력	123
제2항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124

---

### 제3장 일자별 주요 업무 처리내용 (행정 연표)

<b>제1절</b>	<b>상반기</b>	<b>136</b>
<b>제2절</b>	<b>하반기</b>	<b>147</b>

---

### 제4장 법령·예규 정비

<b>제1절</b>	<b>법령 개정</b>	<b>158</b>
제1항	법률	158
제2항	대통령령	161
제3항	법무부령	164



	<b>제2절</b>	<b>훈령·예규 정비</b>	169
		제1항 훈령	169
		제2항 예규	170
		제3항 주요지시	170
<b>제5장</b>	<b>제1절</b>	<b>출입국자 현황</b>	178
<b>주요 통계</b>	<b>제2절</b>	<b>체류외국인 현황</b>	183
	<b>제3절</b>	<b>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b>	201
	<b>제4절</b>	<b>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b>	202
<b>부 록</b>	①	체류자격 일람표	208
	②	사증면제협정 현황	216
	③	주요 행사 연설문	224
	④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244
	⑤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245
	⑥	주요 보도자료	250
<b>화 보</b>		화보로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470

## CONTENTS

### 그림

<b>그림 1</b>	본부 조직도	20
<b>그림 2</b>	소속기관 조직도	21
<b>그림 3</b>	소속기관 현황	23
<b>그림 4</b>	재외공관 주재관 현황	24
<b>그림 5</b>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41
<b>그림 6</b>	추진경과	42
<b>그림 7</b>	추진경과	43
<b>그림 8</b>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체결	44
<b>그림 9</b>	입국심사 확인증 견본	48
<b>그림 10</b>	출입국우대카드 전담부서	51
<b>그림 11</b>	출입국자 증감 추이	51
<b>그림 12</b>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52
<b>그림 13</b>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53
<b>그림 14</b>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55
<b>그림 15</b>	외국국적동포 연도별 체류 현황	58
<b>그림 16</b>	2018 외국인 취업박람회 비자상담	61
<b>그림 17</b>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 관계자 간담회	66
<b>그림 18</b>	외국인종합안내센터	69



<b>그림 19</b>	연도별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율 현황	74
<b>그림 20</b>	연도별 불법체류 적발 및 자진출국외국인 현황	75
<b>그림 21</b>	새벽 인력시장 계도	76
<b>그림 22</b>	알선브로커 적발 언론 보도사항	78
<b>그림 23</b>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82
<b>그림 24</b>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83
<b>그림 25</b>	제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87
<b>그림 26</b>	스리랑카 의인 ‘니말’ 영주증 수여식	88
<b>그림 27</b>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89
<b>그림 28</b>	체류자격 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90
<b>그림 29</b>	법무부-한국소비자원 간 업무협약식	91
<b>그림 30</b>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과정	92
<b>그림 31</b>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93
<b>그림 32</b>	이민자 네트워크 대표 간담회	94
<b>그림 33</b>	제8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95
<b>그림 34</b>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관련 공모전 개최	97
<b>그림 35</b>	외국인정책위원회	100
<b>그림 36</b>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101

## CONTENTS

### 그림

그림 37	제21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105
그림 38	이민정책포럼	107
그림 39	난민심사관 교육 및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110
그림 40	1차 시범사업 재정착난민	112
그림 41	2차 시범사업 재정착난민	114
그림 42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	116
그림 43	예멘	117
그림 44	난민수용 찬반 집회	118
그림 45	법무부차관, 제주도 방문	119
그림 46	제주 예멘 난민 취업설명회 및 한국 사회문화 교육	120
그림 47	고위급 회담	124
그림 48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	125



---

**표**

<b>표 1</b>	본부 각과 업무 분장표	20
<b>표 2</b>	2018년 5급 이상 인사 내역	27
<b>표 3</b>	2018년 예산 내역	37
<b>표 4</b>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41
<b>표 5</b>	출국금지 현황	45
<b>표 6</b>	연도별 투자상담 및 투자유치 실적	60
<b>표 7</b>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77
<b>표 8</b>	기획조사 추진 실적	79
<b>표 9</b>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80
<b>표 10</b>	국적업무 처리 현황	86
<b>표 11</b>	유형별 귀화자 현황	86
<b>표 12</b>	난민신청 및 심사 현황	108
<b>표 13</b>	생계비 지원금액	115
<b>표 14</b>	연도별 예멘인 난민신청자 수	117
<b>표 15</b>	2018년 직원 국외 출장 현황	126
<b>표 16</b>	2018년 외국기관의 주요 인사 방문 현황	130

CHAPTER

01

# 일반 사항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비전과 미션

제3절 기구·인원 및 시설·예산

## 제1절 | 기본 방향

### 제1항 정책 여건

국제이주기구(IOM)는 2018 세계이주보고서에서 전 세계에는 세계인구의 3.3%인 약 2억 4,400만명의 국제이주자가 존재한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17년 말 218만명보다 8.6% 증가한 237만명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8년 대한민국 인구 51,635,256명(통계청 자료 기준) 대비 약 4.6%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한민국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5년 3.7%(190만명), 2016년 4.0%(205만명), 2017년 4.2%(218만명)에 이어 2018년 4.6%(237만명)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국가 간 인구 이동과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은 자국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2018년 4월 ‘국가이민관리국’을 설립하였고 일본은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격상하여 2019년 4월부터 운영하는 등, 우수·전문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 확보를 위한 이민문호 개방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국가 안보와 자국민 일자리를 강조하며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건강계측평가연구소(IHME)가 195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출산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50년 4.7명이었던 출산율이 2017년에는 절반 수준인 2.4명으로 50% 가까이 낮아지는 등 세계 국가 가운데 절반 가까이 출생률 급락으로 인한 어린이세대 붕괴(baby bust)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가 증가하며 그로 인한 성장동력 및 내수시장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2065년 4,302만명에 이르고,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0년대는 연 30만명 이상 급감하여 2065년 2,062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1백명당 부양할 인구(0~14세 유소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5년 3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59년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이러한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나, 이주의 증가로 인한 외국인 범죄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 국민 일자리 잠식,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제2항 2018년 전략목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국내외적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사회의 극복에 기여하며, 재한외국인이 국민과의 조화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과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고품질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이민자 사회통합지원 강화', '수요자를 고려한 국적 제도개선 및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효율적 난민 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개선', '미래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외국인정책을 추진하였다.

## 제2절 | 비전과 미션

### 국정 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법무행정 비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 출입국·외국인정책 비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능

- 출입국심사 및 비자 발급
- 체류허가 및 출입국사범 단속 등 체류관리
- 국적부여 및 난민인정
- 체류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및 외국인정책

### 2018년 전략 목표 및 성과 목표

#### 전략 목표

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 추진

#### 성과 목표

사회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

국민이 안전한 사회구현

## 제3절 | 기구 · 인원 및 시설 · 예산

### 제1항 기구 · 인원

#### 1 2018.3.30. 직제 개정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8명(6급 4명, 7급 4명)과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 체류외국인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편리한 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 등 총 112명(6급 22명, 7급 44명, 8급 24명, 9급 22명)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과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0년 4월 30일로 연장하였다.

#### 2 2018.5.10. 직제 개정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6개 출입국·외국인청(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과 13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남부, 김해공항,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김포공항,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로 각각 변경하였다.

**3 2018.10.2. 직제 개정**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 1개과(보안관리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여 정식 직제로 변경하고, 소속기관의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기관 정원을 재배치 하였다.

**4 2018.12.4. 직제 개정**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시흥다문화이주민+센터)에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였다.

**5 2018.12.31. 직제 개정**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6명(5급 3명, 6급 3명, 7급 10명)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 심사에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였다.

그림 1 본부 조직도

(1 본부장, 2 정책단장, 9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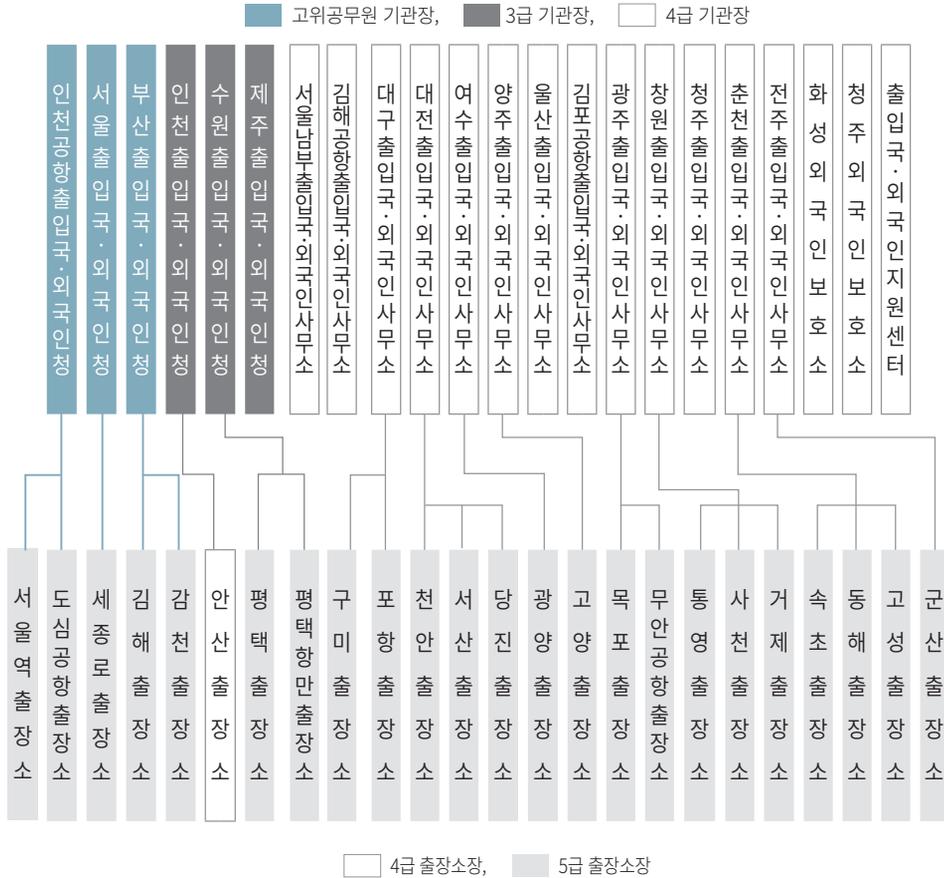


표 1 본부 각과 업무 분장표

<p><b>출입국기획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관리행정 종합계획 수립</li> <li>인사·조직·예산·홍보·국제협력 등</li> </ul>	<p><b>출입국심사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외국인출입국심사</li> <li>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등</li> </ul>	<p><b>체류관리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체류관리정책 사항</li> <li>비자발급 심사에 관한 사항</li> </ul>
<p><b>이민조사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및 조사</li> <li>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li> </ul>	<p><b>이민정보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li> <li>외국인정책 관련 통계 작성 및 분석</li> </ul>	<p><b>외국인정책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평가</li> <li>소관 법령의 입안관련 사항 등</li> </ul>
<p><b>국적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등 국적관리</li> <li>국적 관련 법령 정비 및 정책수립</li> </ul>	<p><b>이민통합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 총괄</li> <li>사회통합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li> </ul>	<p><b>난민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민의 인정 또는 이의신청</li> <li>난민위원회 운영, 재정착난민</li> </ul>

그림 2 소속기관 조직도

(6 출입국·외국인청, 13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외국인보호소, 1 센터, 24 출장소 등 46개 기관)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본부 및 산하기관 4급 이상 간부 현황

('18. 12. 31. 현재)

본부			산하기관		
직위	성명	전보(승진)일	직위	성명	전보(승진)일
본부장	차 규 근	'17. 9. 4.	인천공항청장	장 세 근	'18. 8. 6.
출입국정책단장	김 영 근	'17.12. 4.	서울청장	손 홍 기	'18. 7. 16.
국적·통합정책단장	유 복 근	'18. 8. 20.	부산청장	이 인 규	'17. 12. 4.
출입국기획과장	이 재 유	'18. 7. 16.	인천청장	안 규 석	'18. 2. 1.
출입국심사과장	김 두 락	'18. 1. 1.	수원청장	배 상 업	'18. 7. 16.
체류관리과장	이 덕 룡	'18. 1. 1.	제주청장	김도균	'18. 1. 1.
이민조사과장	이 기 흘	'18. 8. 27.	서울남부사무소장	임진택	'18. 1. 1.
이민정보과장	이 상 달	'18. 1. 1.	김해공항사무소장	정수동	'18. 1. 1.
외국인정책과장	강 성 환	'17. 9. 4.	대구사무소장	김병조	'18. 7. 16.
국적과장	반 재 열	'18. 1. 1.	대전사무소장	황택환	'18. 1. 1.
이민통합과장	육 승 훈	'16. 7. 20.	여수사무소장	유병길	'18. 1. 1.
난민과장	김 정 도	'18. 2. 28.	양주사무소장	김민수	'18. 1. 1.
출입국기획과 서기관	문 수 용	'18. 7. 16.	울산사무소장	이춘용	'18. 1. 1.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나 현 응	'18. 7. 16.	김포공항사무소장	김상진	'18. 1. 1.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공 존 행	'18. 7. 16.	광주사무소장	우석환	'18. 1. 1.
국립외교원 부이사관	이 동 휘	'18. 2. 1.	창원사무소장	백석현	'18. 9. 3.
			춘천사무소장	천승우	'18. 1. 1.
			청주사무소장	고동기	'18. 1. 1.
			전주사무소장	이정욱	'18. 1. 1.
			화성보호소장	최영길	'18. 7. 16.
			청주보호소장	김수남	'18. 1. 1.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태수	'17. 1. 9.
			인천공항 지원국장	김현채	'18. 7. 16.
			인천공항 심사1국장	심준섭	'18. 7. 16.
			인천공항 심사2국장	류인성	'18. 9. 3.
			인천공항 총무과장	이인숙	'18. 7. 16.
			서울 총무과장	구본준	'18. 7. 16.
			서울 관리과장	안동관	'18. 7. 16.
			서울 이민조사대장	고석곤	'18. 1. 1.
			서울 정보화센터장	주양근	'18. 7. 1.
			부산 관리과장	오주호	'18. 9. 3.
			부산 이민조사대장	윤종석	'18. 4. 11.
			인천 안산소장	강수근	'18. 7. 16.

그림 3 소속기관 현황(46개 기관)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그림 4 재외공관 주재관 현황(12개 국가, 17개 공관, 24명)



해외 주재관 현황

(’18. 12. 31. 현재)

국가	공관명	직급	성명	부임일자
중국	중국 대사관	4 급	차 용 호	’16. 2. 5.
		5 급	서 형 기	’17. 3. 16.
		5 급	임 은 진	’17. 8. 30.
	상해 총영사관	4 급	송 소 영	’16. 2. 22.
		5 급	최 병 철	’18. 2. 12.
	심양 총영사관	4 급	김 진 영	’15. 8. 20.
		5 급	오 점 근	’17. 8. 30.
	칭다오 총영사관	5 급	권 택 성	’16. 2. 22.
	광저우 총영사관	5 급	은 기 범	’17. 2. 24.
우한 총영사관	5 급	임 채 임	’16. 8. 14.	
일본	일본 대사관	4 급	장 희 정	’17. 8. 30.
미국	L.A. 총영사관	4 급	박 상 옥	’17. 2. 17.
러시아	러시아 대사관	4 급	하 용 국	’18. 2. 20.
몽골	몽골 대사관	4 급	길 강 목	’17. 8. 25.
		5 급	전 강 섭	’18. 8. 24.
필리핀	필리핀 대사관	4 급	양 승 권	’16. 2. 22.
		5 급	김 재 원	’18. 2. 23.
태국	태국 대사관	4 급	이 재 형	’18. 8. 2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대사관	4 급	박 재 완	’16. 8. 16.
		5 급	이 종 철	’16. 2. 22.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	5 급	이 복 행	’17. 2. 24.
인도	인도 대사관	4 급	이 진 곤	’16. 8. 18.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5 급	정 길 수	’18. 3. 2.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대사관	5 급	이 상 수	’15. 8. 24.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제2항 인사

### 1 2018년 상반기 인사

2018년 상반기 출입국관리직 정기인사는 2017년 하반기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파견 등에 따른 결원보충, 주재관 귀부임 및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인사 등을 위해 2018. 1. 1. 3급 3명, 4급 9명, 5급 16명에 대한 승진인사 및 3급 1명, 4급 20명, 5급 6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2018. 1. 8.에는 6급 43명 승진 및 66명 전보, 7급 101명 승진 및 73명 전보, 8급 178명 승진 및 33명 전보, 9급 11명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수시직제 증원 등에 따라 2018. 4. 30.에 6급 23명 승진 및 15명 전보, 7급 61명 승진 및 33명 전보, 8급 52명 승진 및 13명 전보, 9급 2명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8. 1. 10. 9급 66명, 2018. 1. 15. 7급 1명, 2018. 1. 21. 7급 13명, 2018. 1. 31. 9급 53명, 2018. 4. 23. 7급 16명, 2018. 6. 18. 9급 4명, 6.20. 9급 45명을 신규로 임용하였다.

### 2 2018년 하반기 인사

2018. 7. 16. 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원보충, 주재관 귀·부임 전보인사 등을 위해 3급 승진 2명, 4급 승진 6명, 전보 9명의 인사를 시행하였고, 2018. 7. 23. 5급 15명, 6급 22명, 7급 14명, 8급 31명 승진인사 및 5급 전보 42명, 6급 48명, 7급 56명, 8급 28명, 9급 3명의 전보인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8. 8. 3. 9급 2명, 2018. 9. 17. 9급 126명, 2018. 11. 26. 7급(시간선택제) 3명, 2018. 12. 10. 6급 2명, 2018. 12. 28. 9급 1명을 신규 임용하였다.

### 3 5급 이상 승진, 전보, 퇴직 현황

2018년 5급 이상 승진자와 전보자는 각각 51명과 133명이며, 퇴직자는 25명으로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2018년 5급 이상 인사 내역

(단위 : 명)

구분	계	신규	승진	전보	파견	휴직	퇴직
<b>계</b>	<b>213</b>		<b>51</b>	<b>133</b>	<b>3</b>	<b>1</b>	<b>25</b>
고 위	1						1
3 급	8		5	1	1		1
4 급	50		15	29			6
5 급	154		31	103	2	1	17

## 2018년 5급 이상 상세 인사 현황

## 1 승진

## ■ 3급 이상 : 5명

직급	신임직	성명	시행일자
부이사관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박상훈	'18. 1. 1.
부이사관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도균	'18. 1. 1.
부이사관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국립외교원파견전일까지)	이동휘	'18. 1. 1.
부이사관	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재유	'18. 7. 16.
부이사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배상엽	'18. 7. 16.

## ■ 서기관(4급) : 15명

- '18. 1. 1.부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강수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고석곤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재형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오주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나현웅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정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장	김병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서철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구본준		

- '18. 7. 16.부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문수용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인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공존행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안동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백석현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류인성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31명

- '18. 1. 1.부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조사과	박홍상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상원
법무부 국적과	배창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오승석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3과장	유용재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김호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7과장	이청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김종승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심미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장	안호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윤영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장	서윤원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과장	조영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파견)	김보경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	임동규	법무부 (KOTRA 파견)	정금심

- '18. 7. 23.부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향숙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범과장	박수완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지정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과장	곽범현
법무부 이민조사과	박주현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근희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석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경수
법무부 이민통합과	주태길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김상희
법무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파견)	임용성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신양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조승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장	이정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	신안선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2 전보

### ■ 3급 이상 : 1명

직급	신임직	성명	시행일자
부이사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안규석	'18. 2. 1.

### ■ 서기관(4급) : 29명

- '18. 1. 1.부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김두락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배상업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룡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황택환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이재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유병길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상달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민수
법무부 국적과장	반재열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이춘용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지원국장	최영길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상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1국장	김현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우석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국장	심준섭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천승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임진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고동기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수동	청주외국인보호소장	김수남

- '18. 7. 16.부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주태국대사관 주재관 부임일전까지)	이재형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구본준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주재관귀일일부터)	이기흠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	강수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나현웅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병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김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최영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심준섭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103명

- '18. 1. 1.부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김태형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주재관 부임일전까지)	정길수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재관 부임일전까지)	최병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주재관귀임일부터)	강대열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재관귀임일부터)	김종복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강영우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신현세
법무부 이민조사과 (주재관귀임일부터)	강성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권택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세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박동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재관귀임일부터)	김기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법과장	정남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필리핀대사관 주재관부임일전까지)	김재원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정성경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전강섭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법과장	김민경
법무부 국적과	황민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김길술
법무부 이민통합과	유성오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	안숙열
법무부 이민통합과	윤병승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경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1과장	최남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	장태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2과장	이양수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정왕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4과장	이상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유심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9과장	박진수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장	안복영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10과장	위용석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과장	이종국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재심2과장	김형연	청주외국인보호소 관리과장	연병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13과장	이인숙	청주외국인보호소 보호과장	김호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14과장	김진용	청주외국인보호소 사범과장	박정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15과장	김일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김경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장	류인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김효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장	박제성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김해출장소장	한성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유태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유제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김기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항만출장소장	나모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	임상훈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장	이달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장	임홍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	송정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김종철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장	김형욱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장	김기영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장	이병철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전창엽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장	최문정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장	이진수		

- '18. 7. 23.부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박제성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배명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이호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강영우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법무부 이민통합과	유현송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	신상원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	류재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법과장	윤양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정성경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입국과장	김용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감식과장	김기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강대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보안관리과장	박진수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임선봉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5과장	조기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신종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6과장 (주몽골대사관 주재관 부임일전까지)	전강섭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과장	장태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6과장 (주재관귀임일부터)	김동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이왕훈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8과장	윤성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재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9과장	김경희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과장	김홍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0과장	김길술	화성외국인보호소 사법과장	이종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1과장	임현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장	권태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2과장	최인식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장	김호중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3과장	박동철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장	박관식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장	윤상용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양출장소장	최희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장	권종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	주면식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법과장	유태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장	이봉규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신임직	성명	신임직	성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곽준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장	문병욱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박찬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송은옥

### 3 퇴직

#### ■ 3급 이상 : 2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고위공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종민	'18.08.06. (의원면직) 동일날짜로 외교부 임용
부이사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동권	'18.06.30. (명예퇴직)

#### ■ 서기관(4급) : 6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서기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양차순	'18.05.16. (의원면직)
서기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우종균	'18.06.30. (정년퇴직)
서기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성재신	'18.06.30. (정년퇴직)
서기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김두락	'18.12.31. (명예퇴직)
서기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김태수	'18.12.31. (명예퇴직)
서기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서철진	'18.12.31. (정년퇴직)

#### ■ 출입국관리사무관(5급) : 17명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출입국관리사무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	손상태	'18.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석태	'18.6.30. (명예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도심공항출장소	유용인	'18.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윤기현	'18.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두열	'18.6.30. (정년퇴직)

직급	퇴직 당시 직위	성명	비고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재환	'18.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거제출장소	박용국	'18.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	안재금	'18.6.30.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현세	'18.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손종식	'18.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광수	'18.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정남섭	'18.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점순	'18.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임현호	'18.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영출장소	문병욱	'18.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염동중	'18.12.31. (정년퇴직)
출입국관리사무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김경숙	'18.12.31. (정년퇴직)

## 제3항 시설·예산

### 1 소속기관 청사 신축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안전관리 강화 및 시설확충을 위해 노후 행정동 개축 및 보호동 확장 신축 공사를 '18. 6월 준공하였고, 청사 방문민원인의 급증에 따라 청사 민원혼잡도가 극심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한 청사 이전 신축 공사 실시 설계를 '17. 12. 마무리하고 '20. 10월 준공을 목표로 청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만성적인 민원 적체를 해소하고 외국인 보호 및 조사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사 신축 공사 실시설계를 '16.12. 마무리하고 '20. 1월 준공을 목표로 청사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 총사업비 : 청주보호소 63억원, 서울남부사무소 604억원, 군산출장소 40억원

### 2 예산

2018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예산은 총 2,391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5.1% 증가하였다. 예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증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임차료 증가, 청소 및 경비용역 직접고용으로 전환에 따른 상용임금 증가, 보안관리요원 증원 등에 기인하고,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1,400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약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예산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18년 예산 내역

## ■ 총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증△감	%
세입	51,369	55,601	4,232	8.2
세출	207,851	239,175	31,324	15.1

## ■ 주요경비별 내역(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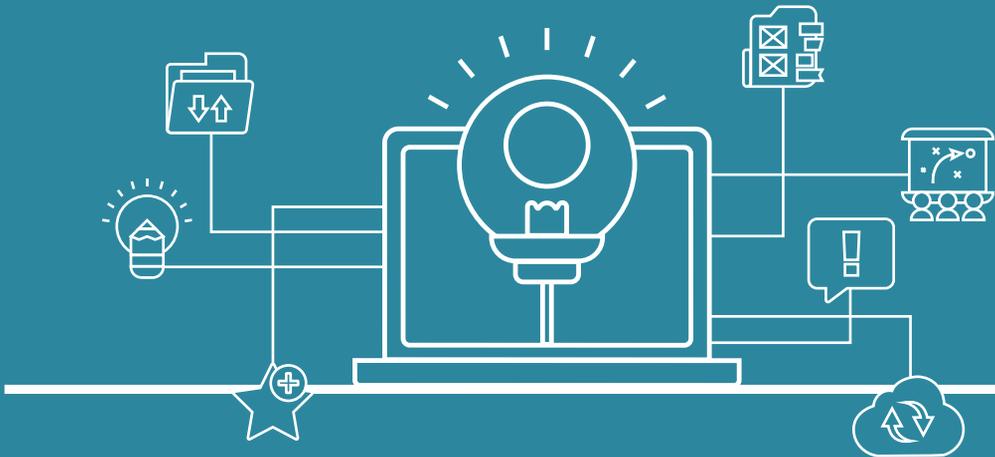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7년 대비	
			증△감	%
<b>계</b>	<b>207,851</b>	<b>239,175</b>	<b>31,324</b>	<b>15.1</b>
인건비	116,627	140,077	23,450	20.1
기본경비	14,450	13,858	-592	-4.1
사업비	76,774	85,240	8,466	11.0

CHAPTER

02

# 주요 업무 추진실적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 제1절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 제2절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 제3절 불법체류외국인 및 이민범죄 단속 강화
- 제4절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 제5절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 제6절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및 정책역량 강화
- 제7절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 제8절 국제협력 강화

## 제1절 |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 제1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시행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지문과 얼굴사진을 등록하고, 본인이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 심사대에 인식시켜 간편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는 제도이다. 2008년 6월 인천공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를 시행한 이래 국민의 사전등록절차 생략, 등록외국인 이용 허용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다만, 등록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가 필요하고 관광 목적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자동심사대 이용 활성화의 제약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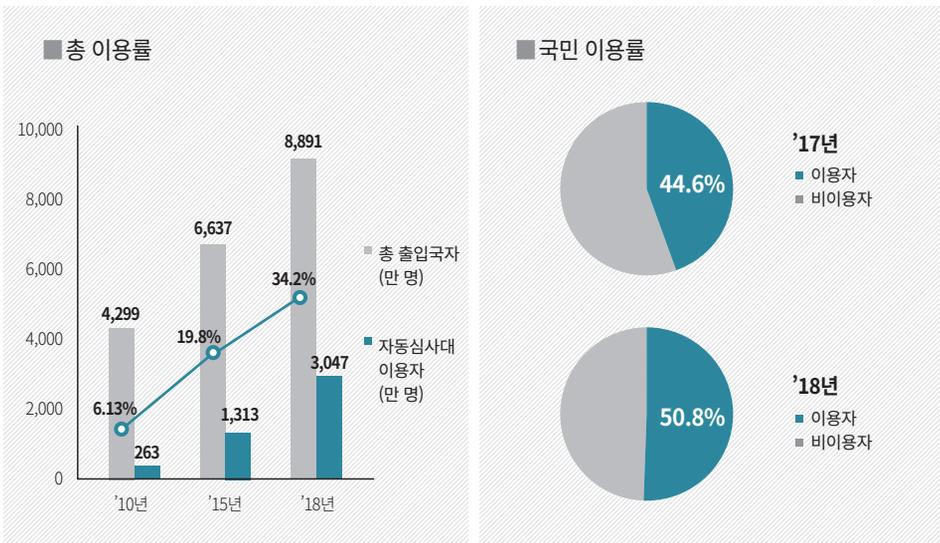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8년 10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은 번거로운 사전등록절차 없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시 취득한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하여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8년 12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표 4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현황

(기준 2018. 12, 단위 : 대)

구분	합계	인천 공항	김해 공항	김포 공항	제주 공항	청주 공항	대구 공항	인천항	부산항
설치 대수	193	148	15	6	4	4	4	7	5

그림 5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현황



## 2 평가 및 발전방향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년대비 출입국자는 850만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출입국자 증가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출입국심사관의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품질의 출입국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활성화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특히,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등록외국인에 대한 사전 등록절차 생략, 단기체류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허용은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단기체류 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전면 허용,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등을 통하여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6 추진경과

2008. 6.	.....	자동출입국심사 개시 국민, 승무원
2010. 8.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개시 영주·투자자격 등록외국인
2012. 4.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확대 결혼이민자 등 11개 체류자격 소지자
2013. 7.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14세 이상 국민, 복수상륙허가 승무원
2014. 3.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한국방문우대카드
2015. 11.	.....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외국국적 동포·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
2016. 7.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7세 이상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
2017. 3.	.....	자동 출입국 이용 국민 사전등록절차 생략
2018. 10.	.....	자동출입국 이용 외국인 사전등록절차 생략
2018. 12.	.....	단기체류 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운영 시행

## 제2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국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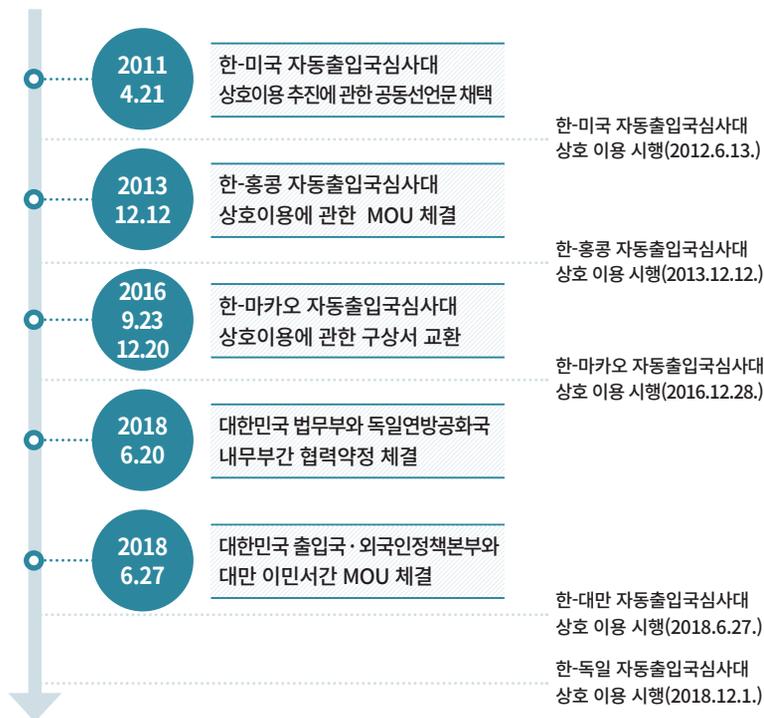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국가 간 협정 등을 통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자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출입국 편의 제공을 통한 양국 국민의 우호증진 및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분야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과 2012년 6월 처음으로 국가 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을 시행한 이래로 홍콩('13. 12월), 마카오('16. 12월), 대만('18. 6월), 독일('18. 12월)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을 시행하여 양국 국민이 등록만 하면 해당국가에서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7 추진경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그림 8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체결



< 한-대만 양측 대표부간 MOU 체결 >

< 한-독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체결 >

##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가 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을 통해 양국 국민의 방문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상호이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등 출입국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5개국인 우리나라와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국가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 모두가 상호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제3항 출국금지제도 운영개선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신하균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최근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기반하여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약 9개월간의 내부 검토 및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정지 및 연장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앞서 그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2018년 7월 1일부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였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부위원장), 출입국심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다.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기간연장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 연장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며, 이외에도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표 5 출국금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b>계</b>	<b>9,745</b>	<b>27,493</b>	<b>14,714</b>	<b>14,886</b>	<b>15,092</b>
검찰	6,243	6,591	6,919	6,137	5,569
경찰	1,753	1,810	2,283	2,107	2,325
관세청	51	86	37	73	66
국세청	1,102	1,611	4,421	5,670	6,503
병무청	353	319	439	391	253
기타	243	17,076*	615	508	376

\* 2015년 기타 출국금지자 중 16,576명은 메르스 관련자임

## 2 평가 및 발전방향

제1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18. 8. 10.)에서는 이의신청 5건을 심의하여 2건을 인용하였고, 제2회 출국금지심의위원회('18. 9. 3.)에서는 이의신청 4건을 심의하여 1건을 인용하였다. 인용된 사람 모두 국세체납을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으나 보유 재산이 없고 재산 은닉의 구체적인 정황과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운영('18. 7. 1.) 이후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위원회 회부 전 자체 심의하여 별도로 12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 인용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제4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출입국 제도개선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호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18. 2. 9.~2. 25.)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편의 제공, 올림픽 관람 목적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한적 무사증 입국 허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다만, 동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인으로 편중되다 는 일부 지적이 있어 동남아 국가 국민 등으로의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가 요구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인의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입국일자 및 체류 기간을 적거나 일부인을 날인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방식은 입국심사 시간 지연, 입국심사장 혼잡 발생 그리고 출입국심사관의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도 증가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출입국심사서비스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행했던 중국인에 대한 제한적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공관 지정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5인 이상 동남아(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 양양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2018년 1월 22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원도의 적극적인 제도 연장 요청을 수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종전의 ‘입국심사인 날인 방식’을 ‘입국심사 확인증’ 교부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변경할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2018년 1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2018년 5월부터는 김포공항으로 시범실시 시행기관을 확대하였다. 향후 동 제도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편의성이 입증된다면 ‘입국심사 확인증’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그림 9 입국심사 확인증 견본(시행 전·후)



## 제5항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안정적 운영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호원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법무부는 2014년 3월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건의 원인으로 도난·분실여권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위험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IPC)”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5년 2월 16일 일본 나고야 공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국적항공기를 대상으로 처음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7년 4월 1일부터는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2018년 12월 말 현재 46개국 90개 항공사, 176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8년 한 해 항공사가 전송한 승객 정보 46,500,848건에 대한 탑승가능 여부

를 응답, 인터폴 수배자 정보 12건, 분실 또는 무효 처분된 여권 정보 9,920건 등을 포함한 총 19,055건에 대하여 탑승불가를 통보하여 위험인물의 대한민국 입국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테러위험으로부터 탑승자와 항공기의 안전과 국경보안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2018년 국가적 행사였던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안전개최에도 크게 기여하는 기반이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개선 등을 통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안전한 국경을 관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제6항 출입국우대카드 전담추진체계 마련

###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사회 공헌자, 기업인, 우수관광객 등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입국우대카드의 심사, 발급 및 관리 등 업무를 일원화·전문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 <제도 현황>

가)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VIP Card) : 국가·사회발전 공헌자에게 사회적 예우를 다하고 교통약자 배려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출입국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카드 소지자는 출입국 시 동반 3인까지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추천기관에 신청을 하면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카드 발급대상자가 선정된다. 2013년 12월 시행 후 2018년 12월 말 현재 16,232명에게 출입국우대카드가 발급되었다.

나) 한국방문우대카드 (Korea Priority Card) :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외국인 관광객에게 사증 발급 등 출입국절차를 우대하고 관광 위락시설·면세점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소지자에게는 출입국 우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단기방문 복수사증 발급, 자동심사대 이용 및 의료, 통역 등 각종서비스가 제공된다. 2018년 12월 말 현재 2,886명에게 카드를 발급하였다.

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 1996년 11월 APEC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시행 선언 후 한국, 호주, 필리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1997년 5월 최초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19개국의 APEC 회원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비자 대신 동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카드소지자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회원국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를 통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제공 받는다. 2018년 12월 말 현재 19개국 총 카드 발급 수는 303,109개이며 이 중 한국인은 49,029개로 회원국 중 1위이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출입국 우대카드 전담추진체계 구축으로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전문화하여 사회공헌자 및 기업인 등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 우수 관광객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제교류 증진 및 관광, 투자, 무역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0 출입국우대카드 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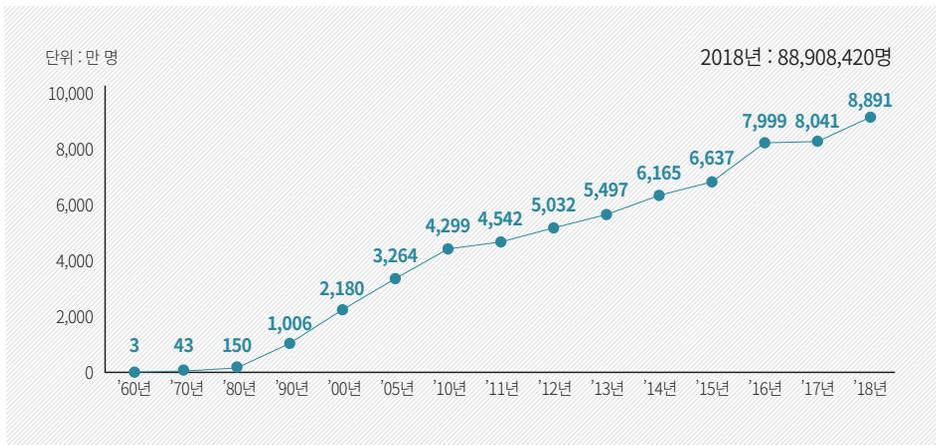
<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글로벌인재비자센터 >

## 제7항 출입국자 현황

### 출입국심사과 주무관 송방혁

2018년도 전체 출입국자는 전년도의 80,407,702명보다 10.6% 증가한 88,908,420명을 기록하였다. 국민은 57,859,670명으로 전년도 53,445,030명에 비해 8.3% 증가하였고 외국인인 31,048,750명으로 전년도 26,962,672명에 비해 15.2% 증가하였다.

그림 11 출입국자 증감 추이



## 1 외국인 입국자

2018년도 외국인 총 입국자는 15,630,522명으로 전년도 13,569,509명에 비해 15.2% 증가하였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중국 503만명(32.2%), 일본 298만명(19%), 대만 115만명(7.3%), 미국 107만명(6.8%) 순이다. 중국 국적자는 전년대비 638,970명(14.5%) 이 증가하여 가장 많은 인원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일본 국적자가 638,856명(27.3%) 증가하였다.

입국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및 방문이 1,241만명(79.4%)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 57만명(3.6%), 방문취업 26만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 2 국민 출국자

국민 출국자는 28,945,447명으로 전년도 26,765,503명 대비 8.1%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 감소하던 국민 출국자가 2010년 국내 경기회복 및 환율안정 등으로 대 폭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2018년에도 2017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그림 13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제2절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 제1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한 농어가 일손부족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주지정 / 주무관 김택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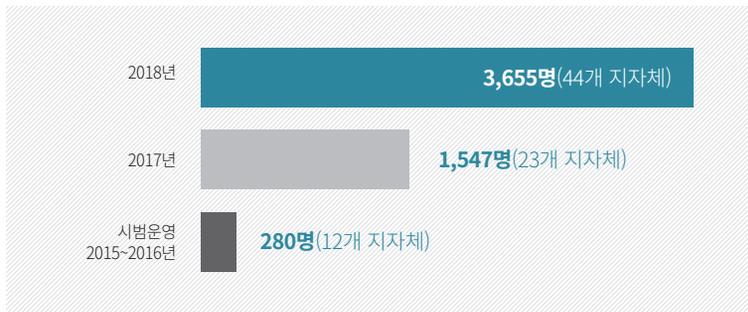
그간 일부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계절적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건의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4년 9~11월 충북 괴산군 등 일부 지자체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추진과정에서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업을 토대로,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충북 괴산군·보은군,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충북 괴산군은 김장용 절임배추를 대량 생산하는 지역으로, 김장철에는 일시적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중국 길림성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해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농가는 필요한 일손을 제 때 구해서 좋고, 중국 농부들은 농한기 과외소득을 올릴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려했던 불법체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은 전혀 없었으며 사업 참여 지자체, 외국인근로자 및 농가의 대부분이 사업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제 농촌뿐만 아니라 많은 어촌에서도 외국인 계

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2015년 10월~2016년 12월) 12개 지자체에 28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다. 2017년에는 23개 지자체에 계절 근로자 1,547명을 배정(농업 1,175명, 어업 372명)하였고, 2018년에는 44개 지자체에 3,655명(농업 2,936명, 어업 719명)을 배정하는 등 그 사업 규모 및 근로자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4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공급자(농어민)·소비자(일반 국민)·근로자(계절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등)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국가가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브로커들의 개입을 차단하며, 숙박시설·근로조건·임금지불 등 계약이 잘 지켜지는지,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지를 관계기관 합동 실사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친족들과 함께 일하며 유대감을 높일 수 있어 결혼이민자의 가족 복지와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동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와 농어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건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절근로자 배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을 관리하는 기본 법령인 출입국관

리법령에 제도 시행절차, 도입 업종과 규모 등의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계절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노동권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제2항 세금·공과금 체납외국인의 비자연장 제한을 통한 국가재정 누수 방지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 주무관 송지훈

2015년도 초부터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외국인 세금체납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정부·지자체의 재정 악화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었지만, 외국인의 경우 재산의 상당부분을 본국에 두는 경우가 많고, 소재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 등 징세기관에서는 납부독촉, 가산세 등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체납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각 징세기관이 보유한 외국인의 세금 체납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5년 12월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 끝에 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이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고, ‘외국인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세수 정상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합동 TF를 구성하여 외국인등록정보 및 세금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다.

2016년 5월부터 안산·시흥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2017년 5월 주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 시행하였고, 2018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제도를 통해 약 329억 원(징수 35억, 자진납부 294억)의 세금체납액을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가 세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상습 체납외국인에게 납세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본 제도는 법무부의 비자연장 허가와 외국인의 세금 체납정보를 연계하여 외국인의 체납 세금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 ‘국가세수 확충’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한 우수 협업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법무부는 조세분야에 한해 시행 중인 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건강보험료 체납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sup>1)</sup>을 진행 중이며, 2019년 7월에 수도권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9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향상, 외국인의 건전한 시민의식 및 체류질서 준수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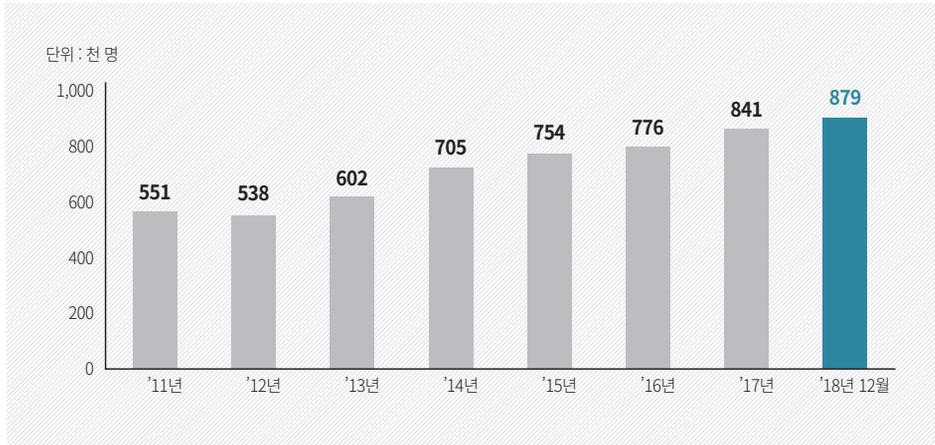
### 제3항 재외동포 포용정책 추진

####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종복 / 주무관 조기철

1999년 재외동포법 시행 후 거주국 동포 간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H-2) 도입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중국·구소련지역 등의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계속 증가하여, 2018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약 87만9천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237만명의 37%에 이르렀다.

1)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 6. 7.)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 보도자료 배포

그림 15 외국국적동포 연도별 체류 현황



2018년 6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문취업(H-2) 비자취득 가능 연령요건을 기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동포들의 모국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였고, 지침 개정을 통해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18년 9월에는 「외국국적동포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재외동포(F-4) 자격자와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동포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경우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건을 완화하여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포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체류가 가능한 자격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정책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포이주의 역사적 특수성 및 1999년 「재외동포법」 시행 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와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 해소와 국내 체류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제4항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승현 / 주무관 박창두

### 1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국내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2013년 5월 27일 도입하였다.

투자유형 및 방식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운용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펀드와 법무부장관이 정한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의한 손익발생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되며,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5억 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해 연도인 2013년의 투자유치 실적은 13억 원으로 저조하였으나, 이후 글로벌인재비자센터 운영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강화와 투자금 송금 전담은행 지정, 해외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확대 노력으로 2018년 말 기준 공익사업 투자유치 실적은 1,483억 원으로 제도 도입 초기 대비 11,307%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유치된 투자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대 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2 부동산 투자이민제

외국인 간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2010년 2월부터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제주도 지역에 도입하여 제도 시행 당해 연도인 2010년에는 976억 원의 투자 유치실적을 달성하였다.

이후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적용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지구(2. 14.), 전남 여수 경도지역(8. 19.), 인천경제자유구역(11. 1.), 2013년 부산 해운대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5. 20.), 2015년 경기 파주 통일동산(11. 1.), 2016년 강원 강릉 정동진지구 (2. 1.) 및 전남 여수 화양지구(7. 11.)를 투자 대상지역에 추가 포함시켰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부동산 투자유치 실적은 1조 4,454억 원으로 제도 시행 초기 대비 1,380.9% 증가하여 해당 지역 리조트 건설 등 관광 휴양시설 관련 건설 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3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창업지원 강화

2018년 2월부터 인천공항 내에 기존에 설치된 ‘투자이민상담센터’를 ‘글로벌인재비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고, 글로벌인재비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3개 언어(한국어/영어/중국어)로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투자 관련 홍보·통역·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 관련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투자상담 실적은 3,958건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고, 투자유치실적은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6 연도별 투자상담 및 투자유치 실적

연도	2014 (2월 개소)		2015		2016		2017		2018	
	상담	투자유치	상담	투자유치	상담	투자유치	상담	투자유치	상담	투자유치
실적	982건	18억	1,400건	32억2천	1,308건	105억	1,626건	93억	3,958건	172억

또한, 2018년 6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무부처에서 추천한 우수 기술력 보유 외국인에 대한 학력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술창업 비자(D-8-4) 취득요건을 완화하였고,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OASIS)<sup>2)</sup>’의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과정을 창업에 필요한 실습위주로 재편성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기술창업자가 '18년 기준 45명으로 전년 27명 대비 66.67% 늘어나 창업 유도를 통한 내국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림 16 2018 외국인 취업박람회 비자상담



아울러 2018년 3월에는 외국인 무역업자들이 초창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 비자 제도<sup>3)</sup>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 제도 도입 ▲‘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무역비자 제도를 개선하였다.

2) 법무부와 중기부에서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한국발명진흥회 등 7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3) 무역실적,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내 유학경험 및 체류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무역비자 부여

### 외국인 무역업 우수 사례

- 터키인 A씨는 2016년 10월에 무역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창업자로 전자상거래로 2017년 기준 약 12만4천 달러의 무역 실적을 달성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
- 말레이시아인 B씨는 2016년 11월에 무역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창업자로 2017년 기준 약 10만2천 달러의 화장품을 해외로 판매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

그 결과 외국인 무역업자가 '18년 기준 102명으로 전년 70명 대비 45.7% 늘어나 국산품 수출 등 국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제5항 글로벌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정편의 제공 확대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승현 / 주무관 용창식

### 1 해외 석학 등에 대한 단기취업 전자비자 발급 시행 및 강연활동 인정범위 확대

해외 석학들이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초청 강의를 위해 방문할 경우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8년 4월부터 '정부·공공기관에서 초청하는 과학자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유명 석학들의 초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각종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를 활발히 초청하고 있으나, 기존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를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비자(C-4) 발급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2018년 8월 1일부터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에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 B-1, B-2) 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비자제도 불편 해소를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2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제 도입

첨단과학기술/문화체육/보건의료 분야 등 해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된 비자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전자고용추천제를 시행하였다.

고용추천제는 해외 우수인재의 취업비자 심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추천대상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C-4, E-1~E-7) 체류자격 중 80여개 직종이며, 추천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부·처·청이 해당된다.

그동안은 해당 외국인 또는 초청자가 어느 기관에서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할지 몰라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겪는 등 비자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전자고용추천제 시행으로 비자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해소되어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 3 구직비자 점수제(D-10) 시행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구직(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그동안은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력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자격이 한정되어 다양한 우수인재를 포섭하기에는 너무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의 항목을 점수로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구직비자 취득 요건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 유입 촉진 및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 4 新산업 분야 직종 도입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新산업 분야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sup>4)</sup>에 대해 2018년 5월 1일부터 특정활동(E-7) 비자 중 외국인 취업허용 가능 직종에 포함시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그동안 경제의 글로벌화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외국인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나타났으나, 외국 인력 취업 허용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新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비자 직종 신설 과정에서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를 위해 허용 직종에 대한 급여조건 등을 동일 사업장내의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하는 등 국민 일자리 보호도 강화하였다.

#### 5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확대 운영

뿌리산업·중소 제조업·농림축산어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2018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4) ①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②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③ 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E-7-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 하반기 시범 시행결과, 쿼터(300명)가 한 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좋았으나, 뒤늦게 신청 자격을 갖춘 근로자 및 사업장이 소외되는 선착순 접수 방식의 문제, 소규모 제조업체(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뿌리산업 5인 미만) 배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접수·허가방식을 ‘선착순 접수방식’에서 ‘고득점자 선발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본 쿼터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였고 국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전년도 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10% 이상 증가)이나 고득점 숙련기능 인력(75점 이상 고득점자)에게는 별도 쿼터(200명)를 배정하였으며 ▲신청대상 사업장을 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뿌리산업 5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에도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취약산업 분야의 숙련기능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제6항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승현 / 주무관 용창식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8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어학연수생의 학교 간 이동 제한 ▲재정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체류기간 연장 시 어학연수

생 출석률 반영 등이다.

이번 개선에서는 해외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 인력 활용범위 확대, 대학 등이 제기한 유학생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각 대학교 유학생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그동안 유학생들이 생활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한 점도 고려하였다.

또한, 2018년 1월과 11월에 걸쳐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 불법체류자 문제 및 학습능력 부진 등에 따른 내국인 학생들의 피해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 측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자리에서 대학교 관계자들은 법무부에서 마련한 과정별 한국어 능력 강화 등 유학제도 개선안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한국어 능력 강화는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어학연수생에게까지 한국어능력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림 17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 관계자 간담회



< 외국인 유학생 초청 간담회(1.31.) >

< 대학교 유학 담당자 간담회(11.19.) >

지속적인 유학비자 제도 개선으로 2018년말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수는 160,670명으로 전년 135,086명 대비 19% 증가하는 등 정부의 유학생 유치 20만 명 목표에 이바지 하였고, 한편으로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 중인 고급 연구인력들의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발전 및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등 혜택의 폭을 넓히고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하여는 비자 심사 강화 등 유학생 비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제7항 영주자격 관련 제도 정비

### 체류관리과 사무관 주지정 / 주무관 김택균

2018년 9월 2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 일반체류자격을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분류하였고,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으로 생계유지능력, 한국어능력,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규정하고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형법상 범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자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영주증 갱신제도를 도입하였다. 종전에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갱신의무가 없었으나, 2018년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간 영주자격 신청의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이 4~5개월 정도 걸려, 영주자격을 신속히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18년 10월 8일부터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 제8항 체류민원 서비스 개선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 주무관 송지훈

###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

체류외국인 220만 명 시대를 맞아 법무부는 이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고품질 체류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위탁운영 중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상담서비스를 개선하였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에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등을 확충하였다.

지난 20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콜센터')가 개소 10주년(2018년 3월 31일)을 맞아, 3월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목동 1345콜센터에서 개소 10주년 축하 기념식을 가졌다.

법무부장관은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220만 재한외국인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외국인의 고충상담은 물론 성폭력 피

해 지원 등에 더욱 힘써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콜센터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1345콜센터는 출입국·체류관련 민원 상담 및 각종 행정·생활정보 안내서비스를 영어·중국어를 포함한 20개국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104명의 상담사(외국어 46, 한국어 45, 기타 13)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인당 일평균 10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상담건수는 약 17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국내 체류외국인의 든든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8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 법무부장관 1345 전화상담 실행 정취 >



< 1345 10주년 행사 후 기념촬영 >

특히 2018년 6월부터 경찰청 상황실(112)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1345 콜센터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345콜센터는 3자 통화 시스템을 통해 ‘112상황실 ↔ 외국인 신고자’ 간 통화연결 및 3자 통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2 체류민원 온라인서비스 개선

2018년 9월에는 온라인 근무처변경허가 서비스를 구축 게시하였다. 지금까지 23만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고용주와 함께 방문하여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등을

발급받고 다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와 같이 사무소 방문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고용노동부와외의 전산연계로 제출서류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온라인 이용 시 수수료도 감경(20%)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 3 등록외국인의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2018년 10월에는 일부 외국인에 대한 동거가족사항 기재를 시행하였다. 외국인의 경우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이동통신 가족 공동 가입에 따른 할인 혜택 등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한 현지 공증을 거쳐야 하거나, 가족관계 증명서류의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외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체류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비자를 받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일부 외국인들의 동반가족 관계를 시스템에 관리하도록 '등록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지침'을 마련하였고, 해당 외국인들의 동거가족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나타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체류편의가 제고되는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갖추게 되었다.

### 4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 체결

2018년 12월 17일,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① 우수 인재 유치 ②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③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④ 외국인 주민 조사·연구 활성화 ⑤ 생활환경 개선 ⑥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 등 총 6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외국인 상담·교육 등 공동 지원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의 삶의 질을 개선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와 함께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스타트업(start-up) 창업가, 연구원, 우수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의 신속한 발급과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와 서울시는 양 기관 고위공무원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연 2회 개최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는 6개 협력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점검하는 등 양 기관의 실질적 ‘협업 지휘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와 서울특별시의 업무 협약 체결은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양 기관의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9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수비자 확대

체류관리과 사무관 류재석 / 주무관 고동중, 유수열

### 1 중국 및 동남아국가 비자제도 개선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2017. 12. 18.)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1회 이상 방문한 경력이 있는 중국 및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하여 관광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동남아 3

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우수기업 직원 및 유명대학 재학생에 대한 관광비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였다.

## 2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국(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몽골 국민 복수비자 확대

2018년 7월 16일부터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몽골 국민 중 불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문직 종사자, 우수기업 관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대하여 복수비자를 확대·발급하였다.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로서 유럽-유라시아 거대경제권 진출교두보 확보에 중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 재직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양국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와 비자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몽골인의 경우 불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인, 납세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하여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 국가 국민들에 대한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의 복수비자 제도 시행은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신남방국가 국민 복수비자 확대

2018년 12월 3일부터 신남방국가 국민<sup>5)</sup> 가운데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 국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베트남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신남방국가와의 문화·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우리나라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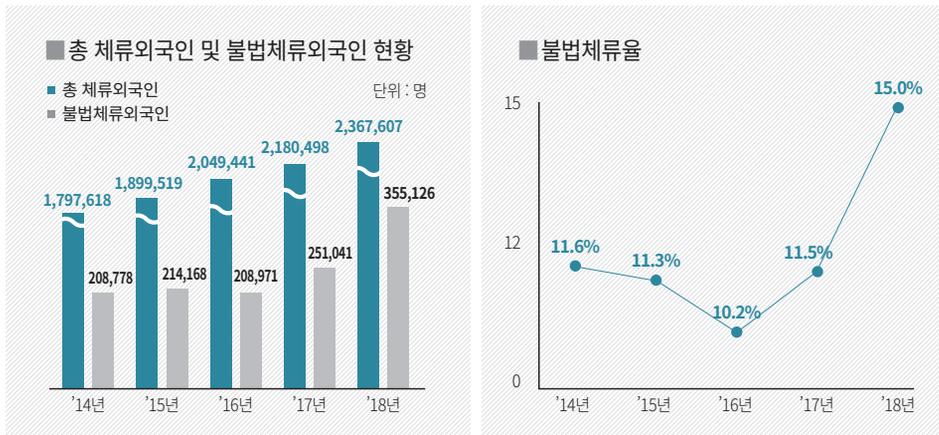
## 제3절 | 불법체류외국인 및 이민범죄 단속 강화

### 제1항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지속 추진

#### 이민조사과 주무관 안재필

2018년에는 태국, 카자흐스탄 등 사증면제협정 국가 국민 및 단기방문 자격소지자의 불법체류 전락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지속되었고, 이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상승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림 19 연도별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외국인, 불법체류율 현황



※ 불법체류율 : 불법체류외국인 / 총체류외국인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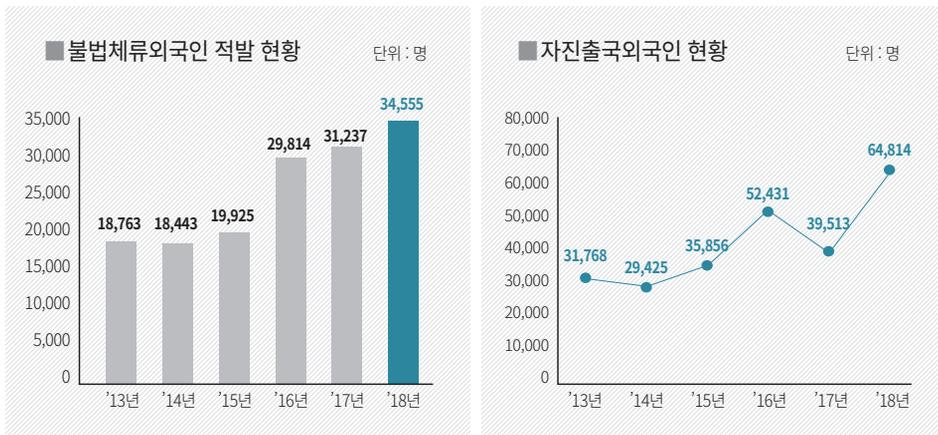
이에 법무부는 정부합동단속·연중 상시단속·건설현장 테마단속 및 전국 34개

소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단속 사각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이민특수조사대를 비롯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자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발생 근원을 차단함과 동시에, 외국인 밀집지역 55곳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불법행위 발생 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불법행위 근절 계도활동,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순찰·단속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태국·베트남 등 주요 불법체류 다발 국가의 주한외국공관 대상으로 간담회를 12회 개최하여 불법체류중인 자국민의 자진출국 독려를 요청하고, 자진출국 안내문을 각 주한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여 자진출국을 적극 홍보하였다.

불법체류 감소정책의 주요 성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34,555명, 불법고용주 6,214명 등 총 40,769명을 적발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방지 사전 계도활동,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운영 등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여 64,814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신분세탁자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7,390명(812건)을 적발하는 등 불법체류 발생 근원의 차단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림 20 연도별 불법체류 적발 및 자진출국외국인 현황



## 제2항 불법고용 방지 홍보활동 강화

### 이민조사과 주무관 안재필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2013년부터 단속과 함께 불법고용 방지 사전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2018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었다.

특히, 2018년 11월부터 1개월간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을 위한 집중계도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고용주 및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총 48,08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를 실시하였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언론, 유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림 21 새벽 인력시장 계도



## 제3항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 이민조사과 주무관 안재필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일환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체류외국인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정부합동단속 방안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대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상반기 정부합동단속은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주 동안 총 400명, 하반기 정부합동단속은 9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1주 동안 총 430명이 참여하여 국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대규모 건설현장,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사전계도 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혐의가 있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6,218명, 불법고용주 2,835명 등 총 19,053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7 정부합동 불법체류 단속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간	5. 12. ~ 25. 6. 9. ~ 29. 10. 13. ~ 11. 9.	3. 9. ~ 5. 1. 9. 1. ~ 11. 8.	3. 7. ~ 5. 13. 9. 5. ~ 11. 11.	3. 6. ~ 5. 12. 9. 4. ~ 11. 17.	2. 26. ~ 5. 11. 9. 3. ~ 11. 16.
참여인원	406	520	638	658	830
불법체류 외국인	4,373	8,736	13,426	13,255	16,218
불법고용주	1,257	2,393	2,625	2,549	2,835

## 제4항 기획조사 및 동향조사 활동 강화

### 이민조사과 주무관 김영필

2018년도에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허위초청 알선자 등 7,390명(812건)을 적발하여 그 중 49명을 구속, 28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5,356명의 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하였다.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미풍양속 저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등 1,954명, 불법고용주 525명, 알선브로커 3명을 적발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발생 주요 요인인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알선브로커 58명, 불법취업 외국인 등 979명을 적발하였고, ‘신분 세탁 혐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35명을 적발하였으며, 불법고용을 억제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40명, 불법고용주 38명, 불법취업 외국인 646명 등 총 724명 적발하였다. 그 밖에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위반 외국인유학생 및 알선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고용 알선브로커 2명, 불법취업 외국인유학생 등 168명, 불법 고용주 42명 등 총 212명을 적발하였다.

그림 22 알선브로커 적발 언론 보도사항



기획조사 활성화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장 회의를 2회 개최하고,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추진실적 평가보고회, 동향조사·사범·보호 기법연구 발표회, 권역별 동향조사요원 정례회합을 통한 동향조사 기법 및 관련 정보 공유에도 힘쓰는 등 불법체류 유발 환경 차단 및 이를 통한 국민 불안 요인 해소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도 노력하였다.

표 8 기획조사 추진 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위변조 여권		위장결혼		불법취업		기타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건	인원
2017년	733	6,460	84	196	7	11	169	2,415	473	3,838
2018년	812	7,390	48	90	16	24	186	2,666	562	4,610
전년대비(%)	110.8	114.4	57.1	45.9	228.6	218.2	110.1	110.4	118.8	120.1

## 제5항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 이민조사과 주무관 남명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활동 시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였다.

2018년 1월 31일 중국어, 태국어, 몽골어 등 20개 언어로 제작된 ‘미란다원칙 등 고지 음성파일’을 배포하여 단속현장에서 활용하게 하였고, 단속·보호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5명의 직원을 국군의무사령부의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위탁교육을 받게 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년 8월 23일 ~ 8월 31일 화성·청주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2018년 4월 ~ 11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7개 산하기관에 대한 법무부 인권국 실태조사, 2018년 11월 13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태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였고, 조사 및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별로 관할 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정기적

인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관별 실정에 따라 소방·전기시설 및 장비를 자체 또는 위탁 점검하였다. 또한, 9월 7일을 “출입국 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외국인보호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시설 안전 및 안전한 보호외국인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외국인 고충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 강제퇴거를 앞둔 보호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체불임금 5,775건(약 73억원), 의료구호 1,325건 등 10,526건의 고충을 처리하였다.

## 제6항 출입국사범 처리 현황

### 이민조사과 주무관 장기연

2018년에 처리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176,847명이다. 이 중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31,811명(17.9%),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은 4,770명(2.7%), 출국권고 받은 외국인은 3,273명(1.9%)이었고, 고발된 사람은 3,482명(2%)이며, 그 외에 통고처분은 30,395명(17.2%), 과태료는 15,595명(8.8%), 처분면제 등 기타 87,521명(49.5%)이었다.

표 9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단위: 명, 천 원)

연도	총계	강제 퇴거	출국 명령	출국 권고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기타
					건	금액		건	금액	
2017	146,924	26,694	6,282	3,366	29,838	40,094,280	2,851	15,205	2,165,600	62,688
2018	176,847	31,811	4,770	3,273	30,395	49,452,520	3,482	15,595	2,086,170	87,521

\* 기타: 처분면제 등

## 제4절 |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 처우 개선

2018년 12월 20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 이전에는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하고, 그 허가 사실에 대하여 통지서만을 받고 있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시지가'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제1항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 국적과 주무관 박민수 / 주무관 김창환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국적법」을 개정하고(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

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18일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른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의 정식 시행에 앞서 2018년 11월 26일 ~ 27일 양일간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하여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총 163명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참석한 국적취득자 및 동반 가족들은 ‘수여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더욱 좋았다’ 등 수여식에 대해 크게(만족도 93%) 만족하였다.

또, 광복 73주년을 맞아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를 조성을 통해 국적취득자가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 13일 독립유공자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에 대하여 귀화 면접심사 면제, 생계능력 인정범위 확대 등 귀화절차를 완화하여 국적취득을 지원하고, 완화된 제도시행 이후 새로이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7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9일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그림 23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한편, 우리 주변의 귀화자 중 역경을 극복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19일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하여 기념패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림 24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 제2항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 국적과 주무관 이해정

과거 귀화 필기시험은 문항 수가 적고 시험 유형이 객관식으로 고정되어 있어 응시자의 기본소양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3월 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시험체계를 일원화하여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시켜 이민자가 보다 쉽게 우리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국적취득 후에도 기존 구성원들과 통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귀화 필기시험에 비해 문항 구성이 다양해지고

(객관식 20문제 → 객관식, 작문, 구술 45문제), 시험 시간이 늘어났으며(20분 → 75분), 응시기회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났다. 기존 귀화필기시험은 귀화신청 시 시험날짜를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하였으나, 종합평가는 1년 내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귀화자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제3항 국적취득 신청자의 처우 개선

#### 국적과 주무관 김창환 / 주무관 이은주

종전에는 귀화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 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가치를 ‘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이에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종전에는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직위로 한정되어 귀화신청하려는 외국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국적회복의 경우 현행 국적법령(시행령 제25조의2)상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 실무상 운영하여왔으나 신청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질병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경우 국적회복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병치료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이 본인을 대행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제4항 국적업무 처리 현황

###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 주무관 이은주

2018년도 전체 귀화자를 허가 유형별로 보면,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에 의한 혼인귀화가 67%(7,689명)를 차지하며, 특별 귀화자는 18%(2,064명)이다. 특히, 우수인재 선정을 위한 국적심의위원회를 2011년 제도시행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28회 개최(2018년 4회)하여 과학·인문 등 학술분야 86명, 체육분야 28명, 첨단기술분야 11명, 경영·무역분야 5명, 문화·예술분야 8명 등 총 138명을 우수인재로 인정하여 우리 국적을 부여하였다.

국적회복자는 2011년 1월 1일 제10차 개정 「국적법」의 시행 이후 65세 이상 동포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 「국적법」 개정 이전 2010년까지 연평균 491명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25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최근의 국적회복자 추이가 2014년 2,886명, 2015년 2,610명, 2016년 2,303명, 2017년 2,775명, 2018년 2,698명으로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우리 동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10차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년 5월부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998년 6월 제4차 개정 「국적법」 시행으로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적선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2009년까지 연평균 52명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1,448명, 2015년 1,234명, 2016년 1,513명, 2017년 1,329명, 2018년 1,618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국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유형별						
	합계	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이탈	기타
2014	35,632	11,314	2,886	18,150	1,448	1,322	512
2015	32,837	10,924	2,610	16,595	1,234	934	540
2016	50,957	10,108	2,303	35,257	1,513	1,147	629
2017	35,978	10,086	2,775	19,364	1,329	1,905	519
2018	50,004	11,556	2,698	26,608	1,618	6,986	538

※ '18년 국적상실은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이며, '18년 국적이탈은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하여 증가함

표 11 유형별 귀화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합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
			혼인귀화	기타		
2014	11,314	298	7,607	475	2,717	217
2015	10,924	323	6,966	618	2,778	239
2016	10,108	566	6,375	413	2,382	372
2017	10,086	715	6,438	304	2,238	391
2018	11,556	1,037	7,689	264	2,064	502

## 제5절 |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 제1항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태길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권익증진협의회 민간위원 신규위촉 및 당연직 위원 재정비 등 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분기별 정례 개최를 추진하였다.

이에 2018년 2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정비하였다.

그림 25 제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2018년 2월 26일 제1차 중앙권익증진협의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분기별 회의 총 4회 개최, 15개 안건을 심의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으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자문과 개인고충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제4차 권익증진협의회에서는 2017년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에게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국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26 스리랑카 의인 ‘니말’ 영주증 수여식



## 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이민통합과 사무관 육성오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음 시행하였던 2009

년에는 참여자가 1,331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4,429명, 2011년에는 6,519명, 2012년 12,444명, 2013년에는 14,014명이었으며, 2014년에는 22,361명, 2015년에는 25,795명, 2016년에는 30,515명, 2017년에는 41,500명, 2018년에는 50,63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참여자 수 급증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도 2009년 20개에서, 2010년 77개, 2011년 150개, 2012년 271개, 2013년 278개, 2014년 304개, 2015년 308개, 2016년 300개, 2017년 및 2018년 309개로 크게 늘어왔다.

늘어나는 재한외국인에 대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내실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해졌다.

그림 27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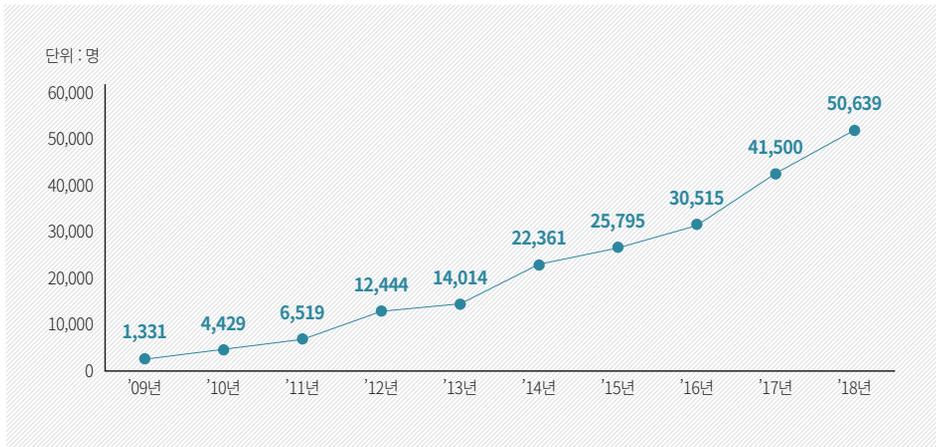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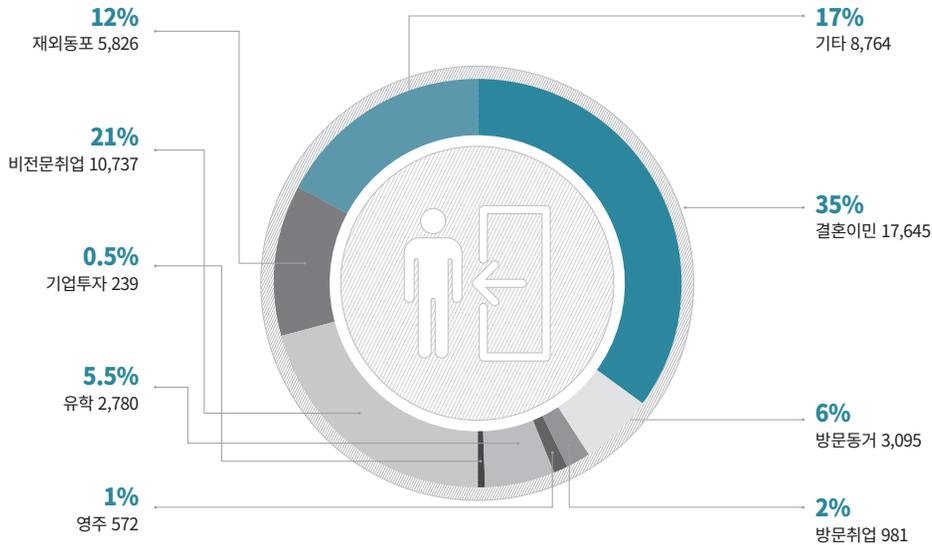


그림 28 체류자격 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2018년)

(단위: 명)



## 1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적·영주 연계

2018년 3월부터 귀화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적취득 예정자에 대해 국민 기본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으로 영주자격 취득 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기본소양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 2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 실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다른 법령 체계 등으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생활법률특강, 금융·경제 교육, 범죄예방교육,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 2018년 총 3,080명이 이수하였다.

또한, 올바른 소비자생활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 2018년 12월 법무부-한국소비자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소비자교육 과정 개설,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를 소비자교육 강사로 양성하는 등 외국인 소비자권리 향상에 관한 사항이다.

그림 29 법무부-한국소비자원 간 업무협약식



### 3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접근성 제고

이민자 교육환경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임신, 출산, 장애, 취업, 격오지 거주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하여 1명의 강사가 9명의 이민자와 컴퓨터 화상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하는 ‘온라인 화상교육’을 2018년 10월 기준 평일반 운영에서 주말반까지 확대 개설하여 참여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2018년 총 1,256명 화상교육 참여)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동영상으로 개발하여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복습, 보충학습 등 학습의 기회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하였으며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언어로 강의를 진행하고 베트남어·중국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필리핀어 등 5개 언어로 자막 처리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 제3항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이민통합과 사무관 임동규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중도입국 외국인 자녀, 외국인유학생 등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조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기초법·제도 안내 및 사회적응정보를 제공하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민자의 다양한 체류유형에 맞게 일반적인 사회적응정보 외에 미래진로, 부부 교육, 인권보호, 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등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79,656명이다.

그림 30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과정



### 제4항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태길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생활 관련 법률수요도 늘 어나는 추세이다. 법무부는 언어장벽, 정보부족, 변호사 비용 부담 등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이혼, 범죄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마을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상담사례집을 발간·배포하였고, 2018년 1,030건의 상담이 제공되었다.

그림 31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 제5항 이민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이민통합과 주무관 최연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민자 상호간 한국생활 정보교류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민자 네트워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사랑방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통·번역, 민원안내 도우미 등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2018년 6월 이민자 네트워크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활동상을 공유하

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사례를 언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활동상을 널리 알렸다.

그림 32 이민자 네트워크 대표 간담회



## 제6항 제8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개최

###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태길

2018년 10월 28일 법무부는 서울상암월드컵공원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 적응지원과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제8회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고충상담에는 교육부·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대한의사협회·치의협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하였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 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평화광장, 하늘공원둘레길(3.8km) 걷기행사와 함께 외국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부합동고충상담이 진행되었고,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등 보건의료단체가 운영하는 건강캠프를 함께 실시하여 참가한 재한외국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충상담과 함께 실시된 한마음 걷기축제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가족단위의 참가자가 많았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그림 33 제8회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 제7항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태길

2018년 5월 18일 서울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41개국 외교사절 50여명, 재한외국인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세계인의 날은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어우러져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열린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날이며, 국민이 공감하면서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사)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신조야 대표가 대통령표창인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하였다. 신조야 대표는 2006년부터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해왔으며 고려인동포 자녀를 위한 청소년문화센터를 개소하여

청소년 탈선 예방사업을 해왔고 2016년 고려인마을방송 '고려FM방송'을 통해 고려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한민족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는 등 국내 고려인을 비롯한 내·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사)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서광석 센터장과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손인환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안산다문화지원본부, 시흥희망의료봉사단 등 2개 단체와 국제이주기구 박미형 소장, 천주교 수원교구 광주이주목사센터 지오지아니 마우리시오 센터장, 천주교 대구교구 가톨릭근로사회관 이관홍 관장, (사)국제과학기술자협력단 임봉수 단장,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홍성직 대표 등 5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김설경 실장 등 5명과 부산외국어대학교 등 2개 단체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계인의 날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행사 외에도, 재한외국인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사연 등의 생생한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재한외국인 생활 체험 수기 공모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가치나 상징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4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5.18.) 및 관련 공모전 개최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지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제8항 국제결혼 피해방지 및 건전한 국제결혼가정 형성 지원

이민통합과 주무관 최연준

### 1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인권교육 추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201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7개 국가 국민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의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3월 결혼이민자의 인권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내용의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하였다.

## 2 결혼이민자 가족 체류제도 개선

법무부는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해 친정 부모 등 가족의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2018년 2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부모 등 가족 체류요건 완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의 육아 현실과 어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친정 부모 체류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의 체류요건을 자녀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허용(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하기로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도록 하여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 자녀들이 외조부모 등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제6절 |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및 정책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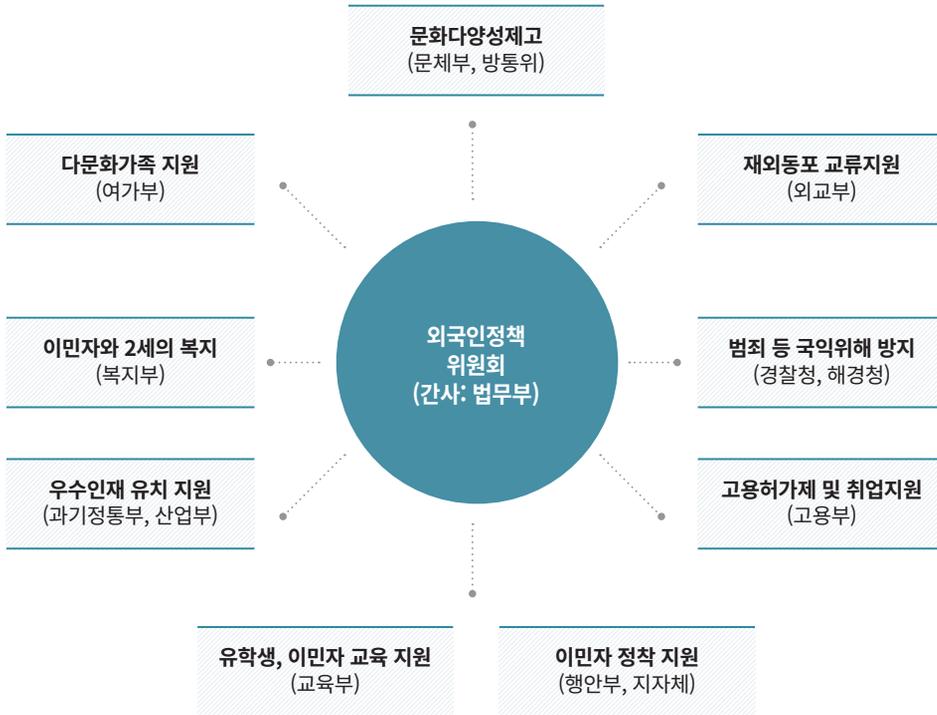
### 제1항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 ~ '22) 수립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이동용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에 따라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2018년 2월 12일 “제21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에 관한 기본 설계도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을 수립하였다.

그림 35 외국인정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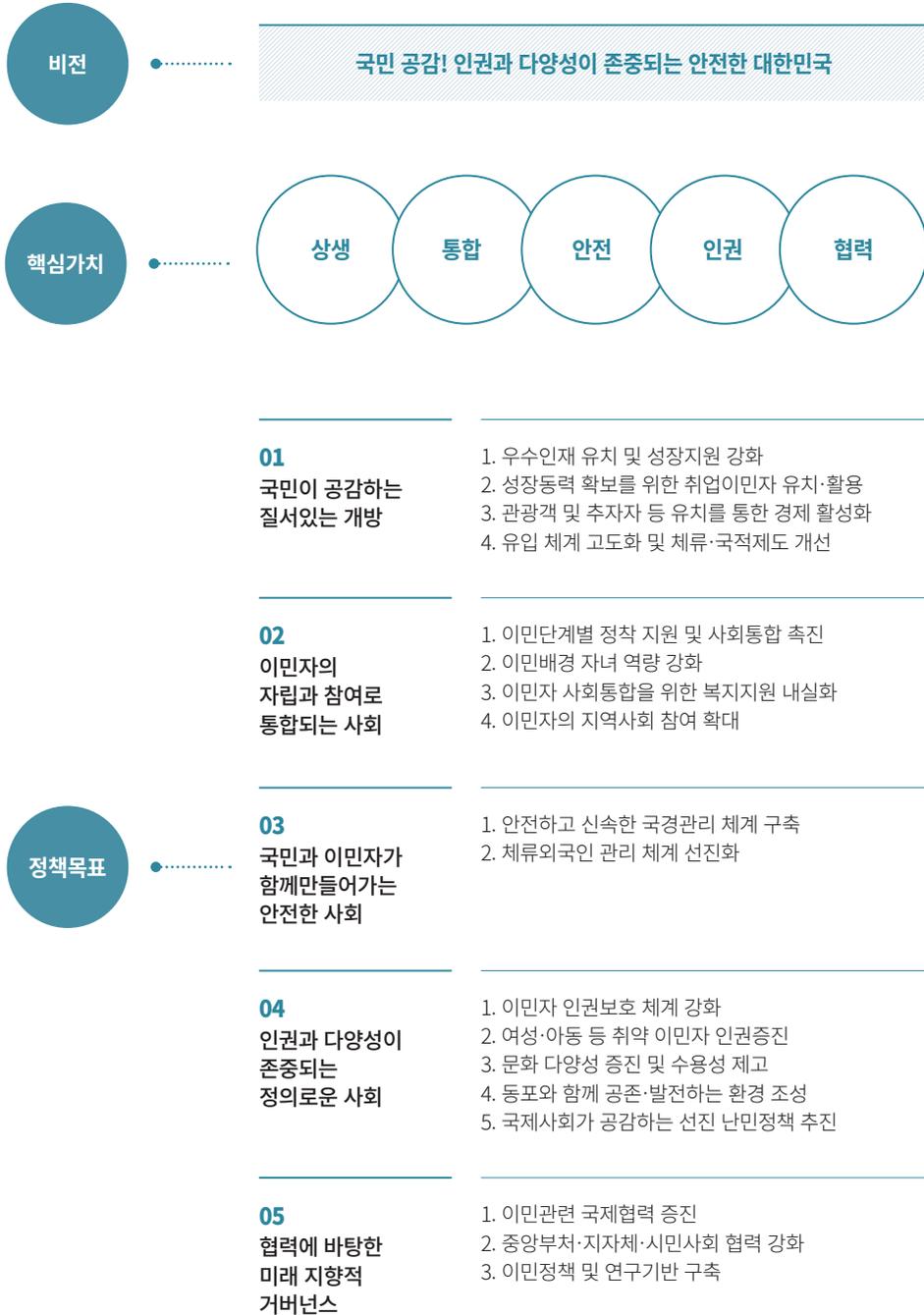


## 2 평가 및 발전방향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에 도달한 후, 9년 만인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는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저임금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논란 등도 발생하고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년)」은 이민자의 유입이 국민 일자리, 사회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경제와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환경을 조성하며,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이민자를 유입함으로써 미래의 사회통합 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선순환적 이민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6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제2항 20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이동용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이 수립됨에 따라 2018년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2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등을 중점 과제로 하는 「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2 주요 내용

「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201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4,731억 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 인재유치 해외조직망 및 인재유치포털 운영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지원,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수요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학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무 중앙부처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창업비자를 발급하여 창업이민 활성화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 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 ②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생활정보 제공 기능 확대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기능 강화
- 집합교육 외 동영상 강의 등 온라인 교육과 지자체 문화·역사 탐방 등 현장 학습 및 생활교육 활성화 및 이민자의 배우자,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사회 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마련
- 다문화학생의 이중 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국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및 이중 언어 교재 9종<sup>6)</sup> 보급

## ③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및 단기방문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협정 체결을 통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 확대
- 테러방지 등을 위해 탑승불가 통보자에 대한 운수업자의 탑승방지의무를 규정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운영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 정보 활용 체계 강화
-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외국인 주민단체 등과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외국인 체류허가 전 세금·건강보험부당이득금,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납부 유도

## ④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 재한외국인 지원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업무 관련 고충 처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강화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에 최소 기준 설정,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신규인력 배정 중단, 숙소 항목별 최소 기준 미충족 사업장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 부과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6)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등

-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기초법·제도 교육 강화 및 조기적응 지원, 성공한 동포 모범사례 발굴, 동포 인식개선 전문가 양성,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동포인식개선 교육 추진
  - 난민 심사 인력 및 조직 확충, 난민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직무교육 실시,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확보, 국가정황 정보 DB 구축 등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 ⑤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 체류외국인의 지속가능한 자발적 귀환 유도를 위한 현지 개발 협력 지원을 통해 귀환이민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능력 향상 도모
  -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 등 이민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워크숍 참석,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기구 협력 증진, 주요국 이민당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핫라인 구축 등 양자 협력 강화
  - 외국인·다문화관련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정책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한 부처 간 논의 활성화, 외국인·다문화관련 국가 기본계획 간의 상호 연계성 증진을 위한 위원회 협력 증진

### 제3항 출입국·이민 실무 정책발표회 개최

####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육효재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 11월 2일 외국인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출입국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에서 직원이 참여하는 정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이래로 매년 출입국·이민 실무 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출입국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2 평가 및 발전방향

2018년 정책발표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44개 과제를 제출할 정도로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0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2018년 11월 2일 개최된 정책발표회에서 ‘보이는 ARS와 FRMS를 연계한 효율적인 단속신고 접수 방안’이 최우수상을,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과 연계된 사범업무 디지털화 방안’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출입국심사 교육방안’이 우수상, ‘보호외국인 관리 전산화 방안’과 ‘여성공무원 단속전담팀 신설 방안’, ‘단기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이용 확대방안’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7 제21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 제4항 이민정책포럼 개최

### 외국인정책과 주무관 옥효재

#### 1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9일부터 수요정책포럼이 시작되었다. 2016년 3월 24일 ‘이민정책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제 및 발표방식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였고, 2017년 9월부터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하여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 e나라도움 화상회의를 활용하여 일선 기관 직원들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주요 내용 및 평가

2018년 이민정책포럼을 통해 학자, 언론인, 주한대사관 주재관, 각국 이민부서의 중견관리자, NGO임직원,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등 외국인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였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미국 이민정책과 다문화 한국’, ‘중국동포 이주 역사 및 상생의 비전’, ‘빅데이터가 여는 세상’, ‘육로 출입국 심사방안’, ‘지능형 영상감시 및 홍채인식 시스템’, ‘2018년 중동 정세’ 등을 주제로 초청 강사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이민정책 환경과 세계적 이민정책 동향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듣고 토론을 함으로써 정책추진 역량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는 등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38 이민정책포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제7절 |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 제1항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 난민과 사무관 이정미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여 인권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에, 시리아 및 예멘 내전의 장기화, 종교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매년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된 심사인력 등의 한계로 난민심사 적체는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12 난민신청 및 심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난민신청	2,896	5,711	7,541	9,942	16,173	
적체	1차	2,145	3,301	3,715	7,209	17,159
	이의신청	963	2,141	3,146	2,364	2,77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난민심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난민 심사제도를 구축하였다.

2013년 7월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해 오던 10개 난민심사 거점기관 및 2015년 9월부터 운영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

과 내 난민심사전담팀을 2018년에도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난민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직제를 개정하여 난민심사 인력을 2017년 10명에 이어 2018년에도 8명 증원하였고, 난민전담공무원 특정직위(7명)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난민전문통역인 풀 재정비, 난민전문통역인의 보수교육 의무화 등 난민통역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2017년 10월 난민심사 면접 부실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문제 소지가 있는 55건의 난민신청 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난민면접기법 교육 강화, 난민면접 녹음녹화 전면 실시 등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2017년 12월 제주와 쿠알라룸푸르 간 직항편이 신규로 취항된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 중이던 예멘인들이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해 2018년 한해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대립하며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약 71만 5천명이 동의하는 등 난민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 1]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는 난민심사관의 난민신청자 출신국 국가정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난민신청자 진술의 사실관계와 국가정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로, 법무부는 난민심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난민심사관을 대상으로 난민심사실무에 관한 사이버 교육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집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난민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심사 절차 및 난민심사의 이론과 난민면접 기법 등 실무경험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소속기관 난민업무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였고, 국제적 수준의 난민심사 기법을 배우기 위해 2018년 1월 유엔 난민기구(UNHCR)와 공동 교육프로그램(면접기법, 해외사례 및 국가정황 등)을 개발하였다.

그림 39 난민심사관 교육 및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UNHCR 공동 난민심사관 교육 >

< 난민심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 >

2018년간 총 6차례 해외 난민전문가 및 국내 인권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UNHCR 난민면접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수준의 면접 기법을 공유하였고, 프랑스 보드도 모테뉴 대학 종교전문가를 초청하여 종교박해 사례에 대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익히고 이를 실무에 접목하여 사례 연습을 하였으며, 국내 난민전문가 초청 강연회 1회, 캐나다 난민면접 전문가 초청 강연 1회 등 난민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난민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국가정황 이슈페이퍼 발간 등 국가정황정보 수집·분석 및 발간하여 난민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2 통역인 제도 개선

난민신청자의 국적과 언어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통역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난민전문 통역인 풀(Pool)을 구축하였다. 2018년 2월에 13개 언어 26명 신규위촉, 4월에 18

개 언어 148명 재위촉 등, 2018년 12월말 현재 24개 언어 173명의 난민전문 통역인이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난민통역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난민전문통역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2월 및 12월 등 2차례에 걸쳐 난민전문 통역인에게 난민의 개념, 난민인정절차, 통역인 윤리 및 통역 실습 등이 포함된 통역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역인 풀(Pool) 확충을 위해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수시로 난민전문 통역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난민전문 통역인 제도를 개선하였고,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하여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통역 수요가 많은 언어 중심으로 난민전문 통역인 직접 고용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 제2항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난민과 사무관 김종무

### 1 재정착난민 수용

재정착난민제도는 「난민법」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해외 난민 캠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분담과 난민 인권보호를 통해 인권국가 대열에 합류하고 아시아지역 난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15년 도입되어 현재 시범 시행 중이다. 재정착난민 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37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재정착 난민 수용에 참여하고 있다.

#### ① 1차 시범사업

2014년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였고 현지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거쳤으며 2015년 제16회 외국인정책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태국 또는 말레이시아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을 연 1회 가족단위로 약 30명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재정착난민 수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되었다.

2015~201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내로 입국한 재정착 난민은 총 86명(11가족)이다. 재정착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난민 중 서류심사, 현지면접조사, 신원조회 등 심사절차를 통해 선발되었고, 건강검진 및 출발 전 사전교육을 거쳐 국내로 입국하여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및 한국 사회 교육 등 초기정착 지원을 받은 후 모두 지역사회로 정착하였다.

재정착난민 시범사업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재정착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되었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구제 실천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호평을 받았다.

그림 40 1차 시범사업 재정착난민



< 재정착난민 입국 >

< 정착(은행통장 개설) >

법무부는 1차 시범사업 재정착 난민의 정착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착난민 정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 재정착한 미얀마 난민들은 취업, 재정상태, 아동교육, 건강 등 10가지 정착 지표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아, 해외의 재정착 난민 수용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시범사업의 성공만으로 사업 정규화를 진행하기엔 아직 이르며,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난민 수용 논란 등을 고려해 국민의 지지와 동의 속에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② 2차 시범사업

1차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호평에도 불구하고, 재정착난민의 지역사회 정착 기간이 정착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점과 사업 수행국이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 6월 개최된 제2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재정착난민수용 시범사업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제2차 재정착난민 수용시범사업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18년 말레이시아 내 등록된 도시 난민 중 미얀마인 26명(8가족)을 재정착 난민으로 국내 수용하였다. 이들은 현재 지역사회 정착을 준비하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초기정착 지원을 받고 있다.

향후 재정착난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초기 정착 지원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체험 학습, 직업 체험 등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 편중되었던 정착지를 다각화하기 위해 재정착난민을 수용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주축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림 41 2차 시범사업 재정착난민



&lt; 현지 면접 &gt;

&lt;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소 &gt;

### ③ 민관 협업체계 구축

재정착난민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으로 재정착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018년 총 2회 개최된 재정착실무협의체에서는 기관 간 협력사항 및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에 정착한 86명의 재정착난민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취업연계, 직업훈련,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제공하였다.

## 2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에 따라, 본국의 박해로부터 피난하여 우리나라에 보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에 상당하는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난민 지위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소득·자산, 주거, 자녀동반 또는 임신여부, 중대한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결정하되, 난민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로 지급된 비용은 총 8억1천7백만 원이며, 가구당 1회 생계비 지원금액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3 생계비 지원금액**

(2018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센터 비 입주자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센터 입주자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2018년 한해 전체 난민신청자 16,173명 중 1,765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624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 3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숙식·의료 등 기초생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로, 2013. 11. 1. 개청하였다.

지원센터에서는 난민 등의 초기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초 법질서 교육 등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이동대상 외국인 교실 운영, 체육 시설 개방, 관내 외국인 대상 이동출입국사무소 운영,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선발 등 지역사회와 상생·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2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



<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



< 보라매아동센터 기부물품 전달 >

2018년 지원센터 이용신청을 한 사람은 총 165명이며, 이 중 155명이 입소허가를 받았다. 동 기간 동안 지원센터를 퇴소한 인원은 164명이고, 일평균 이용 인원은 66명이다.

### 제3항 제주 예멘 난민

#### 난민과 사무관 이정미

#### 1 예멘 난민신청자 유입배경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은 종파 갈등으로 2015년 시작된 내전이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국가이다. 예멘 내전으로 민간인 사상자는 1만 명에 달하고, 콜레라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 등 3천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예멘 전체 인구의 2/3인 1,8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림 43 예멘



내전을 피해 예멘을 떠난 난민들 중 일부는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탈출하여 2018년말 2,830여 명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UNHCR 발표 자료)에 머물고 있다.

2017년 12월 제주와 쿠알라룸푸르 간 직항편이 신규로 취항된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거주 중이던 예멘인들이 제주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2018년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602명 중 549명이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였다.

표 14 연도별 예멘(Yemen)인 난민신청자 수

(단위 : 명)

구분	합계	1994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난민신청자	<b>1,032</b>	38	130	39	92	131	602
제주무사증 입국 후 난민신청자	<b>598</b>	-	-	-	7	42	549

## 2 난민수용에 대한 국민여론 찬반 논란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짧은 기간에 549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신청 하면서 이들의 난민수용 여부를 두고 전 국민적 논쟁이 일었다. 예멘 난민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가짜 난민이다”, “난민을 수용하면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레바논처럼 한국이 이슬람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라는 등의 가짜 뉴스도 난민 혐오를 부추기는데 기여하였다.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청원 마감일(7. 13.)까지 총 714,875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였고, 8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7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대해 답변하였다.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제주,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난민 수용 반대 집회가 총 21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난민 수용 찬성 집회도 4~5차례 개최되었다.

그림 44 난민수용 찬반 집회



< 난민수용 반대 집회(연합뉴스, 2018. 6. 30.) >



< 난민수용 찬성 집회(한겨레, 2018. 6. 30.) >

### 3 정부의 대응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신청 급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시행하였다.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하여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5월 2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 1일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하였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29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하였고, 7월 10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제주도를 직접 방문하여 난민심사 진행 상황 점검 및 난민심사관들을 격려하며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심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림 45 법무부차관, 제주도 방문



이후 9월 14일, 10월 17일, 12월 14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출도 제한된 484명에 대하여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 412명, 불인정 56명, 난민심사 절차 직권 종료(출국 또는 자진 철회) 14명 등 심사를 완료하였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는 이들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sup>7)</sup> 교

7)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 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73명 멘토 위촉)을 구축하여 2018년 하반기 중에 총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국내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출도제한 조치와 더불어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2차례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을 지원하면서도, 국민 일자리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건설업 등에는 취업을 제한하였다.

그림 46 제주 예멘 난민 취업설명회 및 한국 사회문화 교육



< 취업설명회(뉴시스, 2018. 6. 18.) >



< 취업 현장 >



< 한국 사회문화 및 법질서 교육 >

#### 4 향후 계획

법무부는 예멘 난민에 대해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특화된 우리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법질서 및 사회적 가치와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을 개정하여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진정한 난민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제4항 난민업무 처리 현황

#### 난민과 사무관 이정미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8년 말까지 총 48,906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936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1,988명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였다.

1994년부터 2010년까지는 난민신청자가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으로 폭증하였다.

난민인정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난민인정자는 561명으로, 전체 난민인정자 936명의 약 60%에 이르고 있다.

2018년에는 144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기간의 내전 등 자국 내 인권상황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514명의 신청자가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받았다.

## 제8절 | 국제협력 강화

### 출입국기획과 주무관 공동원

국제이주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과거보다 더욱 가속화 되어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는 8,890만 명을 넘었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도 약 23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민 당국 간 국제이민 협력체계의 확립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제 환경 변화와 흐름에 부응하여, 국제테러, 불법이주 문제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OECD 이주정책 전문가회의, IMO 국제해사기구회의 참석, 제109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회의 등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인 이민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권보호에 노력하는 한편, ICAO의 여행자 신원확인 프로그램 지역세미나(생체정보를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승객정보 활용)의 각국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FMD) 등 국제협의체를 통하여 파트너십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적·재정적 비용 절감을 위한 협력방안, 개발요인으로서의 이주, 이주와 이동분야 현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5년 이후 UN 개발의제를 위한 이주의 틀 논의 등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 현안이 있는 일본, 호주, 몽골 등 이민 당국과 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한공관원을 초청하여 출입국 정책을 소개하는 이민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 주요국의 이민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하는 차세대 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 직원 상호 교환연수, 정책연수 등 실무자간 인적 교류사업을 통하여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 제1항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국제이민 협력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를 위해 이민에 대한 각국 운영사례와 개선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년 다양한 이주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을 세계 각국에 소개하는 한편, 해외 이민당국의 초국가적 범죄대처방안 등 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① IMO 국제해사기구회의 ② OECD 이주작업반 회의 ③ 2018 APEC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 회의 ④ IGC(국가간이민정책협의체) 워킹그룹 회의 ⑤ 제11차 GFMD 회의 ⑥ 유엔난민기구(UNHCR) 제69차 집행이사회 ⑦ UN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대표단 ⑧ 제109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 제2항 양자협력 강화 및 교류 다양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해외 이민당국과 실질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국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인력 송출국가, 이민행정 선진국가 등 우리나라와 이주 관련 현안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이민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편의를 지원하고 이민당국 간 현안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 공식채널을 만드는데 정책적 중점을 두었다.

2018년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상응하여 한·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가졌고, 하반기 호주, 몽골 등과의 고위급 회담을 실시하여 출입국관리 분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관련 동의를 얻어냈다.

그림 47 고위급 회담



<한·일 고위급 회담 >



<한·호주 고위급 회담 >

2018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IOM,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및 아시아, 미주, 유럽지역 14개국의 미래이민정책결정자 20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 Future Immigration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를 통해 전 세계 이민국 직원들이 각국의 이민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민행정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위 회의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 (IOM, WORLD BANK)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출입국관리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층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우수성 홍보, 각국의 주요현안 및 출입국정책 정보공유, 해외 이민당국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젊은 해외 이민 국 우수인재들을 초청하여 친한 인사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20~30년 후 양자 간 이민협력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국제협력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 48 차세대이민정책전문가회의(FILC)



한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글로벌시대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닐 수 있도록 정책연수 및 직원교환연수를 연중 시행하였으며, 선진 이민정책 벤치마킹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책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4개 과정에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양국 이민당국 실무자급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국가의 이민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15 2018년 직원 국외 출장 현황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1	2.5~2.10	인도네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취경, 주사보 김시화
2	2.19~2.25	미국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1차 공식협상 참석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세진
3	2.22~2.28	파푸아뉴기니	2018년 APEC 제1차 기업인 이동그룹 회의 참석	출입국심사과 주사보 김시화, 도심공항출장소 주사보 김지연
4	2.25~3.1	태국	제5회 ANDEX회의 참석	이민정보과 주사보 곽준석
5	2.26~2.28	말레이시아	재외공관 비자발급 업무 적정 수행 및 비자관리 운영현황점검	인천청 주사 손흥기
6	3.25~3.27	중국	한-중국 출입국 고위급 회담	외국인본부장 차규근, 국적·통합정책담당장 김영근, 출입국심사과장 김두락, 체류관리과장 이덕룡,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유현송
7	4.8~4.14	홍콩	홍콩 중견관리자급 상호교환 연수 참가	체류관리과 주사 용창식, 안산출장소 주사 주지정, 인천청 서기보 이수지
8	4.9~4.13	스위스	난민 글로벌 컴팩트 채택을 위한 정부간 3차 공식회의 참석	난민과 주사보 문아라
9	4.15~4.22	이탈리아	이탈리아 국제인도법학회 제93차 난민법과정 연수	난민과 주사 임연주
10	4.22~4.28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사증업무 개선 및 비자신청센터 확대추진 검토	체류관리과장 이덕룡, 사무관 김명훈
11	4.30~5.5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재외공관 사증발급 업무 점검	출입국기획과장 박상훈, 인천청 주사 손흥기, 체류관리과 주사보 송지훈
12	5.1~5.6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외국인본부장 차규근, 화성보호소장 김병조, 서울청 난민과장 박제성, 출입국기획과 주사보 곽은상
13	5.3~5.9	싱가포르	제22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참석	출입국심사과 주사보 김시화
14	5.13~5.26	홍콩	한-홍콩 실무자급 상호연수 프로그램 참석	부산청 주사 이경호, 전주사무소 서기 이강미, 인천공항청 서기 이호수, 서기 장준오
15	5.13~5.19	러시아,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 발굴 및 외국적 동포 현황 파악	국적과 사무관 김진성, 주사 이호수, 인천공항청 주사보 강민아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16	5.20~5.26	남아프리카 공화국	재외공관 사증발급업무 점검	수원청장 이동권, 체류관리과 주사 박창두, 인천공항청 주사보 이영준, 서기 이길식
17	5.21~5.26	네덜란드	네덜란드 송환청의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사례 연구	수원청 사무관 김기영, 이민조사과 주사보 이재목, 세종로출장소 서기 이예슬
18	5.28~6.2	독일	한-독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실무회의 참석	인천청 주사 손흥기, 부산청 주사 박병건, 출입국심사과 주사보 김시화
19	6.19~6.22	태국	한-태국 이민청간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	이민조사과장 이재유, 사무관 윤상용,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안동관
20	6.18~6.23	독일	한-독일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협력 약정 체결	외국인본부장 차규근,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이민정보과장 이상달, 이민조사과 주사 안재필, 출입국심사과 주사보 김시화
21	6.16~6.20	네덜란드	IGC워킹그룹 회의참석	수원청 주사 이향숙
22	6.24~6.28	프랑스	OECD이주작업반 워킹그룹회의 참석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23	6.24~6.30	이탈리아	이탈리아 난민법 연수	인천공항청 주사보 문수영
24	6.23~6.26	대만	대만출발 크루즈 관광객 대상 선상심사	부산청 주사보 정혜영, 여수사무소 주사보 박수찬, 인천청 서기 김현우, 제주청 서기보 김지민
25	6.24~6.29	스위스	2018년 ATCR 회의참석	난민과 사무관 김종승, 주사보 오주현
26	6.28~6.29	대만	한-대만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MOU체결	출입국정책담당장 장세근, 출입국심사과장 김두락,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인천공항청 주사보 김주현
27	7.2~7.7	태국, 라오스, 베트남	육로 및 철도 출입국절차 해외운영사례 연수	인천공항청 주사보 황정운
28	7.8~7.14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선발포인트 시험장 및 교육상황 점검,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적정성 여부 점검	체류관리과 주사 박정석
29	7.15~7.21	미국	미국 이민국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및 강제추방 대상 외국인 추방심판 기관 연구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주사 김용국, 전문위원 이미성, 전주사무소 주사보 유승훈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30	7.22~7.28	태국	제23차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공식 협상 대표단 참석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31	8.4~8.9	파푸아뉴기니	2018년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산하 BMG회의 참석	출입국심사과 주사보 김시화, 도심공항출장소 주사보 김지연
32	8.13~8.19	말레이시아	2018년 재정착난민 수용 대상자 현지 면접조사 실시	난민과 사무관 김종승, 주사보 문아라, 인천공항청 주사보 이태훈
33	8.28~8.30	중국	2018년 한-중 영사국장 회의 참석	체류관리과 사무관 주지정
34	9.23~9.28	스위스	정부간 이민정책협의체(IGC) 신원관리분야 워크숍 참석	이민정보과 주사보 류우형
35	10.7~10.12	스위스	정부간 이민정책협의체(IGC) 사회통합관련 실무자회의 참석	이민통합과 주사보 이황원
36	9.16~9.23	멕시코	재외공관 국적업무 실태점검 및 담당직원 교육 실시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주사보 김기현
37	9.17~9.21	중국	2018년 중국 공항 상호연수 프로그램 참여	인천공항청 주사보 이승현, 서기 서민지, 서기 이혜진, 서기 박영은, 서기 정원영, 부산청 서기 김재원
38	10.3~10.6	대만	국제 국경관리 세미나 참석	이민정보과 주사 남궁재형
39	9.30~10.7	스위스	유엔난민기구(UNHCR) 제69차 집행이사회 참석	난민과 사무관 이정미, 주사보 나영미
40	10.16~10.20	프랑스	ICAO PKD BOARD 회의 참석	이민정보과 주사 김유신, 인천공항청 주사보 박원진
41	10.16~10.20	스위스	정부간 이민정책 협의체(IGC) 실무자회의참석	난민과 주사 강민중
42	10.22~10.27	캐나다	2018년 제14차 ICAO TRIP 심포지움 참석	이민정보과 주사 임동영, 인천공항청 주사보 송지연
43	10.23~10.28	스위스	정부간 이민정책협의체(IGC) 실무자회의 참석	출입국심사과 주사보 김시화
44	10.22~10.27	뉴질랜드	제2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참석	체류관리과 주사 박병건, 서울청 주사보 정윤미
45	10.22~10.25	일본	일본전문인력 도입정책 및 난민인정제도 연구	난민과 주사보 이도현, 울산사무소 주사보 박은진, 인천공항청 서기 전상윤, 서기 김소임, 서기 김우진
46	11.6~11.9	말레이시아	재정착난민 출국 전 사전교육 실시 및 출입국지원	난민과 주사보 문아라
47	11.3~11.10	호주	호주 이민정보분석프로그램 초급과정 참가	인천공항청 주사보 황지희, 서기 정정래, 서기 하소정, 서기 유민혜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48	11.10~11.17	호주	호주 이민성 정보분석 교육 참가	인천공항청 주사보 강인태, 주사보 김은정
49	11.26~12.1	스위스	제109회 IOM총회 및 IGC 고위급 회의 참석	출입국정책담당장 김영근,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향숙, 서울청 석봉준, 인천공항청 주사보 김수나
50	11.27~12.1	러시아	한-러 영사국장회의 참석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나현웅
51	11.26~12.2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2018년 하반기 재외공관사증 지도점검	출입국심사과장 김두락, 체류관리과 주사 용창식, 인천공항청 주사보 오래균, 서울청 주사보 김선미
52	11.24~11.30	호주	호주 이민성 조직개편 및 난민심사과정 연구	외국인정책과 주사 옥효재, 난민과 주사 조철호, 제주청 사무관 조승래, 부산청 주사 최은철, 인천청 주사보 김옥희
53	12.3~12.5	몽골	제9차 한-몽 영사국장회의 참석	체류관리과장 이덕룡, 인천공항청 주사보 구분민
54	12.1~12.7	스위스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제17·18·19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	난민과장 김정도, 이민조사과 사무관 박주현
55	12.3~12.6	베트남	해외민간 한국어 교육기관점검	이민통합과 주사 최연준, 주사 김원희, 인천공항청 주사 유상변
56	12.3~12.9	모로코	제11차 GFMD 참석	외국인정책과 주사 이동용, 인천공항청 서기 이재령
57	12.2~12.7	캐나다	캐나다육로국경심사 및 크루즈 인프라 연구	출입국심사과 주사 이현곤, 인천공항청 주사보 윤동운, 창원사무소 주사보 민영삼, 서울청 서기 이윤주
58	12.10~12.14	중국	중국공익사업 투자이민 설명회 개최	KOICA파견 사무관 정금심, 체류관리과 주사 박창두, 인천공항청 주사 박송배, 서울남부사무소 주사보 강윤선
59	12.14~12.22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난민 및 이주민 동향, 국가정황 연구	난민과 사무관 홍인표, 서울청 주사 김상열, 광주사무소 주사보 고광훈, 인천공항청 서기 배인철
60	12.11~12.14	태국	태국 불법입국 현황파악 및 공항만 심사실태 연구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호원, 이민조사과 주사 김영필, 인천공항청 서기 김수환, 서기보 손정완

연번	기간	국가	회의·세미나 내용	참석자
61	12.18~12.21	말레이시아	2018년 제2차 재정착 수용대상자 출국전 사전교육 및 출국지원	난민과 주사보 나영미, 서울청 주사보 이서영
62	12.25~12.27	일본	한-일 출입국관리 고위급 회담	외국인본부장 차규근, 난민과 사무관 이정미, 출입국기획과 주사보 김보성, 서울청 서기관 안동관

표 16 2018년 외국기관의 주요 인사 방문 현황

연번	일자	국가	방문 목적	예방자
1	1. 9.	몽골	한-몽골 출입국관리 분야 의제 논의	주한 몽골대사 강볼드 등 3명
2	1. 16.	호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회의 진행	주한 호주대사 제임스 최 등 7명
3	1. 23.	호주	한-호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회의 진행	주한 호주부대사 리사 라이트 등 5명
4	1. 24.	독일	한-독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독일대사관과 회의 진행	주한 독일대사관 일등서기관 쇼트 스킨르닝
5	1. 24.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회의 진행	주한 인도네시아 이민연락관 수지토 수리아 등 3명
6	2. 2.	일본	한-일본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과 회의 진행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토루 시라토리 등 5명
7	2. 13.	이집트	한-이집트 출입국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이집트 대사관과 회의 진행	주한 이집트대사관 대사대리 디아 엘 딘 하마드
8	2. 21.	독일	한-독일 출입국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독일 연방경찰청 및 대사관과 회의 진행	독일 연방경찰 청장 디터 로만 등 10명
9	4. 5.	호주	한-호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호주대사관과 회의 진행	주한호주대사관 1등서기관 필 맥오리프 등 3명
10	5. 9.	일본	한-일 출입국관리 정책분야 논의 및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공관원과 면담 실시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토루 시라토리 등 2명
11	5. 11.	국제이주기구 (IOM)	법무부-국제이주기구 간 상호협력방안 등 논의	사무총장 윌리엄 레이스 스윙 외 2명

연번	일자	국가	방문 목적	예방자
12	5. 16.	멕시코	유엔에서 주관하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한 멕시코 대사와의 면담	주한멕시코대사 브르노 피규로아 등 3명
13	5. 23.	조지아	한-조지아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논의를 위해 주한 조지아대사관 공관원과 면담	주한조지아대사관 참사관 다빗 칩바이드즈
14	6. 27.	홍콩	한-홍콩 고위급 회담 시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 실시 합의에 의한 방문	홍콩출입경관리국 견관리자 라우 위파이 안페니 등 3명
15	7. 6.	일본	한-일본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일본대사관과의 회의 진행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 마나부 무라카미 등 2명
16	7. 30.	몽골	몽골이민청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한-몽골 고위급 회의' 진행	몽골이민청장 무룬 아쉬도즈 등 7명
17	8. 23.	키르기스	주한 키르기스 대사관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회의 진행	주한 키르기스대사 클르츠벡 술탄 등 2명
18	8. 30.	일본	한-일본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일본대사관과의 회의진행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토루 시라토리
19	9. 12.	태국	한-태국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주한 태국대사관과의 회의 진행	주한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피뉴다 참찬스리 등 2명
20	9. 13.	호주	한-호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호주대사관과의 회의 진행	주한호주대사관 1등서기관 아만다 키드
21	9. 21.	일본	한-일본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과의 회의 진행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토루 시라토리
22	9. 28.	태국	한-태국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태국대사관, 태국노동부측과 면담	태국노동부장관 아돌 상싱케오 등 9명
23	10. 2.	태국	한-태국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태국대사관, 태국외교부측과 면담	태국 외교부 동아시아국 과장 파니도네 팻침사왓 등 5명
24	10. 26.	카자흐스탄	한-카자흐스탄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면담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바킷 슈센바예프 등 4명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연번	일자	국가	방문 목적	예방자
25	10. 31.	우크라이나	한-우크라이나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면담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호린 알렉산더 등 4명
26	11. 29.	태국	한-태국 출입국관리 협력관리 강화를 위해 태국대사관, 태국이민청 관계자 면담	주한태국대사관 공사 슈마테 출라자타 등 7명
27	12. 10.	일본	한-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과 회의 진행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토루 시라토리
28	12. 12.	호주	한-호주 출입국관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주한 호주대사관과 회의 진행	주한호주대사관 1등서기관 아만다 키드

# ANNUAL REPORT

2018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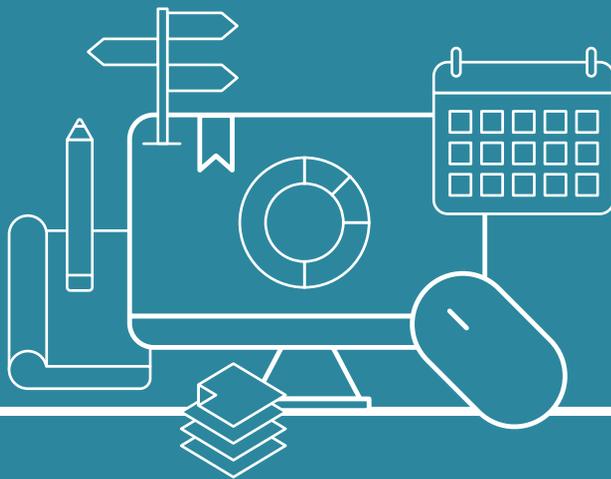


KOREA IMMIGRATION SERVICE

CHAPTER

03

# 일자별 주요 업무 처리내용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제1절 상반기

제2절 하반기

# 제1절 | 상반기

## 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및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간소화 방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동남아 3개국(베트남 · 인도네시아 · 필리핀) 우수기업 직원 및 유명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관광비자 신청서류 간소화(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로 재정능력입증 같음)</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본격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연간 쿼터 확대(300명→400명), 체류기간 요건 상향 조정(4년 이상→5년 이상) 등</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9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0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예술로 여는 통일</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5. 20. 제11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서 자체 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 재정착실무협의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1. 12.(금) 15:00, 외국인본부 회의실</li> <li>• 참석 : 난민과장(주재),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담당자 20여명</li> <li>• 내용 : 재정착난민 수용 및 정착 지원 방안</li> </ul> </li> </ul>	난민과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단속지역 지정 및 운영방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전국 34개 권역별 특별단속지역 지정 및 기관별 관리계획 수립, 광역단속팀 주관의 합동단속팀 편성 및 정기적인 단속 실시 등</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개정 시행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 규제자 재검색) 인천공항, 김해, 제주 등 권역별 분산 실시</li> <li>-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인이 조회 시작일과 종료일 선택</li> </ul> </li> <li>※ 2. 1.부 시행</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1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강자의 조건</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 제1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1. 19.(금) 15:00, 외국인본부 회의실</li> <li>• 참석 : 외국인본부장(주재), 내·외부위원 10명</li> <li>• 안건 : 우수인재로 국적신청한 외국인 5명에 대한 인정여부 심의</li> </ul> </li> </ul>	국적과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재외공관 지정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 허용</li> <li>※ 시행기간 : 1. 22. ~ 4. 30.</li> </ul> </li> </ul>	출입국 심사과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2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미국 이민정책과 다문화 한국</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방안 수립·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외국인 밀집지역의 조정, 경찰·지자체와 합동계도·단속, 외국인 커뮤니티 동향파악 등 관리계획 수립</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상반기 전국 조사과장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1. 26.(금) 16:00, 3·4동 지하 대회의실</li> <li>• 참석 : 전국 조사과장 등 30여명</li> <li>• 내용 : 건설업 분야에 대한 권역별 합동단속 및 집중 테마단속 적극 추진, 빅데이터를 이용한 불법고용업체 조사기법 개발, 보호소의 신속 퇴거 역량 강화 등</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급체납 확인제도 전국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행안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으로 '17. 5.부터 16개 출입국기관에서 시행해 온 '세급체납 확인제도'를 '18. 1. 29.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기관으로 확대</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 동계올림픽 '출입국 대테러상황본부 설치·운영 계획'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2. 9.~2. 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3. 9.~3. 18.)」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대테러상황본부 운영</li> </ul> </li> </ul>	출입국 심사과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3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CBP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설명</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입·출국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운영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중앙협의회 당연직 위원 재정비, 재심청구기한 연장(7일 이내→14일 이내) 등</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방문취업등포(H-2)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이수 개선 방안 등 기존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2. 2.(금), 09:00~17:00, UNHCR 한국대표부 회의실</li> <li>• 참석 : 전국 난민전담공무원 등 50명</li> </ul> </li> </ul>	난민과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4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HSI, CIS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설명</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2. 8.(목) 16:00, 외국인본부 회의실</li> <li>• 참석 : 위원장(출입국정책단장), 위원 7명(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과장급)</li> <li>• 안건 : '18년 상반기 정부합동단속 추진방안 등 논의</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배우자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를 위한 정보연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외국인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18. 3. 20. 시행)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등록외국인) 주민등록표 등재를 위한 정보연계</li> <li>- 주민등록표 등재 외국인의 완전출국, 소재불명 여부 제공</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전문통역인 후보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2. 9.(금), 10:0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회의실</li> <li>• 참석 : 난민전문통역인 후보자 30명</li> <li>• 내용 : 난민의 개념, 난민인정절차, 통역 기초 이론 및 윤리</li> </ul> </li> </ul>	난민과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1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6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2.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FTA 현황과 대응</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종합평가 대체 집중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귀화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사무소 배포</li> </ul> </li> </ul>	국적과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자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자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의무 면제 지시</li> </ul> </li> </ul>	출입국 심사과
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2. 26.(월) ~ 5. 11.(금) 11주간,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공단 등 대규모 사업장, 유흥주점·마사지업소 등 풍속저해 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벽인력시장 정부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2. 27.(화) 4:00, 남구로역 및 안산역 인력시장</li> <li>• 참여 : 총 146명(법무부 69, 고용노동부 13, 국토교통부 4, 경찰청 60)</li> <li>• 내용 : 중국인 등 33명 적발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 인력업체에 대해 고용 알선 여부 조사</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6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3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재정능력 입증방식 다양화,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취업 혜택 차등 부여 등</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기시험 수준 삭제 및 종합평가 응시 결과 제출규정 신설</li> <li>- 면접심사 면제 대상 추가</li> <li>- 생계유지능력 완화 대상 확대</li> </ul> </li> </ul> </li> </ul>	국적과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7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중국동포 이주 역사 이해 및 상생의 비전</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입지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무역비자제도 개선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무역실적 입증방식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 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li> </ul> </li> </ul>	체류관리과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마사지 업소 불법취업자 등 집중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기간 : 3. 12.(월) ~ 4. 6.(금), 4주</li> <li>• 참여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li> <li>• 내용 : 외국인 불법고용 성행 및 풍속저해 야기 유흥·마사지 업소 등 중점 단속</li> </ul> </li> </ul>	이민조사과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칙금 및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지침」 개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법칙금 처분 시 구체적 감경기준 마련 및 가중처분 기준(동일 규정 위반 시에만 가중) 정비</li> </ul> </li> </ul>	이민조사과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 인터폴장비(무효여권 정보 제공) 등 출입국 정보시스템의 관리·감독 강화</li> <li>- 매뉴얼 정비, 장애 등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보고 등</li> </ul> </li> </ul>	이민정보과
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외국인 취업비자제도 고용영향평가 연구(E7, E9을 중심으로)</li> </ul> </li> </ul>	외국인정책과
3.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제1회 난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3. 19.(월) 15:00, 외국인본부 회의실</li> <li>•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li> <li>•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li> </ul> </li> </ul>	난민과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9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미국의 이민법과 정책</li> </ul> </li> </ul>	외국인정책과
3.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 재정착난민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li> <li>• 참석 : 위원장(정인섭 교수), 본부장(내부위원), 자문위원 등</li> </ul> </li> </ul>	외국인정책과
3.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10주년 축하 기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체류·국적·고용 등 분야 다국어 민원안내 및 상담을 통해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도움을 주는 법무부 운영 콜센터(☎1345)</li> <li>• 내용 : 콜센터 개소 10주년(3. 31.)을 맞아, 간담회 및 기념행사 개최</li> </ul> </li> </ul>	체류관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3.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입국심사인 날인방식 변경 시범운영기간 연장 및 시범 기관 확대 지시</li> <li>내용 : '18. 1월 시행 인천공항 입국 외국인 대상 입국심사인 날인방식 변경(심사인 날인 → 입국심사 확인증 교부) 관련 시범운영 기간 및 시범 기관(김포공항) 확대 시행</li> <li>※ 김포공항 시행일 : 5. 1.</li> </ul>	출입국심사과

4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시행</li> <li>내용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외국인 유학생 인증대학에서 초청한 외국인 과학자의 국내 취업활동을 위한 '단기취업(C-4)' 비자 신청·발급 시 온라인방식의 '전자비자' 도입(재외공관 방문 불요)</li> </ul>	체류관리과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50회 이민정책포럼 개최</li> <li>주제 : 공공외교를 넘어 문화외교로</li> </ul>	외국인정책과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년도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추진실적평가보고회 개최</li> <li>일시, 장소 : 4. 5.(목) ~ 4. 6.(금), 부산 크라운하버호텔 회의장</li> <li>참석 : 본부 및 전국 동향조사요원 60명</li> <li>내용 : '17년도 동향조사 추진실적 평가 보고 및 우수 사례 발표 등 - 선원 밀입국 및 무사증 이탈 수사 사례(부산특조대) 등 9개 우수사례</li> </ul>	이민조사과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업종에 대한 테마단속(2차) 실시</li> <li>배경 : 건설업종의 외국인력 불법고용 만연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li> <li>단속기간 : 4. 9.(월) ~ 4. 20.(금) / 2주</li> <li>내용 : 건설현장 단속은 권역별 합동단속 병행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권역별로 주 2회 이상 실시</li> <li>※ 1권역당 건설현장 4곳, 6개 권역 총 24곳 이상 단속 실시</li> </ul>	이민조사과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유공자 후손 가족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li> <li>일시, 장소 : 4. 9.(월) 11:00, 법무부 대회의실</li> <li>참석 : 법무부장관, 외국인본부장, 광복회 부회장 등</li> <li>내용 : 독립유공자 차도선님 외종손녀의 배우자 등 7명에게 국적증서 수여</li> </ul>	국적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입·출·입국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4. 10.(화), 09:00~17:00, 한국이민재단 회의실</li> <li>• 참석 : 전국 난민전담공무원 등 40여명</li> <li>• 내용 : 난민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난민인정심사기법 및 사례, 국가정황 조사 기법 및 분석</li> </ul> </li> </ul>	난민과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1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HBM &amp; EMM 프로그램 소개</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모집 및 지정심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기간 : 4. 13. ~ 4. 27.</li> <li>• 모집대상 : 일반운영기관</li> <li>• 운영기간 : 지정일~19. 12. 31.</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 제2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4. 13.(금) 14:00, 외국인본부 회의실</li> <li>• 참석 : 외국인본부장(주재), 내·외부위원 11명</li> <li>• 안건 : 우수인재로 국적신청한 외국인 15명에 대한 인정여부 심의</li> </ul> </li> </ul>	국적과
4.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 단체여행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단체여행객 관리를 위한 출입국정보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별·월별) 무단이탈자 명단, 여행사·국적별 입출국 및 이탈 통계</li> <li>- (년별) 입국불허 및 이탈 현황</li> </ul> </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2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체류자격 개편 방향 및 향후 추진 방안(취업체류자격을 중심으로)</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4. 19. ~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장소 : 4. 19.(목) ~ 20.(금), 라마다호텔 제주 함덕</li> <li>• 참석 : 국적·통합정책담당, 외국인정책과장 등 법무부 직원,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li> <li>• 내용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관련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 중앙·지자체 협업 증진방안 논의 및 홍보 필요사항 전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경험 공유 및 애로사항 수렴</li> </ul> </li> </ul>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시행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양양공항 입국 동남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5인 이상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허용 시행기간 연장(4. 30 → 12. 31.)</li> </ul> </li> </ul>	출입국 심사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4.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3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주재관 경험담(나에게 주재관이란)</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4.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업종에 대한 테마단속(2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 건설업종의 외국인력 불법고용 만연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li> <li>• 단속기간 : 4. 30.(월) ~ 5. 11.(금) / 2주</li> <li>• 내용 : 건설현장 단속은 권역별 합동단속 병행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권역별로 주 2회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권역당 건설현장 4곳, 6개 권역 총 24곳 이상 단속 실시</li> </ul> </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5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허용 직종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 직종) 로봇공학 기술자, 국제용역 분야 고객상담 사무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li> </ul> </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일(18.5.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일정 일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교육참여자 평가 참여 제고, 평가준비기간 확대 등을 위해 평가일정 및 신청기간 변경을 알려 평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연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월 15일 이상 해외체류 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중단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대상자의 출입국기록 정보연계</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5. 14.(월) ~ 6. 15.(금), 5주</li> <li>• 참여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li> <li>• 중점단속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취업 목적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 및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li> <li>- 단기사증·사증면제 및 제주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불법입국·취업알선 행위 등</li> </ul> </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차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5. 16.(수) 15:00, 외국인본부 회의실</li> <li>• 참석 : 위원장(출입국정책단장), 위원 10명(이민조사과장, 국정원, 외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10개 부처 과장급)</li> <li>• 안건 :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 관련 후속조치 논의</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5.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관리법 개정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5. 17.(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li> <li>• 주제 :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li> <li>• 주최·주관 : 법무부, 국회의원 금태섭, 한국이민법학회</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5.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4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스마트 이민행정 구현을 위한 R&amp;D 및 실증</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자네트워크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맞춤형 교육 실시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 실시를 통해 국민으로서 소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이민자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생활 맞춤형 교육 실시</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불능자 국적신청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거동불능자의 국적회복 신청 시 본인 이외 사람에 의한 대신신청 허용(허용범위 및 의사확인 방법 등)</li> </ul> </li> </ul>	국적과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사증 입국허가 통합지침 개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제3국 통과여객 및 일반환승객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조정, 일반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신청시간 조정(72시간 → 24시간) 반영</li> </ul> </li> </ul>	출입국 심사과
5.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빅데이터가 여는 세상</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6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지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 추가 지정(11개국 → 12개국)</li> </ul> </li> </ul>	출입국 심사과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제2회 난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6. 8.(금) 15:00, 법무부 대회의실</li> <li>•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5명</li> <li>•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li> </ul> </li> </ul>	난민과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 비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취업동포(H-2) 비자발급 대상연령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li> <li>-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한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하여 취업·체류가 비교적 자유로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용</li> </ul> </li> </ul> </li> </ul>	체류 관리과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비자 취득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기술창업비자(D-8-4) 취득요건 완화</li> </ul> </li> </ul>	체류 관리과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6. 14.(목), 09:00~17:00,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li> <li>• 참석 : 전국 난민전담공무원 등 48명</li> <li>• 내용 : 난민면접기법, 진술의 신빙성 및 박해가능성 판단, 난민신청 사례 연구</li> </ul> </li> </ul>	난민과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업소 등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 :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해 유흥업소 및 마사지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 분기별 확대 실시</li> <li>• 단속 기간 : 6. 18.(월) ~ 7. 13.(금),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18.(월) ~ 6. 29.(금), 수도권·중부권 출입국·외국인관서</li> <li>- 7. 2.(월) ~ 7. 13.(금), 경기권·영남권·호남권 출입국·외국인관서</li> </ul> </li> <li>• 중점 분야 :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 행위, 유흥업소 및 마사지업소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li> </ul> </li> </ul>	이민 조사과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6. 18.(월) 13:30 ~ 18:00, 서울대 아시아연구소</li> <li>• 주최/주관 : 법무부, UNHCR 한국대표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공동</li> <li>• 주제 :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li> </ul> </li> </ul>	난민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차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6.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태 이민청간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장소 : 6. 19.(화) ~ 6. 22.(금), 태국 방콕</li> <li>• 참석 : 이민조사과장 등 3명</li> <li>• 안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협의체 운영 등 태국인의 한국내 불법체류억제 방안 논의</li> <li>- 태국인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및 불법고용주 관련 정보 공유</li> <li>- 핫라인 개설 등을 위한 MOU체결 검토</li> </ul> </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6. 22. ~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6. 22.(금) 서울청, 6. 25.(월) 대전사무소</li> <li>• 참석 :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및 증명발급담당자 등 34명</li> <li>•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대외기관 자료제공 기준 및 절차, 주요 사례 토론 등</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간일 : 6. 27.</li> <li>• 수량 : 400부(국회, 언론, 대학, 연구기관 등 292곳 배포)</li> <li>• 내용 :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국적, 난민 등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자료 및 통계표 제공</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56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육로 출입국 심사방안</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2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안건 : 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등</li> <li>• 6. 27.(수) ~ 6. 29.(금) 서면회의</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6.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 외국인 허위초청자 등에 대한 불법수익 몰수제도 도입 검토, 난민 관련 현황과 대책</li> <li>• 참석 : 위원장(정인섭 교수), 본부장(내부위원), 자문위원 등</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 제2절 | 하반기

### 7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57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GCM 진행상황 설명</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7.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년 제3회 난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장소 : 7. 6.(금) 16:00, 법무부 대회의실</li> <li>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4명</li> <li>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li> </ul> </li> </ul>	난민과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5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중동역사와 문화</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7.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세부양정기준 지침 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경 : 지침 중 일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해석 기준 마련, 업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제고 필요</li> <li>내용 : 범칙금(과태료) 가중 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 대한 해석, 감경처분 대상자 및 감경 비율의 실무 적용 기준 등 설명</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수비자 발급 제도 확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국(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조지아) 및 몽골국민 중 전문직종사자, 우수기업관리자, 언론인, 일정금액 이상 자산보유자 등에 대하여 '18. 7. 16.부터 복수비자 발급 확대</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분세탁자(위명여권 행사자) 집중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속기간 : 7. 16.(월) ~ 8. 10.(금), 4주</li> <li>참여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li> <li>대상 : 신분세탁 혐의자 77명(국적취득자 16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형사범('00. ~ '13.) 878명 중 신분세탁 혐의자 69명</li> <li>- 여권불법행사자('12. ~ '18. 5월) 352명 중 신분세탁 혐의자 8명</li> </ul> </li> <li>※ 출입국자 및 출입국사범의 생체정보를 비교하여 신분세탁 의심자 추출</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7.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59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국내 예멘 난민에 대한 이해</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장기 미사용자 계정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각 기관에서 활용하는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장기 미사용자 계정 정리</li> <li>- '18년 1월 이후 접속 이력이 없는 33,302명의 계정에 대해 각 기관별 실제 사용여부를 점검한 후, 미사용 계정 일괄 정리</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차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0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폭력적 극단주의와 난민문제</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7. 31.(화) 16:00, 외국인본부 회의실</li> <li>◦ 참석 : 외국인본부장(주재), 내·외부위원 10명</li> <li>◦ 안건 : 우수인재로 국적신청한 외국인 9명에 대한 인정여부 심의</li> </ul> </li> </ul>	국적과

8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지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12개국(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카메룬,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이집트,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추가 지정·시행(단, 이집트는 9. 1. 시행)</li> </ul> </li> </ul>	출입국 심사와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1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지능형 영상감시 및 홍채인식 시스템 소개 및 시연</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자 관리 효율화, 이용자 면회, 센터 방문, 자원봉사자 활동 등에 대한 규정 정비</li> <li>◦ 시행일 : 8. 1.</li> </ul> </li> </ul>	난민과
8.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위촉장 전수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15년도 이후 활동 중인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연임 희망자에 대한 위촉장 전수</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8.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2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예멘 난민 사태와 이슬람 문화 이해</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8. 13.(월) 10:50, 법무부 대회의실</li> <li>◦ 참석 : 법무부장관, 외국인본부장, 광복회 부회장 등</li> <li>◦ 내용 : 허위, 계봉우 선생 등의 후손 31명에게 국적증서 수여</li> </ul> </li> </ul>	국적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전문보호기관 간 시설·제도 상호 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 8. 20.(월) ~ 8. 22.(수)</li> <li>• 대상기관 : 화성·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li> <li>• 점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보호업무 처리절차를 참고, 시설·제도 등 운영상 제반 요소를 상호 교차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li> <li>- 기관 간 장·단점 비교 등을 통해 보호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요소 발굴</li> </ul> </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출입국자료 정보연계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 보건복지부</li> <li>• 내용 : 만6세 미만 아동의 최근 5년간 출입국기록</li> <li>• 사유 : 복수국적자 등 복지수급 적정성 확인</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8.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3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남북교류 활성화 대비 육로 출입 및 체류정책 대응방안</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휴강 검토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여 전국 운영기관에서 기상상황에 따라 휴강여부 검토 등 지시</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8. 28. ~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장소 : 8. 28.(화) ~ 29.(수), 한국이민재단</li> <li>• 참석 : 거점기관 난민전담공무원 등 82명</li> </ul> </li> </ul>	난민과
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4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미국 이민심판제도의 이해</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하반기 전국 조사과장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8. 31.(금) 16:00, 법무부 대회의실</li> <li>• 참석 : 출입국정책단장, 본부 및 소속기관 조사과장 등 30명</li> <li>• 안건 : '18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단속 및 자진출국 활성화, 경찰청 등 수사기관 공조 강화방안 등</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9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9. 3.(월) ~ 11. 16.(금), 11주</li> <li>• 참여 기관 : 법무부, 고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li> <li>• 중점단속 대상 : 건설현장·공단 등 대규모 사업장, 유흥주점·마사지업소 등 풍속저해 업소 등</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지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li> <li>• 내용 : '18. 9. 21.부터 영주자격 취득 요건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신설 등에 따른 조치</li> </ul>	이 민 통합과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li> <li>• 주제 : 출입국향 난민회부심사제도에 대한 이해</li> </ul>	외국인 정책과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관련 업무 지시 및 개정지침 배포</li> <li>• 내용 : 등록외국인(거소 포함) 자동출입국 심사 사전 등록면제 시행 등에 따른 소속기관 업무처리 절차 지시</li> </ul>	출입국 심사과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회 출입국 안전의 날' 행사 개최</li> <li>• 일자, 장소 : 9. 7.(금), 소속기관별 행사 개최</li> <li>•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故 조영남 사무관에 대한 추모, 출입국안전현장 이행 결의</li> <li>-화재예방관련취약시설점검,단속시적법절차준수,안전계호및호송실태등점검</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9.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제4회 난민위원회 개최</li> <li>• 일시, 장소 : 9. 7.(금) 16:00, 법무부 대회의실</li> <li>•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5명</li> <li>•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li> </ul>	난민과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고용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li> <li>• 내용 : 법무부-중소기업중앙회, 고용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의 외국인 고용절차 관련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li> </ul>	체 류 관리과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본부장, 정책현장 방문</li> <li>• 일자, 장소 : 9. 14.(금), 대림동 새벽인력시장</li> <li>• 참여 : 외국인본부장, 서울남부소장, 이민조사과장 등</li> <li>• 내용 : 불법체류 및 건설업종에 대한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계도 실시</li> </ul>	이 민 조사과
9.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관련 홍보 지시</li> <li>• 내용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안내</li> </ul>	이 민 통합과
9. 16. ~ 9.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남미 국적업무 실태점검 및 국적설명회 개최</li> <li>• 기간, 국가 : 9. 16.(일)~23.(일), 멕시코 및 브라질</li> <li>• 내용 : 재외공관 국적업무 실태점검 및 담당직원 교육실시, 중남미 재외동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민원상담 등</li> </ul>	국적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기간 : 9. 17.(월) ~ 10. 19.(금), 5주</li> <li>• 참여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li> <li>• 중점단속 분야: 직업소개소, 무허가 업체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행위 및 불법취업자 등</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 신청서비스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18. 9. 19.부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대상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근무처변경허가' 추가</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6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정책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문화 수용의 결과물</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주증 발급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 대신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 발급 시행</li> <li>-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 : '18. 9. 21.부터 2년 이내 재발급</li> <li>- 영주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미경과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재발급</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10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구직비자(D-10) 점수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평가항목을 학력·연령·한국어능력·가점 등으로 계량화하여, 일정점수 충족 시 취업 가능한 '구직비자(D-10)'를 부여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취업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18. 10월 ~ '19. 3월 / 6개월</li> <li>• 내용 : 자진 출국 외국인에게는 입국규제를 유예,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10년 간 입국규제</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1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및 특별공로자 등에 대한 영주자격 처리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2주 이내 심사하고, 그 외 일반외국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2~3개월 내 처리</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7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워킹홀리데이 제도 다변화</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차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소개소 및 불법고용주 행정제재 추진 방안 시달</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 지방자치단체에 의뢰</li> <li>-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위반 불법고용주 가산세 부과 등 적정 처리 국제청에 의뢰</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법」 철저 준수 지시</li> <li>• 내용 : 개인정보의 오남용 문제와 관련, 출입국 정보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대외제공 금지 철저 지시</li> </ul>	이 민 정보과
10.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li> <li>• 주제 : 2018 중동정세</li> </ul>	외국인 정책과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도 제4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li> <li>• 일시, 장소 : 10. 26.(금) 15:00, 외국인본부 회의실</li> <li>• 참석 : 외국인본부장(주재), 내·외부위원 10명</li> <li>• 안건 : 우수인재로 국적신청한 외국인 6명에 대한 인정여부 심의</li> </ul>	국적과
10.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실시</li> <li>• 일시, 장소 : 10. 26.(금), 09:00~17:00, UNHCR 한국대표부 회의실</li> <li>• 참석 : 거점기관 난민전담공무원 등 28명</li> </ul>	난민과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69회 이민정책포럼 개최</li> <li>• 주제 : 난민의 귀환과 자국 개발</li> </ul>	외국인 정책과

**11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발표회 개최</li> <li>• 기간, 장소 : 11. 2(금), 법무부 108호실(서울지방중기청 회의실)</li> <li>• 참석 : 외국인본부장, 국적·통합정책단장, 심사위원, 발표자 등</li> <li>• 내용 : 정책과제 발표 및 우수과제 선정·포상</li> </ul>	외국인 정책과
1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0회 이민정책포럼 개최</li> <li>• 주제 : 꾸란에서 본 이슬람</li> </ul>	외국인 정책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외활동 위반 유학생 집중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기간 : 11. 13.(화) ~ 12. 7.(금) / 4주</li> <li>• 단속기관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li> <li>• 중점대상 : 어학연수생 출석을 조작 및 조직적 불법고용 알선 대학교, 어학연수 및 유학자격 소지 외국인의 체류자격외 활동 위반 등 불법취업 행위 등</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운영지침 개정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소속기관 명칭 등 직제 개편사항 반영,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정책자문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li> <li>• 참석 : 위원장(정인섭 교수), 외국인본부장(내부위원), 자문위원 등</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유학생 관련 교육부 및 대학교 관계자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어학연수생 비자발급 기준강화 방안 논의, 대학관계자 의견수렴, 기타 유학제도 관련 건의사항 청취</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1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1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언론에서 바라본 이주민 다문화 인식 개선 방안</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도 체류외국인 동향조사·사범·보호 기법연구 발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11. 22.(목) ~ 23.(금), 오션스위츠 제주호텔</li> <li>• 참석 : 출입국정책담당(주제), 본부 및 전국 출입국기관 동향·사범·보호 업무 담당자 62명</li> <li>• 내용 :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적발방안 연구 등 핵심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1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제5회 난민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11. 23.(금) 14:00, 법무부 대회의실</li> <li>• 참석 : 위원장(법무부 차관) 등 15명</li> <li>• 안건 :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li> </ul> </li> </ul>	난민과
11. 26. ~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행사 시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 장소 : 11. 26. ~27., 국적업무 수행 15개 출입국·외국인관서</li> <li>• 내용 :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축하메시지, 행사 후 만족도 설문조사</li> </ul> </li> </ul>	국적과
1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2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 글로벌 이주 거버넌스와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1. 30.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장소 : 11. 30.(금) 서울청, 12. 4.(화) 대전사무소</li> <li>참석 :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및 증명발급담당자 등 30명</li> <li>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대외기관 자료제공 기준 및 절차, 주요 사례 토론 등</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11. 30. ~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 난민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장소 : 11. 30(금)~12. 1.(토),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호텔</li> <li>참석 : 국적통합단장, 난민과장, 전국 난민업무 담당자 등 71명</li> </ul> </li> </ul>	난민과

12월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li> </ul>	출입국 심사과
1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체류 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관련 업무 지시(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단기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운영에 따른 소속기관 조치사항 시달</li> </ul> </li> </ul>	출입국 심사과
1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폴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지침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인터폴 정보시스템의 접근권 부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우리 부의 시스템 접근권한 등 관리지침을 소속기관에 시달</li> <li>- 시스템 직접 접근권 범위 및 권한부여, 접근정보 관리 등 규정</li> </ul> </li> </ul>	이 민 정보과
1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73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난민지위 결정을 위한 “젠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제적 법제 및 사례 연구</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2. 7. ~ 1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적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장소 : 12. 7.(금)~8.(토), 부산 신라스테이</li> <li>참석 : 본부 및 소속기관 국적업무 담당자 총 34명</li> <li>내용 : 국적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국적 제도개선 의견 수렴</li> </ul> </li> </ul>	국적과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민전문통역인 보수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장소 : 12. 7.(금), 13:00~18:00, UNHCR 한국대표부</li> <li>참석 : 난민전문통역인 30명</li> <li>내용 : 난민통역 현황 및 국제 난민동향, 통역이론 및 기술, 통역인 윤리, 난민통역 실습 등</li> </ul> </li> </ul>	난민과

일자	주요 업무 처리 내용	소관부서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분기 유흥업소 등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속 기간 : 12. 10.(월) ~ 21.(금) / 2주</li> <li>중점 분야 : 마사지 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 행위, 유흥업소 및 마사지 업소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li> <li>※경찰청(생활질서과)과 합동단속 실시</li> </ul> </li> </ul>	이 민 조사과
1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민법 연구회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중동과 이슬람 세계</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말연시 테러대비 활동 및 출입국심사 강화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체류관리 및 사증심사 활동 강화 등</li> </ul> </li> </ul>	출입국 심사과
1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74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 불법이민자 허용 인도주의적 관용 노리는 세력들</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 업무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법무부-서울시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우수인재 유치,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 6개 분야의 외국인정책 협력 강화</li> </ul> </li> </ul>	체 류 관리과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부터 달라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알아보기’ 리플릿 배포 및 홍보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평가 응시수수료 신설, 평가 신청방식 변경 등 '19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변경사항 홍보</li> </ul> </li> </ul>	이 민 통합과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범귀화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장소 : 12. 19.(수) 13:30, 법무부 대회의실</li> <li>내용 : 모범귀화자 4명 선정 및 기념패 수여</li> </ul> </li> </ul>	국적과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일 : 12. 20.(목)</li> <li>내용 : 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제도 등</li> </ul> </li> </ul>	국적과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3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안건 : 2019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등</li> <li>12. 28.(금) ~ 1. 3.(목) 서면회의</li> </ul> </li> </ul>	외국인 정책과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액 지급기준」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1인 가구 기준 432,900원('18년 지급액과 동일)</li> </ul> </li> </ul>	난민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차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CHAPTER

04

# 법령 · 예규 정비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제1절 법령 개정

제2절 훈령 · 예규 정비

## 제1절 | 법령 개정

### 제1항 법률

#### 1 출입국관리법

##### 가. 추진배경

-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에 맞게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권리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 방지를 위한 긴급출국정지에 관한 법적근거 필요
- 보호된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 도입 필요

##### 나. 추진경과

- 2017. 7. 18. 국회제출
- 2018. 2. 28. 국회의결
- 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공포
- 2018. 9. 21. 시행

## 다. 주요내용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체계화하고, 영주자격 취득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
-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 영주자격 소지자는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갱신제도 도입
-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 2 국적법

### 가. 추진배경

-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 2018. 9. 18. 법률 제1575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국적업무와 관련된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제21조의 2)
  -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가. 추진배경

-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의 경우 41세부터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하면 반드시 부여해야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

#### 나. 추진경과

- 2017. 11. 27. 제안
- 2018. 8. 30. 국회의결
- 2018. 9. 18. 법률 제15758호로 공포
- 2018. 9. 18. 시행

#### 다. 주요내용

- 현행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41세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함

## 제2항 대통령령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기업투자 자격 요건 정비 및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연령요건 완화 필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에게는 학력과 관계없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외국국적동포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중 연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거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국내거소신고 서류를 정리하던 것을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에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53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은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표와 국내거소신고인명부를 각각 정리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요건에 맞추어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포함)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의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한꺼번에 국내거소신고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 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 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
-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 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 4 국적법 시행령

### 가. 추진배경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 2018. 12. 20. 대통령령 제2937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절차 등(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새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선서의 내용을 정함.
  -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뇌병변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함.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절차 등(제9조의2 신설)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을 위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는 절차, 국민선서의 내용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제3항 법무부령

### 1 출입국관리법·국적법·난민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 가. 추진배경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 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적법」·「난민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 등 5건의 법무부령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 2018. 5. 15. 법무부령 제927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 및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공항·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공항·광주·창원·전주·춘천 및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명칭 변경

##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출입국 관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민원신청 시 수수료 감경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 2018. 6. 12. 법무부령 제930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강제해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용주가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제한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통보의무의 면제 범위를 이 규칙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 2018. 9. 21. 법무부령 제936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강제퇴

거명령을 받은 후 7년이 경과된 사람 등으로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등을 갖추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정함.

- 공무원이 「형법」상 중대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수사 또는 인권침해 조사·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되거대상자 등을 발견하였다면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의 범위를 정하여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함.

#### 4 국적법 시행규칙

##### 가. 추진배경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이 개정(법률 제 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생계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중 부동산에 관한 서류의 경우 종전에는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만을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혈연·지연적 유대감이 약한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의 경우 종전에는 국회의원 등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장 동료·이웃사람·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추진경과

- 2018. 12. 20. 법무부령 제942호로 공포·시행

## 다. 주요내용

-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 부동산 관련 서류의 경우 종전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을 인정하던 것을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도 인정함
-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3조 제5항)
  - 일반귀화 시 추천서의 경우 국회의원 등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을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시행규칙 제5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으로 정함

## 제2절 | 훈령 · 예규 정비

## 제1항 훈령

번호	일자	제목	주요골자	비고
1136	1. 16.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 업무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전예약제도 확대</li> <li>출입국관리기록 대외기관 제공일지 서식 변경</li> </ul>	이 민 정보과
1159	6. 18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 업무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887호)에 따른 변경된 소속기관 명칭 반영</li> <li>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침 재검토기한(2018.6.30 부터 3년) 설정 등</li> </ul>	이 민 정보과
1168	7. 26.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운영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자 관리를 효율화 하고, 이용자 면회, 센터 방문, 자원 봉사자의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정비</li> </ul>	난민과
1169	7. 31.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능력시험 종류 및 요건 명확화</li> <li>재검토기한 설정</li> <li>기관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li> </ul>	체 류 관리과
1174	9. 28.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권 보호일시해제 관련 구체적인 처리 규정 마련</li> <li>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명칭 변경 반영</li> </ul>	이 민 조사과
1180	12. 6.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검토 기한 연장</li> <li>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명칭 변경 반영</li> </ul>	이 민 조사과
1181	12. 11.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명칭 변경 반영</li> </ul>	이 민 조사과
1186	12. 20.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검토 기한 연장</li> </ul>	이 민 통합과
1187	12. 20.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검토 기한 연장</li> <li>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명칭 변경 반영</li> </ul>	이 민 통합과
1192	12. 28.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대카드 발급전담부서 및 소속기관 명칭변경 사항 반영</li> </ul>	출입국 심사과

## 제2항 예규

번호	일자	제목	주요골자	비고
1180	3. 1.	국적업무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7. 8. 29.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시행됨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li> <li>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면접심사 면제 등 심사 절차를 완화</li> <li>그 밖의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li> </ul>	국적과
1201	12. 20.	국적업무처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8. 12. 20.부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침 상 관련 조항을 정비</li> <li>2016. 1. 1.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설정한 일몰 재검토기한 재설정</li> <li>「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5. 10.) 개정에 따른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명칭변경사항 반영</li> </ul>	국적과
1202	12. 20.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 1. 1.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설정한 일몰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재설정</li> <li>「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8. 5. 10.) 개정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li> </ul>	국적과

## 제3항 주요지시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1. 9.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방안 시달 및 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외공관에서 지정한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입국 허용</li> </ul>	기, 외교부, 강원도, 문체부	출입국 심사과
1. 11.	2018년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 자체 행사계획 수립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5. 20. 제11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체 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li> </ul>	기	이 민 통합과
1. 17.	특별단속지역 지정 및 운영방안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34개 권역별 특별단속지역 지정 및 기관별 관리계획 수립, 광역단속팀 주관의 합동단속팀 편성 및 정기적인 단속 실시 등</li> </ul>	기	이 민 조사과
1. 26.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강화방안 수립·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밀집지역의 조정, 경찰·지자체와 합동계도·단속, 외국인 커뮤니티 등 동향파악 등 관리계획 수립 등</li> </ul>	기	이 민 조사과
1. 30.	평창 동계올림픽 '출입국 대테러상황본부 설치·운영 계획'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2.9~2.25)」,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3.9~3.18)」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대테러상황본부 운영</li> </ul>	기	출입국 심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2. 1.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운영지침 개정	• 중앙협의회 당연직 위원 재정비, 재심청구 기한 연장(7일 이내 → 14일 이내) 등	기	이 민 통합과
2. 6.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 시 신병처리 개선방안 지시	• 적발된 불법취업 외국인 중 불법취업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출석하여 사범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석보증서 징구 후 현장에서 방면, 사후 자진출석토록 하여 사범처리(체류허가 등)	기	이 민 조사과
2. 9.	제주지역 폭설에 따른 체류외국인 지원방안 알림	• 폭설기간(2. 2. ~ 2. 11.) 중 제주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으로 동 기간에 법정기한이 만료되었거나 각종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범칙금 면제 후 체류허가(시행기간 : 2.9. ~ 2.14.)	기	체 류 관리과
2. 14.	설날 연휴기간 보호외국인 안전관리 강화 및 특별급식 제공 지시	• 보호시설 안전점검, 보호 경비근무 강화, 비상근무태세 확립, 보호 업무 관련 적법절차 준수 철저, 보호외국인 인권보호 철저, 특별급식 제공 등	기	이 민 조사과
2. 23.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자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시달	• 평창 동계패럴림픽 참가자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의무 면제 지시	기	출입국 심사과
2. 23.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2. 26.(월) ~ 5. 11.(금) 11주간,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공단 등 대규모 사업장, 유흥주점·마사지업소 등 풍속저해 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기	이 민 조사과
2. 28.	2018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 시달	• 방문취업동포(H-2)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이수 개선 방안 등 기존 지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	기	이 민 통합과
3. 2.	「국적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업무처리 지시	기	국적과
3. 6.	유흥업소 및 마사지 업종 불법취업자·알선브로커 등 집중단속 실시 지시	• 3. 12.(월) ~ 4. 6.(금) 4주간 외국인 불법고용 성행 및 풍속저해 야기 유흥·마사지업소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지시	기	이 민 조사과
3. 19.	국적심사 우선처리 기준 개선(안) 시달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국적신청자 처리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선안 시달	기	국적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지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4. 11.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모집 및 지정심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공모</li> <li>- 공모기간 : 2018. 4. 13. ~ 4. 27.</li> <li>- 모집대상 : 일반운영기관</li> <li>- 운영기간 : 지정일 ~ 2019. 12. 31.</li> </ul>	기	이 민 통합과
4. 12.	외국인 어선원(E-10-2) 고용추천서 관련 업무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선원(E-10-2)이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연장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외국인 어선원 고용추천서'를 갈음하여 '외국인 어선원 고용계획서 제출 사유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li> </ul>	기	체 류 관리과
5. 2.	20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일정 일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참여자 평가 참여 제고, 평가준비기간 확대 등을 위해 평가일정 및 신청기간 변경을 알려 평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li> </ul>	기	이 민 통합과
5. 9.	불법·취업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실시(안)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14.(월) ~ 6. 15.(금) 5주동안 불법취업 목적 사증면제 입국 외국인 및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단기사증·사증면제 및 제주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불법 입국·취업 알선 행위 등 단속 실시</li> </ul>	기	이 민 조사과
5. 21.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지정 등 알림 및 업무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 추가 지정(11개국 → 12개국)</li> </ul>	외교부, 제주도	출입국 심사과
5. 24.	일반귀화 신청 재외동포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준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자격 또는 재외동포 자격이었던 영주자격 소지자 일반귀화 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준 시달</li> </ul>	기	국적과
5. 28.	이민자네트워크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맞춤형 교육 실시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 실시를 통해 국민으로서 소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이민자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생활 맞춤형 교육 실시</li> </ul>	기	이 민 통합과
5. 29.	수입기계 등의 설치 관련 독일인에 대한 사증발급 기준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주의에 따라 독일에 소재한 본사의 직원으로서 수입기계 등의 설치 등의 목적으로 한국 지사에 파견되는 독일인에게 무비자 입국 허용</li> </ul>	기 외교부	체 류 관리과
5. 30.	무사증 입국허가 통합지침 개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국 통과여객 및 일반환승객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조정, 일반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신청시간 조정(72시간 → 24시간)</li> </ul>	기, 문체부	출입국 심사과 반영
5. 30.	거동불능자의 국적회복 신청 관련 개선안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불능자의 국적회복 신청 대행 허용 관련 개선안 시달</li> </ul>	기	국적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6. 4.	외국인의 주요 신고의무 안내문 배포 협조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체류외국인의 준법의식 고취 등을 위해「출입국관리법」상 주요 신고의무(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체류지변경 등) 관련 안내문을 주한외국공관에 배포하도록 외교부에 협조 의뢰</li> </ul>	외교부	체류관리과
6. 4.	하절기 보호외국인 위생 등 안전관리 강화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식관련 위생 점검·관리강화, 식자재 및 구입식품 검수 등 관리감독 철저, 보호실 등에 대한 청소·방역 등 위생관리 철저 등</li> </ul>	기	이민조사과
6. 12.	유흥업소 등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 실시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18.(월) ~ 7. 13.(금) 4주간, 마사지업소 등 신종 유흥업소의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 행위, 유흥업소 및 마사지 업소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집중단속 실시</li> </ul>	기	이민조사과
6. 15.	연근해어선의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증원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근해어선의 조업 여건 및 외국인 어선원의 수요 등을 고려, 외국인 어선원(E-10) 도입규모 조정 - (기존) 16,100명 → (변경) 17,300명</li> </ul>	기	체류관리과
6. 18.	국가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관련 업무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6. 27. 한·대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li> </ul>	기	출입국심사과
6. 26.	외국인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시스템 운영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인력 고용추천 절차 등이 불편하여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2018. 7. 1.부터 전문인력 초청 시 필요한 관계부처의 '고용추천서' 신청·발급을 직접방문방식에서 온라인방식으로 개선 시행</li> </ul>	기	체류관리과
7. 11.	신분세탁 혐의자 집중단속 계획(안)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16.(월) ~ 8. 10.(금) 4주간, 과거 형사범 신분세탁 혐의자에 대한 단속 실시</li> </ul>	기	이민조사과
7. 26.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지정 등 알림 및 업무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12개국(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카메룬,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이집트,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추가 지정</li> </ul>	외교부, 제주도	출입국심사과
7. 27.	혹서기 단속·보호 외국인 호송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속 및 호송차량 내 생수 등 음료수 상시 비치, 단속 및 호송차량 냉방장치 정비 철저, 호송차량 내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장시간 긴급보호 자제 등</li> </ul>	기	이민조사과
8. 1.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철저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준수 철저, 단속·보호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폭언·구타 등 인권침해 행위 금지, 운전원 등 권한 없는 직원의 단속·조사 등 업무의 직접 수행 금지 등</li> </ul>	기	이민조사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8. 2.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위촉장 전수 지시	• 2015년도 이후 활동 중인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연임 희망자에 대한 위촉장 전수	기	이 민 통합과
8. 20.	하반기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계획 시달	• 9. 3.(월) ~ 11. 16.(금) 11주간,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공단 등 대규모 사업장, 유흥주점·마사지업소 등 풍속저해 업소 등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기	이 민 조사과
8. 23.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휴강 검토 지시	• 제19호 태풍 솔릭에 의한 피해에 대비하여 전국 운영기관에서 기상상황에 따라 휴강여부 검토 등 지시	기	이 민 통합과
8. 30.	제4회 출입국 안전의 날 행사 계획 시달	• 故 조영남 사무관에 대한 추모, 출입국안전현장 이행 결의, 화재 예방 관련 취약시설 점검, 단속 시 적법절차 준수 등	기	이 민 조사과
9. 4.	2018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알림	• 2018. 9. 21.부터 영주자격 취득 요건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신설 등에 따른 조치	기	이 민 통합과
9. 7.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관련 업무 지시 및 개정지침 배포	• 등록외국인(거소 포함) 자동출입국 심사 사전 등록면제 시행 등에 따른 소속기관 업무처리 절차 지시	기	출입국 심사과
9. 13.	직업소개소 등 불법취업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 지시	• 9. 17.(월) ~ 10. 19.(금) 5주동안, 직업소개소, 무허가 업체 및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행위, 불법취업자 등	기	이 민 조사과
9. 14.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관련 홍보 지시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영주용 종합평가 대상 확대’ 안내	기	이 민 통합과
9. 18.	비전문취업(E-9) 자격 온라인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한 처리방식 알림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시 원거리 사무소 방문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온라인민원 활성화를 위해 2018. 9. 19.부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대상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근무처변경허가’ 추가	기	체 류 관리과
9. 19.	외국인등록 동반가족 관리 지침 제정·시행	• 가족관계를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일부 외국인에 대한 동반가족사항 기록 관리를 통하여, 외국인 체류편의 도모 ※ 시행일자 : 2018. 10. 31.	기	체 류 관리과
9. 28.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알림	• 기간 : 2018. 10. 1. ~ 2019. 3. 31.(6개월) • 대상 : 해당 기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 • 혜택 : 입국금지 유예 대상과 입국금지 완화 대상으로 구분 적용	기	이 민 조사과

일자	제목	주요골자	수신처	비고
10. 17.	개인정보보호법 철저 준수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의 불법 오남용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절차 준수 철저 및 소속직원 개인정보보호 정례 교육 실시 등 지시</li> </ul>	기	이 민 정보과
11. 1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위반 외국인유학생 및 알선자 집중단속 실시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12.(월) ~ 12. 7.(금) 4주간 자격외활동 허가 없이 불법취업하는 유학생 등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li> </ul>	기	이 민 조사과
11. 13.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운영지침 개정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속기관 명칭 등 직제 개편사항 반영,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li> </ul>	기	이 민 통합과
11. 26.	국가간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관련 업무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 12. 1.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시달</li> </ul>	기	출입국 심사과
12. 3.	단기체류 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관련 업무 지시(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체류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범운영에 따른 소속기관 조치사항 시달</li> </ul>	기	출입국 심사과
12. 11.	연말연시 테러대비 활동 및 출입국심사 강화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체류관리 및 사증심사 활동 강화 등</li> </ul>	기	출입국 심사과
12. 17.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알아보기’ 리플릿 배포 및 홍보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응시수수료 신설, 평가 신청방식 변경 등 2019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변경사항 홍보</li> </ul>	기	이 민 통합과
12. 20.	「국적업무처리지침」 및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개정 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지침 일부 개정 사항 알림 및 이에 따른 업무 지시</li> </ul>	기	국적과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지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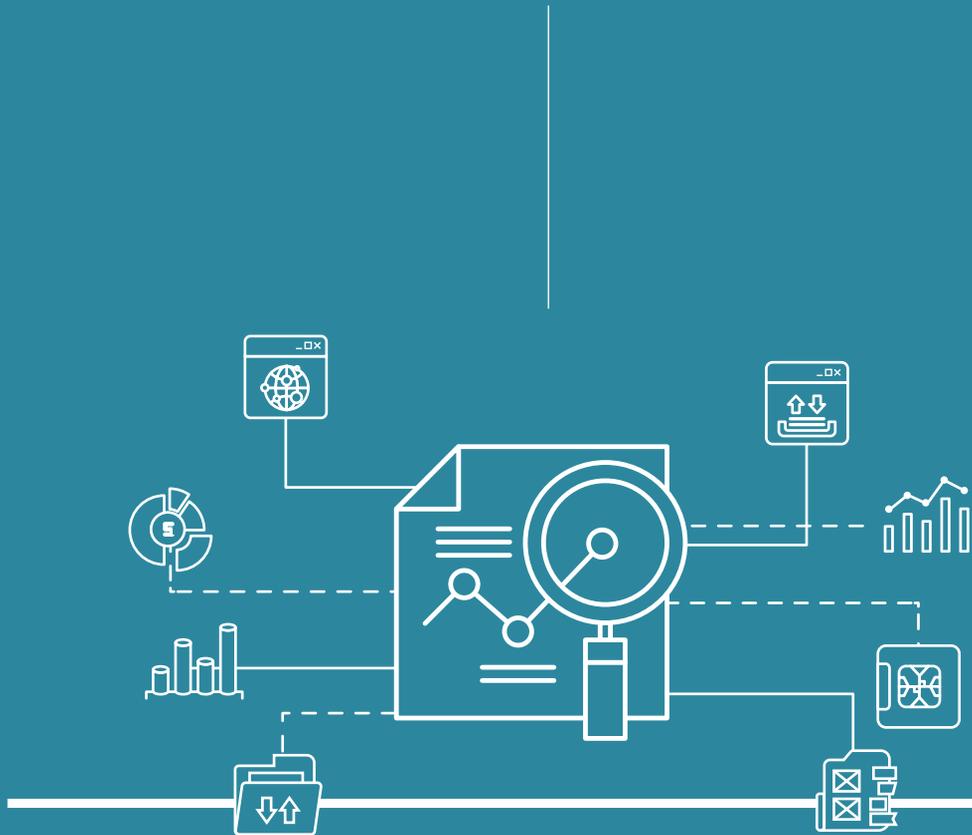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CHAPTER

05

# 주요 통계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제1절 출입국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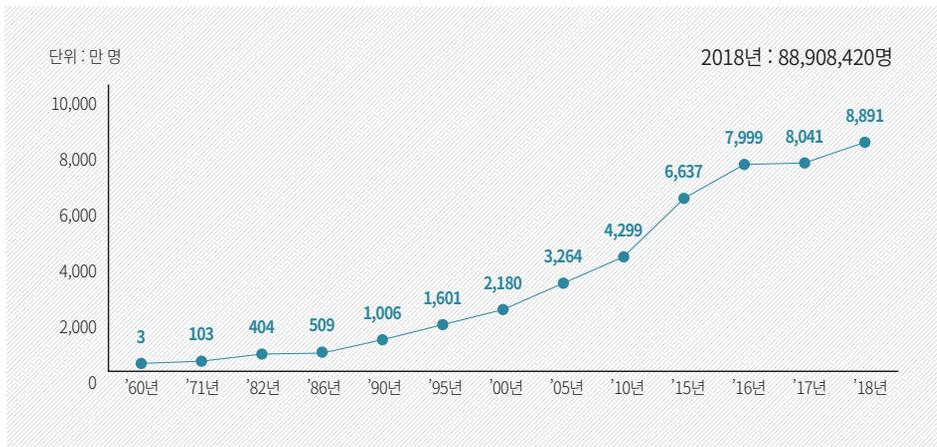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제3절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제4절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 제1절 | 출입국자 현황

## 1 출입국자 증가 추이



※ 1960년 출입국자 현황

(단위: 명)

총계	입국			출국		
	소계	국민	외국인	소계	국민	외국인
33,984	18,402	9,727	8,675	15,582	7,856	7,726

■ 2018년 출입국자 총괄

(단위: 명)

구분	출입국자	입국자	출국자
<b>총계</b>	<b>88,908,420</b>	<b>44,544,745</b>	<b>44,363,675</b>
국민	소계	57,859,670	28,914,223
	승객	54,321,526	27,143,673
	승무원	3,538,144	1,770,550
외국인	소계	31,048,750	15,630,522
	승객	29,236,726	14,708,369
	승무원	1,812,024	922,153

■ 최근 10년간 출입국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 국 자	국 민	9,804,725	12,807,359	13,019,134	14,065,176	15,155,660	16,372,830	19,580,398	22,659,640	26,765,503
	외국인	7,785,511	8,635,559	9,592,545	11,056,169	12,413,453	14,665,282	13,901,391	17,255,769	13,393,163
	소계	17,590,236	21,442,918	22,611,679	25,121,345	27,569,113	31,038,112	33,481,789	39,915,409	40,158,666
입 국 자	국 민	9,782,270	12,778,268	13,045,329	14,071,452	15,196,643	16,349,538	19,531,418	22,654,258	26,679,527
	외국인	7,833,998	8,766,915	9,765,902	11,129,305	12,200,473	14,264,508	13,359,701	17,418,307	13,569,509
	소계	17,616,268	21,545,183	22,811,231	25,200,757	27,397,116	30,614,046	32,891,119	40,072,565	40,249,036
출입국자 총계	35,206,504	42,988,101	45,422,910	50,322,102	54,966,229	61,652,158	66,372,908	79,987,974	80,407,702	88,908,420

2 외국인 입국 현황

■ 외국인 입국자 증감 추이



■ 외국인 입국자

(단위 :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	7,833,998	8,766,915	9,765,902	11,129,305	12,200,473	14,264,508	13,359,701	17,418,307	13,569,509	15,630,522

제1장 일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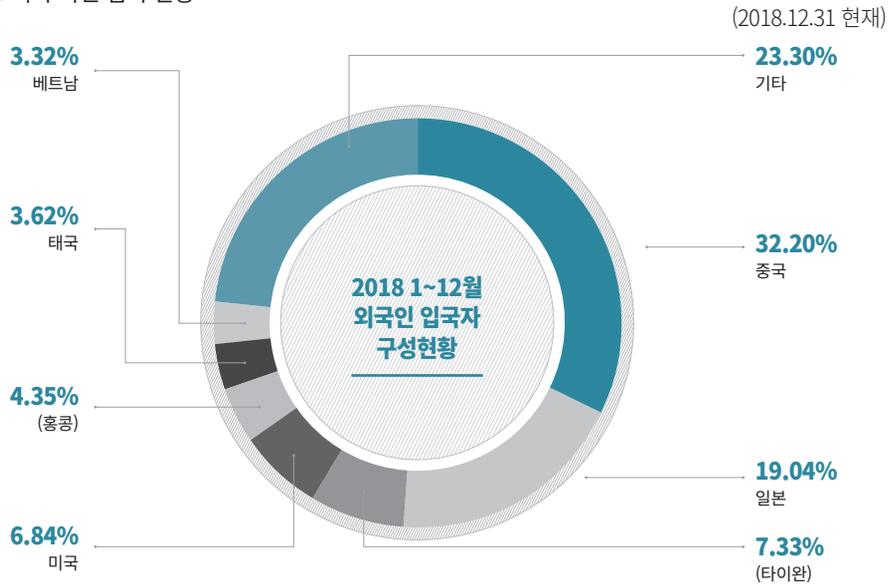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주요 국가 국민 입국 현황



※ 전년대비 입국자 : 중국 15% 증가, 일본 27% 증가, 미국 10% 증가, 타이완 20% 증가

■ 외국인입국자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b>총계</b>	<b>14,264,508</b>	<b>13,359,701</b>	<b>17,418,307</b>	<b>13,569,509</b>	<b>15,630,522</b>
중 국 <sup>8)</sup>	6,275,916	6,154,730	8,268,262	4,393,936	5,032,905
한국계	275,624	251,916	267,130	649,225	1,046,060
일 본	2,300,161	1,859,190	2,321,842	2,337,588	2,976,445
미 국	855,615	859,361	960,683	969,277	1,068,173
타 이 완	676,328	551,362	865,948	957,836	1,146,215
홍 콩	558,934	524,116	651,639	659,182	679,942
타 이	469,619	375,021	474,262	503,777	565,784
필 리 핀	442,549	412,197	566,693	459,588	471,532
베 트 남	169,849	199,323	299,084	380,929	519,448
말 레 이 시 아	244,902	223,782	311,686	308,152	383,467
러 시 아(연방)	217,060	191,214	238,171	275,779	308,665
인 도 네 시 아	209,042	194,472	296,377	231,908	250,249
싱 가 포 르	201,337	160,402	221,844	216,574	232,359

캐 나 다	148,400	147,715	178,023	178,761	196,859
오스트레일리아	142,237	134,357	153,125	151,583	154,390
영 국	132,516	124,833	136,900	128,046	133,149
인 도	148,314	154,294	196,773	124,458	120,975
독 일	101,544	101,251	111,413	111,077	117,173
몽 골	64,096	81,201	82,780	108,139	118,783
프 랑 스	81,580	85,093	93,039	94,013	101,854
우즈베키스탄	51,190	59,453	71,299	81,711	89,391
미 안 마	60,112	59,237	68,822	70,288	71,517
이 탈 리 아	48,644	46,449	64,268	44,435	46,987
네 덜 란 드	30,482	28,691	33,674	33,954	37,461
뉴 질 랜드	31,157	28,806	32,038	33,526	34,652
기 타	602,924	603,151	719,662	714,992	772,147

■ 외국인입국자 체류목적별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b>총계</b>	<b>14,264,508</b>	<b>13,359,701</b>	<b>17,418,307</b>	<b>13,569,509</b>	<b>15,630,522</b>	<b>115.2%</b>
사증면제(B-1)	1,426,293	1,249,506	1,556,536	1,634,095	1,908,616	116.8%
관광통과(B-2)	5,335,626	4,632,594	5,833,225	5,269,825	6,378,362	121.0%
단기방문(C-3)	3,725,073	3,635,898	5,026,435	3,319,579	4,127,283	124.3%
단기취업(C-4)	9,302	12,218	12,920	20,617	22,618	109.7%
유 학(D-2)	117,836	140,160	169,715	212,295	248,472	117.0%
일반연수(D-4)	45,624	62,551	81,033	90,357	83,538	92.5%
상사주재(D-7)	9,103	8,991	9,160	8,548	8,460	99.0%
기업투자(D-8)	40,550	40,795	42,007	41,984	41,886	99.8%
무역경영(D-9)	38,867	33,958	26,302	18,288	9,705	53.1%
교 수(E-1)	7,323	7,555	7,550	7,491	7,160	95.6%
회화지도(E-2)	34,567	32,299	32,158	30,922	27,291	88.3%
연 구(E-3)	9,670	9,810	9,494	9,618	9,508	98.9%
기술지도(E-4)	1,093	1,202	1,336	1,345	1,339	99.6%

8) 한국계 포함

전문직업(E-5)	1,926	2,087	2,285	2,206	2,404	109.0%
예술흥행(E-6)	4,710	4,596	3,996	3,765	4,570	121.4%
특정활동(E-7)	39,260	43,300	46,324	47,528	46,661	98.2%
비전문취업(E-9)	115,294	123,433	134,764	140,072	145,174	103.6%
선원취업(E10)	9,574	9,431	9,877	10,720	11,737	109.5%
방문등거(F-1)	41,043	49,310	69,742	82,857	88,747	107.1%
거 주(F-2)	30,189	35,728	43,041	48,924	53,672	109.7%
동 반(F-3)	40,173	43,222	43,684	40,048	38,402	95.9%
재외동포(F-4)	349,137	405,948	468,336	515,587	565,636	109.7%
영 주(F-5)	101,184	118,553	134,138	151,115	162,760	107.7%
결혼이민(F-6)	98,364	106,318	118,883	130,834	143,092	109.4%
방문취업(H-2)	278,600	259,484	229,300	251,674	258,067	102.5%
기 타	2,354,127	2,290,754	3,306,066	1,479,215	1,235,362	83.5%

## 제2절 | 체류외국인 현황

### 1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 ■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 ■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명,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7년	2,180,498	1,171,762	597,399	411,337
<b>2018년</b>	<b>2,367,607</b>	<b>1,246,626</b>	<b>679,874</b>	<b>441,107</b>
전년대비 증감률	8.6%	6.4%	13.8%	7.2%
구성비	100%	52.7%	28.7%	18.6%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 불법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명,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7년	전체	251,041	82,837	167,140	1,064
	16~60세	240,915	80,830	159,599	486
2018년	전체	<b>355,126</b>	<b>90,067</b>	<b>264,044</b>	<b>1,015</b>
	16~60세	344,205	87,981	255,754	470
전년대비 증감률(전체)		41.5%	8.7%	58.0%	-4.6%

\* 거소신고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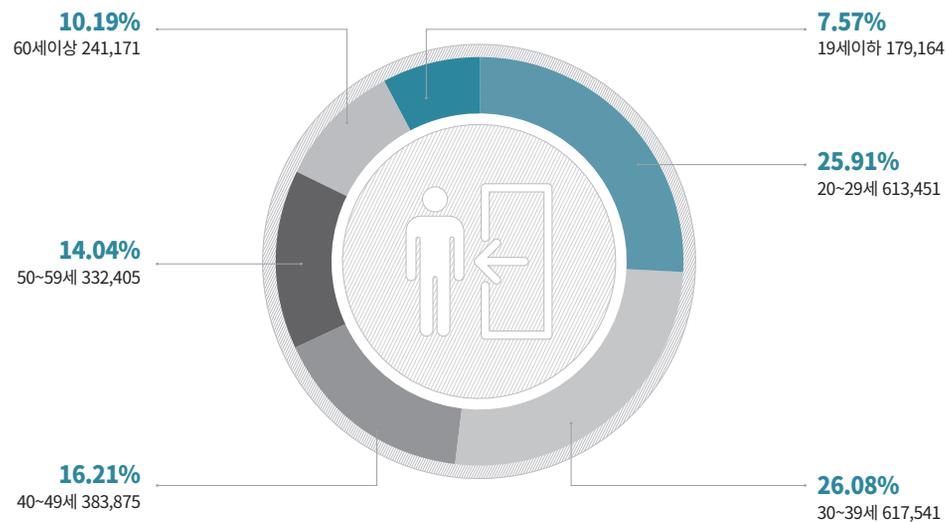
■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등록 외국인	870,636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1,171,762	1,246,626
단기체류 외국인	247,590	258,673	277,596	324,504	356,842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거소 신고	50,251	83,825	135,020	187,616	233,269	286,414	324,786	368,862	411,337	441,107
총계	<b>1,168,477</b>	<b>1,261,415</b>	<b>1,395,077</b>	<b>1,445,103</b>	<b>1,576,034</b>	<b>1,797,618</b>	<b>1,899,519</b>	<b>2,049,441</b>	<b>2,180,498</b>	<b>2,367,607</b>

■ 체류외국인 연령별 분포

(2018.12.31. 현재, 단위: 명)



■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b>총계</b>	<b>2,367,607</b>
중 국 <sup>9)</sup>	1,070,566
한국계	708,082
베 트 남	196,633
미 국	151,018
타 이	197,764
우즈베키스탄	68,433
필 리 핀	60,139
캄 보 디 아	47,012
몽 골	46,286
러시아(연방)	54,064
인 도 네 시 아	47,366
일 본	60,878
네 팔	40,456
타 이 완	41,306
스 리 랑 카	25,828
캐 나 다	25,934
미 얀 마	28,074
방 글 라 데 시	16,641
파 키 스 탄	13,275
인 도	11,945
오스트레일리아	14,279
홍 콩	12,119
영 국	6,972
뉴 질 랜 드	5,072
기 타	125,547

9) 한국계 포함

■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b>총계</b>	<b>2,367,607</b>	<b>2,012,481</b>	<b>355,126</b>
사증면제(B-1)	228,194	66,111	162,083
관광통과(B-2)	149,474	119,446	30,028
단기방문(C-3)	218,743	151,586	67,157
단기취업(C-4)	1,302	998	304
유 학(D-2)	102,690	101,271	1,419
기술연수(D-3)	2,461	1,088	1,373
일반연수(D-4)	59,729	47,116	12,613
종 교(D-6)	1,594	1,547	47
상사주재(D-7)	1,308	1,288	20
기업투자(D-8)	5,889	5,716	173
무역경영(D-9)	2,520	2,482	38
교 수(E-1)	2,341	2,336	5
회화지도(E-2)	13,749	13,711	38
연 구(E-3)	3,145	3,138	7
기술지도(E-4)	191	190	1
전문직업(E-5)	606	597	9
예술흥행(E-6)	3,633	2,029	1,604
특정활동(E-7)	21,884	18,885	2,999
비전문취업(E-9)	280,312	232,939	47,373
선원취업(E-10)	17,447	11,273	6,174
방문동거(F-1)	118,192	115,058	3,134
거 주(F-2)	41,099	38,468	2,631
동 반(F-3)	22,360	21,869	491
재외등포(F-4)	444,880	443,797	1,083
영 주(F-5)	142,151	142,151	0
결혼이민(F-6)	125,238	121,697	3,541
방문취업(H-2)	250,381	248,061	2,320
기 타	106,094	97,633	8,461

## 2 등록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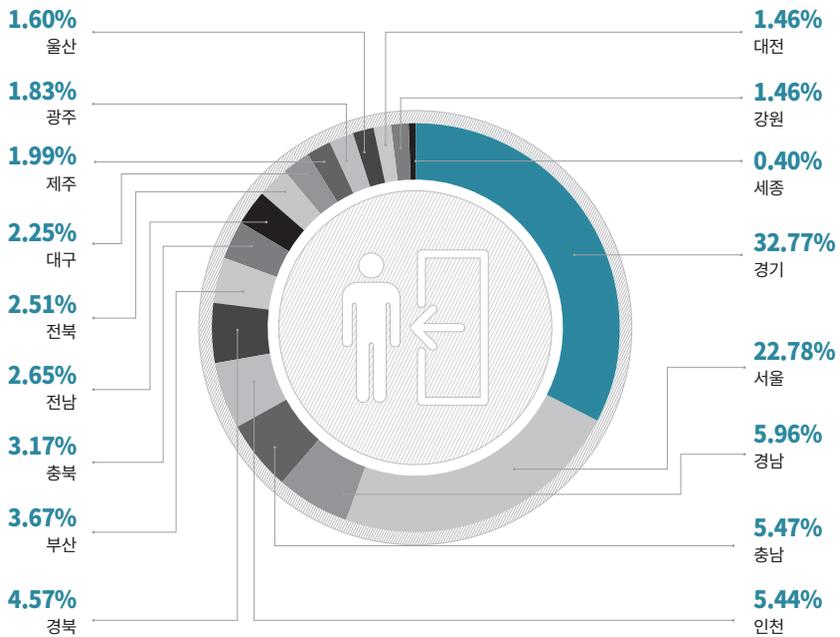
### ■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법체류자	786,907	840,372	899,613	840,421	890,286	997,607	1,058,118	1,086,436	1,088,925	1,156,559
불법체류자	83,729	78,545	82,848	92,562	95,637	93,924	84,969	75,241	82,837	90,067
<b>총계</b>	<b>870,636</b>	<b>918,917</b>	<b>982,461</b>	<b>932,983</b>	<b>985,923</b>	<b>1,091,531</b>	<b>1,143,087</b>	<b>1,161,677</b>	<b>1,171,762</b>	<b>1,246,626</b>

###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2018.12.31 현재)



※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어 합계와 일치 않을 수 있음

###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도	서울	경남	인천	충남 <sup>10)</sup>	경북	부산	충북
	408,526	283,984	74,304	67,869	73,174	56,969	45,738	39,537
<b>1,246,626</b>	전남	울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대전	강원
	33,042	20,002	28,033	31,347	22,815	24,841	18,184	18,261

10) 세종특별자치시 4,940명 포함

■ 등록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명)

구분	등록외국인
<b>총계</b>	<b>1,246,626</b>
중 국 <sup>11)</sup>	553,095
한국계	345,318
베 트 남	170,707
우즈베키스탄	52,585
캄 보 디 아	45,247
필 리 핀	45,305
인 도 네 시 아	37,429
네 팔	38,862
타 이	31,416
스 리 랑 카	24,309
미 국	24,602
미 안 마	26,655
일 본	23,892
몽 골	24,218
타 이 완	20,489
방글라데시	14,284
파 키 스 탄	11,020
인 도	9,454
러시아(연방)	11,185
캐 나 다	4,443
키 르 기 즈	4,803
영 국	4,219
프 랑 스	3,390
남아프리카 공 화 국	2,373
기 타	62,644

11) 한국계 포함

### ■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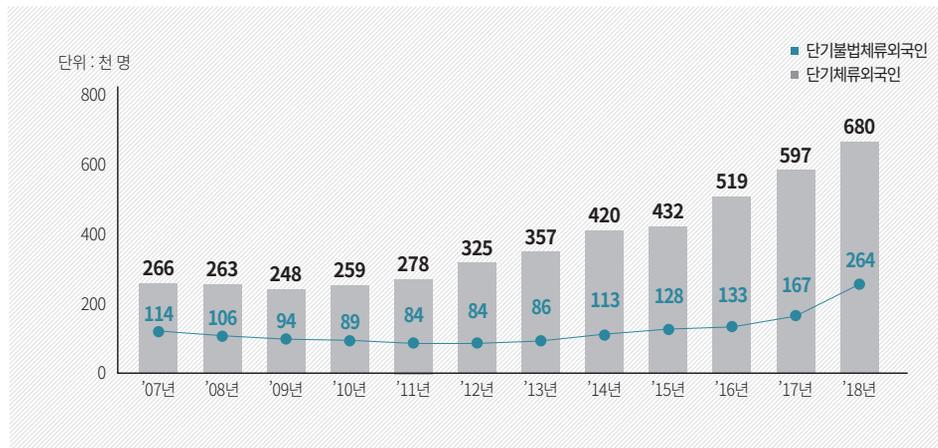
구분	등록외국인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b>총계</b>	<b>1,246,626</b>	<b>1,156,559</b>	<b>90,067</b>
문화예술(D-1)	69	68	1
유 학(D-2)	102,127	100,770	1,357
일반연수(D-4)	55,540	43,865	11,675
취 재(D-5)	94	94	0
종 교(D-6)	1,548	1,510	38
상사주재(D-7)	1,280	1,263	17
기업투자(D-8)	5,853	5,686	167
무역경영(D-9)	2,491	2,453	38
교 수(E-1)	2,336	2,331	5
회화지도(E-2)	13,609	13,574	35
연 구(E-3)	3,129	3,122	7
기술지도(E-4)	190	189	1
전문직업(E-5)	604	595	9
예술흥행(E-6)	3,346	1,895	1,451
특정활동(E-7)	21,382	18,537	2,845
비전문취업(E-9)	274,727	228,585	46,142
선원취업(E-10)	16,875	11,186	5,689
방문동거(F-1)	116,322	113,250	3,072
거 주(F-2)	40,873	38,242	2,631
등 반(F-3)	21,973	21,522	451
영 주(F-5)	141,973	141,973	0
결혼이민(F-6)	123,546	120,457	3,089
관광취업(H-1)	2,730	2,728	2
방문취업(H-2)	246,189	244,012	2,177
기 타	47,820	38,652	9,168

### 3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 단기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법체류외국인	153,977	169,435	193,242	240,791	270,906	306,885	303,561	386,113	430,259	415,830
불법체류외국인	93,613	89,238	84,354	83,713	85,936	112,788	128,085	132,789	167,140	264,044
총계	247,590	258,673	277,596	324,504	356,842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 단기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명)

구분	전체
<b>총계</b>	<b>679,874</b>
중 국 <sup>12)</sup>	187,077
한국계	32,370
타 이	166,345
미 국	82,269
일 본	36,194
몽 골	22,068
베 트 남	25,926
러 시 아	19,003
타 이 완	20,735
필 리 핀	14,822
홍 콩	10,230
말 레 이 시 아	8,837
인 도 네 시 아	9,771
오스트레일리아	8,152
우즈베키스탄	5,366
캐 나 다	5,745
싱 가 포 르	5,428
인 도	2,491
방글라데시	2,357
파 키 스 탄	2,255
영 국	2,062
뉴 질 랜 드	1,930
스 리 랑 카	1,519
독 일	1,687
기 타	37,605

12) 한국계 포함

#### 4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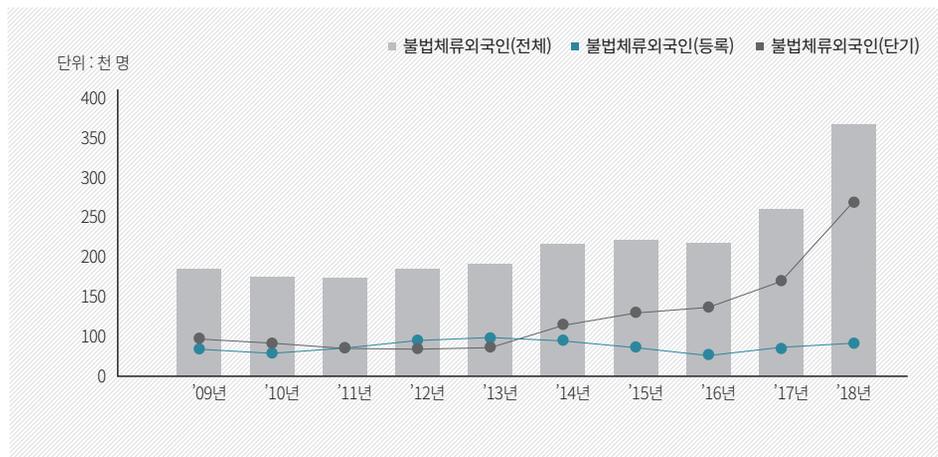
##### ■ 불법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율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명)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등록외국인	83,729	78,545	82,848	92,562	95,637	93,924	84,969	75,241	82,837	90,067
단기체류 외국인	93,613	89,238	84,354	83,713	85,936	112,788	128,085	132,789	167,140	264,044
거소신고	613	732	578	1,579	1,533	2,066	1,114	941	1,064	1,015
총계	177,955	168,515	167,780	177,854	183,106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55,126
불법체류율(%)	15.2	13.4	12.0	12.3	11.6	11.6	11.3	10.2	11.5	15.0

\* 불법체류율 : 총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외국인 비율

##### ■ 불법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비교



## 5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총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b>총체류자</b>	<b>594,991</b>	<b>46,851</b>	<b>548,140</b>
합법체류	534,157	41,884	492,273
불법체류	60,834	4,967	55,867

###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b>총계</b>	<b>594,991</b>	<b>534,157</b>	<b>60,834</b>
<b>소계</b>	<b>46,851</b>	<b>41,884</b>	<b>4,967</b>
단기취업(C-4)	1,302	998	304
교 수(E-1)	2,341	2,336	5
회회지도(E-2)	13,749	13,711	38
전문인력			
연구(E-3)	3,145	3,138	7
기술지도(E-4)	191	190	1
전문직업(E-5)	606	597	9
예술흥행(E-6)	3,633	2,029	1,604
특정활동(E-7)	21,884	18,885	2,999
<b>소계</b>	<b>548,140</b>	<b>492,273</b>	<b>55,867</b>
단순 기능인력			
비전문취업(E-9)	280,312	232,939	47,373
선원취업(E-10)	17,447	11,273	6,174
방문취업(H-2)	250,381	248,061	2,320

##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명)

구분	총체류자
<b>총계</b>	<b>594,991</b>
중 국 <sup>13)</sup>	240,410
한국계	221,299
베 트 남	48,087
캄 보 디 아	38,276
인 도 네 시 아	34,920
우즈베키스탄	34,281
네 팔	35,137
필 리 핀	28,914
타 이	25,822
스 리 랑 카	23,241
미 얀 마	25,715
방글라데시	10,915
미 국	9,524
몽 골	6,589
파 키 스 탄	3,751
키 르 기 즈	2,768
캐 나 다	2,241
영 국	2,124
동 티 모 르	1,969
일 본	1,139
러시아(연방)	625
오스트레일리아	535
뉴 질 란 드	294
기 타	17,714

13) 한국계 포함

### ■ 비전문취업(E-9) 업종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b>총계</b>	<b>280,312</b>	<b>232,939</b>	<b>47,373</b>
소계	273,802	232,811	40,991
제조업(E-9-1)	215,432	189,239	26,193
건설업(E-9-2)	12,192	9,364	2,828
농업(E-9-3)	32,439	25,437	7,002
어업(E-9-4)	13,489	8,675	4,814
서비스업(E-9-5)	250	96	154
기타 <sup>14)</sup>	6,510	128	6,382

### ■ 비전문취업(E-9) 국적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국적	총체류자
<b>총계</b>	<b>280,312</b>
베트남	37,828
캄보디아	38,197
네팔	34,467
인도네시아	29,138
필리핀	26,104
타이	25,243
스리랑카	23,064
미얀마	24,934
우즈베키스탄	14,361
방글라데시	10,603
몽골	6,190
파키스탄	3,402
중국 <sup>15)</sup>	3,286
한국계	653
기타	3,495

14) 기타 : 관광호텔(E-9-7), 과거추천연수(E-9-95) ~ 과거합법조치(E-9-98)

15) 한국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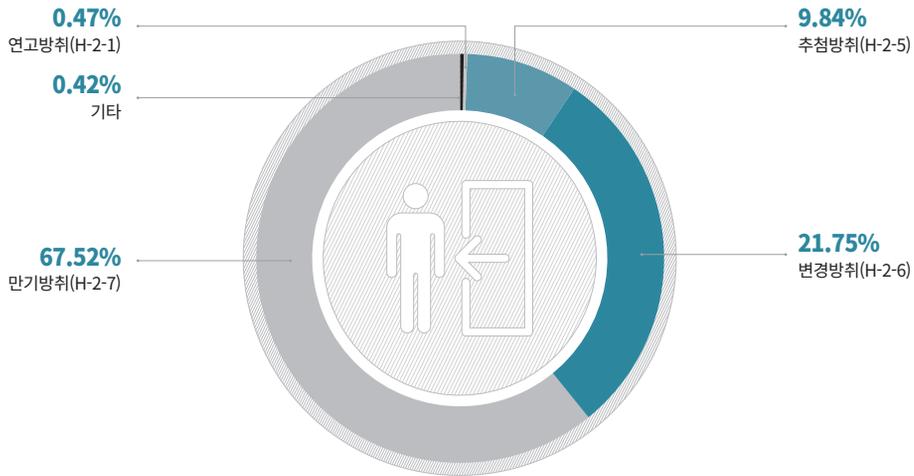
■ 방문취업자(H-2)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연고 방취 (H-2-1)	유학 방취 (H-2-2)	자진 방취 (H-2-3)	연수 방취 (H-2-4)	추첨 방취 (H-2-5)	변경 방취 (H-2-6)	만기 방취 (H-2-7)	기타 방취 (H-2-99)
총계	250,381	1,174	3	342	14	24,645	54,449	169,067	687
중 국	220,606	1,165	3	342	13	5,193	54,430	158,776	684
우즈베키스탄	19,693	4	0	0	1	10,692	13	8,982	1
카자흐스탄	6,696	1	0	0	0	5,894	4	795	2
키르기즈	1,536	0	0	0	0	1,452	0	84	0
기타	1,850	4	0	0	0	1,414	2	430	0

■ 방문취업자(H-2) 유형별 분포

(2018.12.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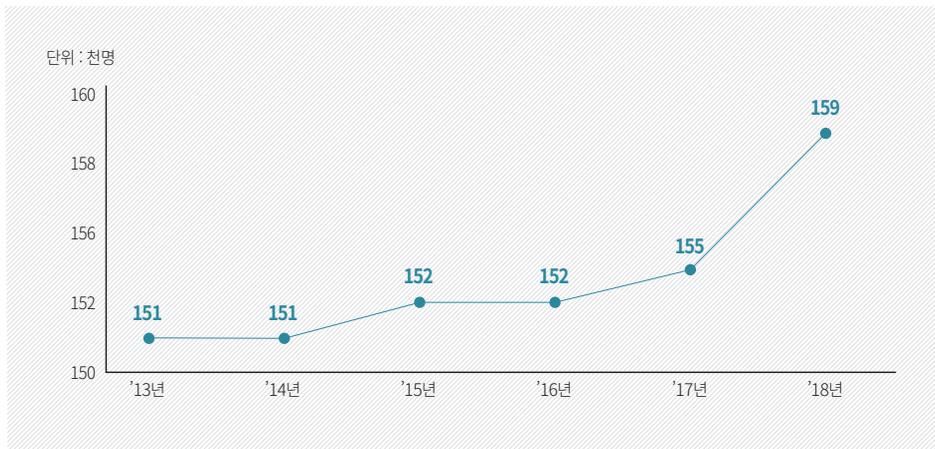


## 6 결혼이민자<sup>16)</sup> 체류 현황

### ■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b>159,206</b>
전년대비 증감률	1.6%	0.1%	0.4%	0.5%	2.0%	<b>2.4%</b>



<참고>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혼인귀화자 (전체누계)	93,953	101,507	108,526	114,901	121,339	129,028

### ■ 결혼이민자 거주지역별 분포 현황(등록외국인)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계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충남 <sup>17)</sup>	경북	부산	전남
<b>157,418<sup>18)</sup></b>	45,182	27,561	10,280	10,272	9,126	7,989	7,279	6,606
	전북	대구	충북	강원	대전	광주	울산	제주
	6,020	5,379	5,198	3,640	3,386	3,511	3,372	2,617

16)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

17) 세종특별자치시 742명 포함

18) 결혼이민자 중 등록자(미등록자 제외)

■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sup>19)</sup>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 디아	태국	몽골	기타
전체	159,206	58,706	21,894	42,460	13,738	11,836	4,496	4,411	2,438	21,121
남자	26,815	12,710	7,523	2,182	1,231	419	217	96	147	9,813
여자	132,391	45,996	14,371	40,278	12,507	11,417	4,279	4,315	2,291	11,308

※ 여성 83.2%, 남성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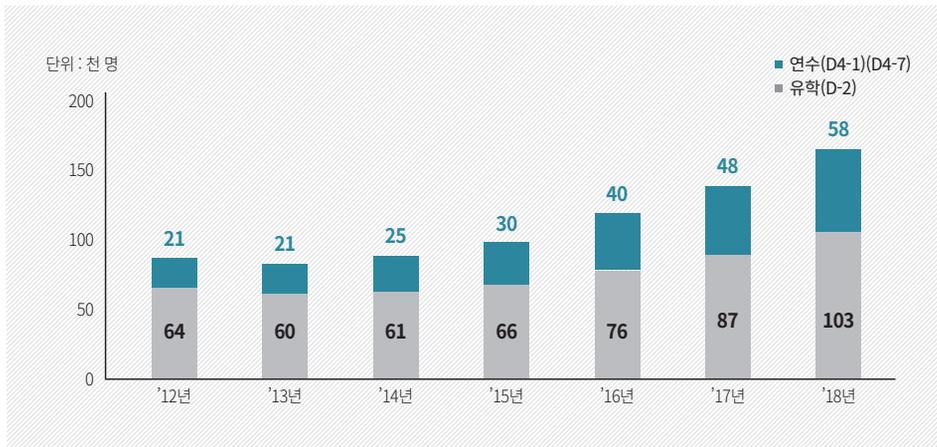
※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4% 순임.

7 외국인 유학생<sup>20)</sup> 체류 현황

■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

(단위: 명,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80,985	87,480	88,468	84,711	81,847	86,410	96,357	115,927	135,087	160,671
유학(D-2)	62,451	69,600	68,039	64,030	60,466	61,257	66,334	76,040	86,875	102,690
한국어연수(D-4-1)	18,534	17,880	20,429	20,681	21,381	25,138	30,017	39,873	48,208	57,971
외국어연수(D-4-7)	-	-	-	-	-	15	6	14	4	10
전년대비 증감률	13.2	8.0	1.1	-4.2	-3.4	5.6	11.5	20.3	16.5	18.9



19) 한국계 포함

20) 외국인 유학생 (D-2, D-4-1, D-4-7)

■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 명)

구분	총 계	유학(D-2)	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b>총계</b>	<b>160,671</b>	<b>102,690</b>	<b>57,971</b>	<b>10</b>
중 국 <sup>21)</sup>	68,994	57,616	11,378	0
한국계	881	704	177	0
베 트 남	45,143	11,952	33,189	2
몽 골	8,650	4,411	4,239	0
우즈베키스탄	7,840	4,365	3,475	0
일 본	2,676	1,848	828	0
파 키 스 탄	1,720	1,649	71	0
네 팔	1,636	1,426	210	0
인 도 네 시 아	1,520	1,340	180	0
인 도	1,411	1,260	151	0
타 이 완	1,354	955	399	0
미 국	1,210	1,061	147	2
방 글 라 데 시	1,206	1,139	67	0
말 레 이 시 아	1,075	894	181	0
프 랑 스	956	846	110	0
카 자 흐 스 탄	947	755	192	0
러시아(연방)	884	541	343	0
미 얀 마	790	526	264	0
홍 콩	702	431	271	0
기 타	11,957	9,675	2,276	6

21) 한국계 포함

## 8 체류허가업무 연도별 처리현황

(2018.12.31. 현재,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b>총계</b>	<b>1,769,724</b>	<b>1,634,334</b>	<b>1,739,766</b>	<b>1,748,121</b>	<b>1,944,880</b>
기간연장	516,596	483,128	490,416	534,630	578,912
자격부여	5,099	6,891	7,850	6,477	7,155
자격변경	132,920	134,157	140,698	132,516	134,413
재입국	6,876	5,267	2,946	1,961	1,542
체류지변경	628,449	590,239	661,663	612,597	677,179
자격외활동	3,561	6,014	8,915	10,815	14,762
근무처변경·추가	65,101	56,860	55,833	55,501	57,437
근무장소변경·추가	895	36	66	49	61
외국인등록	326,603	278,820	292,187	298,148	337,109
거소신고	76,880	65,505	71,238	68,284	58,722
등록사항변경	6,744	7,417	7,954	27,143	77,588

## 제3절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현황

### 1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연도별 처리

(단위 : 명, 천 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강제퇴거	18,268	18,316	21,919	28,784	26,694	31,811
출국명령	5,655	3,776	5,564	6,183	6,282	4,770
출국권고	3,775	3,352	3,192	3,345	3,366	3,273
통고						
건	25,148	31,236	29,272	29,380	29,838	30,395
처분						
금액/천	31,614,430	32,531,430	35,037,850	38,592,080	40,094,280	49,452,520
고발	1,234	1,613	1,850	2,553	2,851	3,482
과						
건	10,189	11,000	8,558	7,271	15,205	15,595
태						
료	1,391,510	1,528,616	1,312,070	988,440	2,165,600	2,086,170
기타	37,491	44,058	54,160	74,970	62,688	87,521
<b>총계</b>	<b>101,760</b>	<b>113,351</b>	<b>124,515</b>	<b>152,486</b>	<b>146,924</b>	<b>176,847</b>

## 제4절 | 국적 및 난민 업무 처리현황

## 1 국적업무 처리 현황

##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취득 현황

(단위: 명)

연도	총계		귀화		국적회복	
	신청	허가	신청	허가	신청	허가
2013년	21,266	13,956	18,291	11,270	2,975	2,686
2014년	17,079	14,200	14,331	11,314	2,748	2,886
2015년	19,351	13,534	16,721	10,924	2,630	2,610
2016년	19,700	12,411	17,045	10,108	2,655	2,303
2017년	20,244	12,861	17,765	10,086	2,479	2,775
2018년	25,014	14,254	22,153	11,556	2,861	2,698

국가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귀화	11,270	11,314	10,924	10,108	10,086	11,556
	회복	2,686	2,886	2,610	2,303	2,775	2,698
중 국	귀화	5,380	6,650	6,477	5,126	4,781	4,838
	회복	421	402	193	113	245	144
베 트 남	귀화	3,952	2,977	2,722	3,289	3,743	4,849
	회복	82	67	47	56	57	45
필 리 핀	귀화	524	392	280	337	359	597
	회복	8	8	6	3	7	7
몽 골	귀화	112	120	101	107	93	99
	회복	11	13	10	7	17	14
우 즈 베 키 스 탄	귀화	90	80	81	62	48	72
	회복	20	16	28	19	27	12
일 본	귀화	40	30	44	35	29	17
	회복	44	52	49	31	38	53
타 이	귀화	79	71	45	41	52	58
	회복	12	13	5	5	4	5
파 키 스 탄	귀화	33	39	24	33	51	42
	회복	0	1	0	0	0	2

국가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기 타	귀화	1,060	955	1,150	1,078	930	984
	회복	2,088	2,314	2,272	2,069	2,380	2,416

■ 연도별 및 국가별 국적이탈·상실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상실	이탈
2013년	20,090	19,413	677
2014년	19,472	18,150	1,322
2015년	17,529	16,595	934
2016년	36,404	35,257 <sup>22)</sup>	1,147
2017년	21,269	19,364	1,905
<b>2018년</b>	<b>33,594</b>	<b>26,608<sup>23)</sup></b>	<b>6,986<sup>24)</sup></b>

국가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상실	19,413	18,150	16,595	35,257	19,364	26,608
	이탈	677	1,322	934	1,147	1,905	6,986
미 국	상실	9,935	10,161	9,798	12,075	11,647	13,754
	이탈	525	998	717	827	1,514	5,128
캐 나 다	상실	2,698	3,204	3,482	4,336	3,041	3,342
	이탈	37	115	68	80	89	749
오스트레일리아	상실	1,131	1,172	1,205	1,553	1,556	1,911
	이탈	20	20	16	17	17	219
일 본	상실	3,535	1,946	499	15,216	962	4,998
	이탈	52	116	88	102	193	609
뉴 질 램 드	상실	705	531	564	657	655	686
	이탈	6	17	11	9	17	60
독 일	상실	183	183	162	197	192	289
	이탈	2	3	4	3	16	36
스 웨 덴	상실	71	23	17	96	48	53
	이탈	0	0	0	0	1	1
기 타	상실	1,155	930	868	1,127	1,263	1,575
	이탈	35	53	30	109	58	184

22) ('16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임

23) ('18년 국적상실처리 증가 이유) 제7회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접수된 신고를 집중 처리한 결과임

24) ('18년 국적이탈처리 증가 이유)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18.5.1.)에 따른 영향과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을 집중 처리한 결과임

## 2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 ■ 연도별 난민현황

(1994. 1. 1. ~ 2018. 12. 31. 현재, 단위: 명)

연도	신청	철회	심사결정종료
<b>총계</b>	<b>48,906</b>	<b>5,767</b>	<b>23,208</b>
'94-'09	2,492	494	1,665
2010	423	62	248
2011	1,011	90	339
2012	1,143	187	649
2013	1,574	331	586
2014	2,896	363	2,376
2015	5,711	280	2,123
2016	7,541	731	5,322
2017	9,942	1,200	6,021
2018	16,173	2,029	3,879

※ 2018. 12. 31. 기준 심사 중 인원 19,931명

### ■ 연도별 심사결정종료자 현황

(1994. 1. 1. ~ 2018. 12. 31. 현재, 단위: 건)

연도	심사결정종료	난민인정(보호)			불인정
		소계	인정	인도적체류	
<b>총계</b>	<b>23,208</b>	<b>2,924</b>	<b>936</b>	<b>1,988</b>	<b>20,284</b>
'94-'09	1,665	256	171	85	1,409
2010	248	80	45	35	168
2011	339	62	42	20	277
2012	649	91	60	31	558
2013	586	63	57	6	523
2014	2,376	632	93	539	1,744
2015	2,123	299	105	194	1,824
2016	5,322	344	98	246	4,978
2017	6,021	439	121	318	5,582
2018	3,879	658	144	514	3,221

■ 사유별 난민인정(보호) 신청 현황

(2018. 12. 31. 현재, 단위: 건)

구분	계	종교	정치적 사유	특정 구성원	인종	국적	기타
총 누계	48,906	11,962	9,520	5,217	3,190	193	18,824
당해년도	16,173	3,764	2,426	1,588	1,054	107	7,234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주요 업무 추진실적

제3장 일자리별 주요업무 처리내용

제4장 법령·예규 정비

제5장 주요 통계

APPENDIX

# 부록



Annual re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 ① 체류자격 일람표
- ② 사증면제협정 현황
- ③ 주요 행사 연설문
- ④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 ⑤ 본부 및 산하기관 간부 명단
- ⑥ 주요 보도자료

## 01 | 체류자격 일람표

## ■ [별표 1] &lt;개정 2018. 9. 18.&gt;

##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C-4)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거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 ■ [별표 1의2] &lt;신설 2018. 9. 18.&gt;

##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6.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7.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8. 취재(D-5)	외국의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또는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거나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9. 종교(D-6)	가.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0. 주재(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수받으려는 사람(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기업투자(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보유 등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2.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산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구직(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교수(E-1)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5.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연구(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7.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18.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9.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0.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1.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선원취업(E-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3. 방문동거(F-1)	<p>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p>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hr/> <p>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li> <li>3)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li> <li>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1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ol> <p>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으로서 그 체류의 필요성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24. 거주(F-2)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자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li> <li>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li> <li>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li> </ol> <p>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p>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li> <li>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li> <li>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li> </ol>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25.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6. 재외동포(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 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7. 결혼이민(F-6)	<p>가. 국민의 배우자</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8.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9. 방문취업(H-2)	<p>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li> </ol>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천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천일염 생산 및 염염 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파) 생활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네)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0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02) 저) 한식 음식점업(5611)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처) 외국인 음식점업(5612) 커)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 터)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허)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고)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로)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모)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보)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소)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오) 옥탕업(96121) 조) 산업용 세탁업(96911) 초)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코) 가구 내 고용활동(97)
30. 기타(G-1)	별표 1,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별표 1의3] <신설 2018. 9. 18.>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제12조의2제1항 관련)

체류자격(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체류자격(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li> <li>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li> <li>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ol> </li> <li>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li> <li>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li> <li>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li> <li>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li> <li>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li> <li>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li> </ol>

## 02 | 사증면제협정 현황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시아 주	라 오 스	외교, 관용	90일	'09.06.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말레이시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3.09.09.	
	몽 골	외교, 관용	90일	'12.12.2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단기사증 발급수수료 면제
	미 안 마	외교·관용	90일	'11.04.0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방글라데시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90일	'83.03.17.	◦ 2008.7.15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15일		
	베 트 남	외교, 관용	90일	'99.01.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싱 가 포 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11.01.	
	아르메니아	외교, 관용	90일	'12.05.22.	
	아랍에미리트	외교, 관용, 특 별, 일반	90일	'16.09.21.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오 만	외교, 관용, 특별 및 공무	90일	'15.04.11.	
	우즈베키스탄	외교	60일	'09.06.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란	외교, 관용	3개월	'76.12.2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스 라 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5.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인 도	외교, 관용	90일	'05.10.03.	
	일 본	외교, 관용	90일	'98.12.0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조 지 아	외교, 관용	90일	'13.04.01.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시아주	중 국	외교	30일	'13.08.18.	
		관용	30일	'14.12.25.	
	카자흐스탄	외교, 관용	90일	'07.12.05.	◦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180일 내 최장 60일 체류)
		일반	30일	'14.11.29.	
	키 르 키 즈	외교, 관용	30일	'11.05.19.	
	캄 보 디 아	외교, 관용	60일	'06.12.2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쿠 웨 이 트	외교, 관용, 특별	90일	'15.06.24.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타지크스탄	외교, 관용	90일	'13.01.08.	
	태 국	외교, 관용	제한 없음	'67.10.10.	
		일반	90일	'81.12.09.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터 키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5.03.	◦ 1987. 3. 1. 양해각서 개정
	투 르 크 메 니 스 탄	외교,	30일	'08.12.0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파 키 스 탄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85.06.08.	※ 2001.10.1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일시중지
필 리 핀	외교, 관용	제한 없음	'70.09.01.	◦ 체류기간 59일이하의 일반상용 (C-3-4), 단기방문(C-3) :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요 르 단	외교	90일	'17.5.22.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 주	과 테 말 라	외교, 관용, 일반	90일	'07.10.0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91일 이상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그 레 나 다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90일	'91.01.27.	
	니 카 라 과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90일 15일	'95.04.08.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도 미 니 카 공 화 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3.04.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도미니카연방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90일 15일	'90.03.30	
	멕 시 코	일반	3개월	'79.04.06.	
		외교, 관용	90일	'97.08.01.	○ 사증수수료, 연장허가수수료 면제
	바베이도스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90일 15일	'84.03.1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바 하 마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90일 15일	'88.09.04. '94.11.03.	
	베네수엘라	외교, 관용 일반	30일 90일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벨 리 즈	외교, 관용	90일	'07.02.08.	※ 파견국 영사관의 외교공한에 따 라 체류기간 연장 가능
	볼 리 비 아	외교, 관용	90일	'11.04.18.	
	브 라 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일	'92.02.1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 주	세인트루시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세인트빈센트 그 레 나 딘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7.06.	
		선원수첩	15일		
	세인트키츠 네 비 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30.	
		선원수첩	15일		
	수 리 남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6.08.03.	◦ 재입국허가 면제
	아 이 티	외교, 관용, 일반	90일	'90.03.21.	
		선원수첩	15일		
	아르헨티나	외교, 관용	90일	'04.07.31.	
	앤 티 가 바 부 다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2.29.	
		선원수첩	15일		
	에 과 도 르	외교	제한 없음	'86.05.29.	
		관용	3개월		
	엘살바도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7.02.1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선원수첩	15일		
	우 루 과 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1.19.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13.01.10.	
자 메 이 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1.27.		
	선원수첩	15일			
칠 레	외교, 관용	90일	'00.07.18.	◦ 재입국허가 면제 (단, C-2, D-7, D-8, D-9에 한함)	
	일반	90일	'04.10.20.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미주	코스타리카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0.22.	
		선원수첩	15일		
	콜롬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1.12.2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0.15.	
		선원수첩	15일		
	파나마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09.	
유럽주	파라과이	외교, 관용	90일	'83.01.01.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6.12.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페루	선원수첩	15일		
유럽주	그리스	외교, 관용	제한 없음	'74.05.15.	
		일반	3개월	'79.02.25.	
	네덜란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노르웨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덴마크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독일	외교, 관용	제한 없음	'62.01.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74.01.24.	◦ 재입국허가 면제 : '97. 4. 14	
	라트비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3.06.2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유럽주	러 시 아	외교, 관용	90일	'04.11.20.	※ 2006.12.31 관용 추가 협정
		일반	60일	'14.01.01.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루 마 니 아	외교, 관용	90일	'96.06.06.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일반	90일	'16.03.13.	※ 총체류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룩셈부르크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리투아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2.05.09.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리히텐슈타인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몰도바	외교, 관용	90일	'12.07.03.	
	몰타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0.23.	
	벨기에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0.06.01.	◦ 재입국허가 면제
	벨라루스	외교, 관용	90일	'08.07.24.	※ 조약 제1902호
	불가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08.13.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사이프러스	외교, 관용	90일	'00.12.16.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스웨덴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스위스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79.06.28.	◦ 재입국허가 면제
	스페인	외교, 관용, 일반	90일	'72.04.08.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75.04.18.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유 라 프 주	슬로바키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95.07.1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아이슬란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0.04.01.	
	아 일 랜 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89.07.12.	
	아제르바이잔	외교, 관용	30일	'08.11.21.	
	에스토니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01.08.18.	
	영 국	외교, 관용, 일반	90일	'69.12.19.	
	오스트리아	외교, 관용 일반	180일 90일	'79.06.2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우크라이나	외교, 공무	90일	'14.09.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이 탈 리 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75.05.05.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체 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4.11.05.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크로아티아	외교, 관용	90일	'01.06.16.	
	포 르 투 갈	외교, 관용, 일반 선원수첩	60일 15일	'79.09.19.	○ 마카오 제외
	폴 란 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12.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프 랑 스	외교, 관용, 일반	90일	'67.04.12. ( '89.10.01.)	○ 재입국허가 면제
	핀 란 드	외교, 관용, 일반	90일	'74.03.01.	○ 재입국허가 면제
	헝 가 리	외교, 관용, 일반	90일	'91.04.25.	

주별	국가명	적용 대상여권	협정상의 체류기간	발효일자	참고사항
아 프 리 카 주	가 봉	외교, 관용	90일	'13.08.14.	
	라이베리아	외교, 관용, 일반	90일	'82.09.23.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선원수첩	15일		
	레 소 토	외교, 관용, 일반	60일	'71.09.05.	
	모 로 코	외교, 관용, 일반	90일	'93.09.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2000. 8. 3 추가 협정)
		선원수첩	15일		
	베 냉	외교, 관용	90일	'92.07.01.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외교·관용 여권에 한함)
	알 제 리	외교, 관용	90일	'06.08.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사증발급수수료 면제
	앙 골 라	외교, 관용	30일	'12.05.25.	
	이 집 트	외교, 관용	90일	'98.06.24.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튀 니 지	외교, 관용, 일반	30일	'69.08.17.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재입국허가수수료 면제 ◦ 30일 이상 체류시 연장수수료 면제 (단, 6개월 초과 불가)	
대 양 주	카보베르데	외교, 관용	90일	'15.10.14.	
	모 잠 비 크	외교, 관용	90일	'17.02.16.	
	탄 자 니 아	외교, 관용	90일	'18.10.05.	
	뉴 질 랜 드	외교, 관용, 일반	3개월	'94.09.30.	◦ 주재공관원 : 재임기간 ◦ 뉴질랜드의 ISLANDS, NIUE, TOKELAU 제외
	바 누 아 트	외교, 관용	90일	'18.02.21.	

## 03 | 주요 행사 연설문

# “제1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인권분야에 헌신적으로 몸 담고 계시는 외부위원님들을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관이 손잡고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①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체류요건 완화 ② 고려인 4세 동포 학생에 대한 체류허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외국인들 가운데는 경직된 행정이나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의 고충처리와 권리구제기능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외국인 한분 한분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가 인권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에 일조할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26.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제4기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 봄에 이민정책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江山)도 변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인정책을 시행해온 지도 어느 새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향후 5년간 범정부적으로 시행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2016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7년 30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100만 명에 도달한 후 2016년에는 전체 인구의 4%인 200만 명을 상회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도 높은 ‘성장시대’에 맞는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미래에는 ‘저성장시대’가 도래하므로 기존의 인식과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수 외국인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민자가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민정책은 본질적으로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정부의 신남방정책 등 외교정책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때 베트남 사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베트남의 라이따이한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바람직한 이민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21.

법무부장관 박상기

##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귀화증서 수여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외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께 국적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간, 법무부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는 특별귀화 허가를 통해 예우를 해오고 있었지만,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분들에 대해서는 국적취득과 관련한 배려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귀화 면접심사를 면제하고, 생계유지능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 여러분!

오늘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으로 지켜낸 조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문화를 존중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선조들의 목숨과 바꿔 지켜낸 조국,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러분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그 가족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9.

법무부장관 박상기

## “출입국관리법 개정 포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에 출입국관리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법무부와 공동으로 포럼을 주최해 주신 금태섭 국회의원님과 한국이민법학회 박종보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포럼을 위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30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에 도달한 후 2017년에는 전체 인구의 4.2%인 218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처럼 단기적이고 압축적으로 이민자가 유입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그러한 이민정책 실행의 근간이 되는 법적·제도적 기반으로써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출입국관리법은 1963년에 제정된 후, 올해로 55년이 지났고, 그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였고,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 방지를 위해 긴급 출국정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업무가 단지 출입국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사회통합, 국적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인권보호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포럼을 통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동시에,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사”

### I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열한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II

현재 대한민국에는 전체 인구의 약 4퍼센트인 220만 여명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각종 매체에 등장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문화적 배경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차별을 방지하고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소통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포의 자유왕래와 경제활동 보장 등 적극적인 동포정책을 추진하였고,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 등 난민정책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 Ⅲ

올해에는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첫해로 정부는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정책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등 산업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을 실시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이민배경 자녀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이민자가 지역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관계 호전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국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계도활동 참여 등 외국인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여성, 아동 등 취약한 이민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 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인권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각 국가의 이민당국과 인적교류 등 이민관련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IV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한외국인 여러분!

‘세계인의 날’은 국적, 인종, 문화 등 차이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어우러져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열린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날입니다.

오늘의 기념행사에 이은 ‘세계인의 주간’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문화적 소통과 화합을 일궈내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18.

법무부장관 박상기

##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 출입국기관장과 해외 주재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외국인정책 총괄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시기에 여러분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영사님 네 분도 참석하셨습니다.

출입국기관장회의에 타 부처 직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 회의가 처음으로, 양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유익하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된 ‘평화올림픽’을 실현한 이후, 4월에는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얼마 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의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남북협력관계 증진에 따른 거대한 흐름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외교의 다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신(新)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세안 국가의 성장잠재력, 역할의 증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아세안 국가들과의 인적교류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님께서 아세안 정상회의의 연설 중 아세안과의 민간교류를 위해 한국 입국비자를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동남아 여행객 적극 유치 정책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아세안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정책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양한 부류의 세계시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불법체류자, 남용적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체류나 남용적 난민신청자는 법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높으므로 국익위해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만 출입국 심사 강화도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비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사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해외주재관들께서는 해외 비자발급이 국내체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그간의 업무 방식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정책도 법무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부단한 소통, 관계부처 간 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조직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회의 마치고 국내외 임지에 잘 복귀하시기 바라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31.

법무부장관 박상기

## “맥그린치 신부 명예국민증 수여식”

오늘 맥그린치 신부님에 대한 명예국민증 수여식 참석을 위해 멀리 외국에서 와 주신 조카분과 천주교교구 사제님 그리고 아일랜드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맥그린치 신부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없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고, 절망을 희망으로 이끌어 주신 고인의 숭고한 삶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맥그린치 신부님께서서는 6·25전쟁 직후인 ‘54년부터 64년이라는 긴 세월을 제주도에 머물며 도민들과 함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내셨고 이는 제주도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직물회사를 만들어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4H클럽을 만들어 젊은이들을 교육 시켰으며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만들었고, 양과 돼지 사육으로 시작된 성이시돌 목장은 제주 축산의 토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로원, 요양원, 호스피스 복지원, 유치원 등을 세워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 직후, 정말 힘든 시기에 제주 도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랑과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64년 이란 긴 세월동안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맥그린치 신부님의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정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그 분의 삶을 귀감으로 삼아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고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2018. 6. 5.  
법무부장관 박상기

## “난민의 날 기념 포럼 개회사”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UN)이 2000년 유엔총회 특별결의안을 통해 정한 날로 다음 해인 2001년부터 매년 전 세계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복잡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사회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난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유엔난민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글로벌 난민동향보고서(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6)」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강제이주인 수는 6,56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난민발생의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3년 6월 까지 20년간 누적 난민신청자는 5,5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불과 5년간 누적 난민신청자는 34,890명에 달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신청자는 7,737명으로 2017년 한 해 9,942명의 78%에 이르고 있어 연말에는 18,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앞으로 3년 내에 누적 난민신청자는 1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생계비 지원 등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재정착난민을 수용하는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난민인정 심사절차 진행을 위하여 전담인력 증원과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난민위원회 상설 운영과 국가정황조사인력 확보 추진, 난민 전문통역인 풀 정비 등 난민심사 관련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내 체류하는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난민정책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정확·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난민심사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무부, 유엔난민기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함께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난민’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학계,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저명한 난민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는데, 아시아 주요 난민발생 지역의 국가정황을 서로 공유하고, 난민심사관의 전문성과 심사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이 난민의 인권보호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1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규근**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독립유공자 후손 및 가족분들, 그리고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와 겨레가 빛을 잃었던 일제시대, 그 빛을 되찾기 위해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기를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겨 보며, 오늘 그 후손인 여러분들께 국적증서를 수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조이신 독립유공자들께서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사는 길을 버리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사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진정 조국의 독립을 되찾겠다는 위대한 용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험난한 노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 오셨을 후손 여러분들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곳곳하게 생활해 오신 후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 땅에서 각자가 꿈꾸어왔던 삶을 실현할 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과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많은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였고,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에 평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도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더 크고 든든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발굴 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그 후손들이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어느덧 2018년 무술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범귀화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20일은 국적법이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지 70년째 되는 날로서, 지금까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여, 네 분의 모범귀화자를 선정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모범귀화자로 선정된 분들은 평소 자기계발과 기업경영,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에 힘쓰는 등 모범적인 생활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이민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처음에 낯선 대한민국 땅으로 이민을 결심하고 입국하신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범귀화자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여러분들은 한국에 온 많은 이민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힘들 수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은 모범귀화자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자기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귀화자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고, 다음 세대에게도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최초의 모범귀화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법무부장관 박상기

## 04 | 발간 책자 및 연구 보고서

### ■ 일반 책자 목록

발간 시기	책자 명
2018. 7.	귀화자를 위한 기본소양 교육책자 (나도 자랑스런 한국인)

### ■ 전문가 연구 보고서 목록(www.prism.go.kr 참조)

발간 시기	연구 보고서 명	연구자(단체)
2018. 9.	출입국향 난민신청 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2018. 11.	국내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사)한국행정학회
2018. 11.	한국형 이민행정 이의신청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	(사)한국행정학회
2018. 11.	재정착난민 정착 실태 점검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사)피난처
2018. 1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및 추진과제 발굴 연구용역	(사)서울행정학회
2018. 12.	이민기록정보원 설립 방안 및 타당성 연구용역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2.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집행 전담기관 설립방안	사단법인고용이민연구센터
2018. 12.	주요 국가별 국적취득 심사기준 등 국적법제 연구 용역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2.	다문화사회전문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 12.	국민과 외국인이 상호 소통하는 쌍방향 이민통합정책 연구	(사)한국행정학회
2018. 12.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05 | 본부 및 소속기관 간부 명단 (’18. 12. 31. 현재)

### ■ 본부

직 위	성 명	발령일
본 부 장	차규근	’17. 9. 4.
출입국정책단장	김영근	’18. 8. 6.
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근	’18. 8. 20.
출입국기획과장	이재유	’18. 7. 16.
출입국심사과장	김두락	’18. 1. 1.
체류관리과장	이덕룡	’18. 1. 1.
이민조사과장	이기흠	’18. 8. 27.
이민정보과장	이상달	’18. 1. 1.
외국인정책과장	강성환	’17. 9. 4.
국적과장	반재열	’18. 1. 1.
이민통합과장	육승훈	’16. 7. 20.
난민과장	김정도	’18. 2. 28.
출입국기획과 서기관	문수용	’18. 7. 16.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나현웅	’18. 7. 16.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공존행	’18. 7. 16.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김태형	’18. 1. 1.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박제성	’18. 7. 23.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대우	’17. 1. 9.
출입국기획과 사무관	이향숙	’18. 7. 23.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이호원	’18. 7. 23.
출입국심사과 사무관	손흥기	’18. 6. 4.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종복	’18. 2. 19.
체류관리과 사무관	이승현	’15. 8. 10.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18. 1. 1.
체류관리과 사무관	주지정	’18. 7. 23.

직 위	성 명	발령일
이민조사과 사무관	김무진	’14. 7. 14.
이민조사과 사무관	강성록	’18. 3. 5.
이민조사과 사무관	박홍상	’18. 1. 1.
이민조사과 사무관	박주현	’18. 7. 23.
이민정보과 사무관	임준식	’17. 1. 9.
이민정보과 사무관	김기성	’17. 1. 9.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세진	’18. 1. 1.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기락	’18. 2. 27.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서석주	’18. 7. 23.
국적과 사무관	김진성	’13. 7. 29.
국적과 사무관	황민하	’18. 1. 1.
국적과 사무관	배창준	’18. 1. 1.
이민통합과 사무관	유성오	’18. 1. 1.
이민통합과 사무관	유현송	’18. 7. 23.
이민통합과 사무관	윤병승	’18. 1. 1.
이민통합과 사무관	주태길	’18. 7. 23.
난민과 사무관	구병모	’15. 3. 7.
난민과 사무관	이정미	’16. 1. 27.
국립외교원 부이사관	이동휘	’18. 2. 1.
법무연수원 사무관	류재석	’18. 7. 23.
외교부 사무관	권옥례	’17. 8. 14.
국가인권위 사무관	김보경	’18. 1. 1.
KOTRA 사무관	정금심	’18. 1. 1.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사무관	임용성	’18. 7. 23.

■ 소속기관

직 위	성 명	발령일
<b>&lt;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gt;</b>		
인천공항청장	장세근	'18. 8. 6.
인천공항 지원국장	김현재	'18. 7. 16.
인천공항 심사1국장	심준섭	'18. 7. 16.
인천공항 심사2국장	류인성	'18. 9. 3.
인천공항 총무과장	이인숙	'18. 7. 16.
인천공항 심사지원과장	신현민	'17. 7. 1.
인천공항 입국재심1과장	김용규	'17. 1. 9.
인천공항 입국재심2과장	김형연	'18. 1. 1.
인천공항 심사 1과장	최남일	'18. 1. 1.
인천공항 심사 2과장	이양수	'18. 1. 1.
인천공항 심사 3과장	공석	
인천공항 심사 4과장	이상한	'18. 1. 1.
인천공항 심사 5과장	조기수	'18. 7. 23.
인천공항 심사 6과장	공석	
인천공항 심사 7과장	공석	
인천공항 심사 8과장	윤성식	'18. 7. 23.
인천공항 심사 9과장	김경희	'18. 7. 23.
인천공항 심사10과장	김길술	'18. 7. 23.
인천공항 심사11과장	임현호	'18. 7. 23.
인천공항 심사12과장	최인식	'18. 7. 23.
인천공항 심사13과장	박동철	'18. 7. 23.
인천공항 심사14과장	김진용	'18. 1. 1.
인천공항 심사15과장	김일환	'18. 1. 1.

직 위	성 명	발령일
인천공항 정보분석과장	이문한	'17. 1. 9.
인천공항 조사과장	정성경	'18. 7. 23.
인천공항 감식과장	김기철	'18. 7. 23.
인천공항 보안관리과장	박진수	'18. 7. 23.
인천공항 정보관리과장	신병묵	'18. 1. 15.
인천공항 서울역소장	권태수	'18. 7. 23.
인천공항 도심공항소장	김호중	'18. 7. 23.
<b>&lt;서울출입국·외국인청&gt;</b>		
서울청장	손홍기	'18. 8. 6.
서울 총무과장	구본준	'18. 7. 16.
서울 관리과장	안동관	'18. 7. 16.
서울 이민특수조사대장	고석곤	'18. 1. 1.
서울 정보화센터장	주양근	'18. 7. 1.
서울 국적과장	윤상용	'18. 7. 23.
서울 난민과장	권종현	'18. 7. 23.
서울 사법과장	유태수	'18. 7. 23.
서울 조사과장	곽준태	'18. 7. 23.
서울 사무관	심미림	'18. 1. 1.
서울 사무관	구창모	'17. 1. 9.
서울 전자비자센터장	김태완	'17. 6. 12.
서울 정보화센터사무관	김시은	'15. 8. 3.
서울 정보화센터사무관	이윤주	'18. 7. 1.
서울 세종로소장	김효제	'18. 1. 1.
<b>&lt;부산출입국·외국인청&gt;</b>		
부산청장	이인규	'17. 12. 4.

직 위	성 명	발령일
부산 관리과장	오주호	'18. 9. 3.
부산 심사과장	정희정	'17. 1. 9.
부산 조사과장	손종식	'17. 9. 1.
부산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종석	'18. 4. 11.
부산 사무관	윤영주	'18. 1. 1.
부산 사무관	최철수	'17. 1. 9.
부산 김해소장	한성근	'18. 1. 1.
부산 감천소장	박관식	'18. 7. 23.
<b>&lt;인천출입국·외국인청&gt;</b>		
인천청장	안규석	'18. 2. 1.
인천 관리과장	박찬순	'18. 7. 23.
인천 심사과장	임상훈	'18. 1. 1.
인천 조사과장	배명한	'18. 7. 23.
인천 사법과장	임흥헌	'18. 1. 1.
인천 안산소장	강수근	'18. 7. 16.
인천 안산 사무관	유제경	'18. 1. 1.
<b>&lt;수원출입국·외국인청&gt;</b>		
수원청장	배상업	'18. 7. 16.
수원 관리과장	김종철	'18. 1. 1.
수원 사법과장	김기영	'18. 1. 1.
수원 조사과장	정광수	'16. 7. 20.
수원 평택항만소장	나모수	'18. 1. 1.
수원 평택소장	이달세	'18. 1. 1.
<b>&lt;제주출입국·외국인청&gt;</b>		
제주청장	김도균	'18. 1. 1.

직 위	성 명	발령일
제주 관리과장	강영우	'18. 7. 23.
제주 심사과장	신상원	'18. 7. 23.
제주 조사과장	조승래	'18. 7. 23.
<b>&lt;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서울남부사무소장	임진택	'18. 1. 1.
서울남부 관리과장	홍혁표	'16. 7. 20.
서울남부 사법과장	윤양선	'18. 7. 23.
서울남부 조사과장	전창엽	'18. 1. 1.
<b>&lt;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김해공항사무소장	정수동	'18. 1. 1.
김해공항 입국과장	김용진	'18. 7. 23.
김해공항 출국과장	조영주	'18. 1. 1.
김해공항 정보관리과장	문상봉	'17. 10. 13.
<b>&lt;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대구사무소장	김병조	'18. 7. 16.
대구 관리과장	신현세	'18. 1. 1.
대구 심사과장	신안선	'18. 7. 23.
대구 구미소장	안호근	'18. 1. 1.
대구 포항소장	권천락	'16. 2. 17.
<b>&lt;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대전사무소장	황택환	'18. 1. 1.
대전 관리과장	권택주	'18. 1. 1.
대전 조사과장	강대열	'18. 7. 23.
대전 천안소장	송정배	'18. 1. 1.
대전 천안사무관	최성희	'17. 7. 23.

직 위	성 명	발령일
대전 서산소장	이정현	'18. 7. 23.
대전 당진소장	윤형탁	'17. 1. 9.
<b>&lt;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여수사무소장	유병길	'18. 1. 1.
여수 관리과장	임선봉	'18. 7. 23.
여수 사범과장	박수완	'18. 7. 23.
여수 보호과장	곽범현	'18. 7. 23.
여수 의무과장	이어진	'16. 4. 18.
여수 광양소장	최희주	'18. 7. 23.
<b>&lt;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양주사무소장	김민수	'18. 1. 1.
양주 관리과장	신종현	'18. 7. 23.
양주 사범과장	김민경	'18. 1. 1.
양주 조사과장	장태주	'18. 7. 23.
양주 고양소장	김형욱	'18. 1. 1.
<b>&lt;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울산사무소장	이춘용	'18. 1. 1.
울산 관리과장	이왕훈	'18. 7. 23.
울산 심사과장	임동규	'18. 1. 1.
<b>&lt;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김포공항사무소장	김상진	'18. 1. 1.
김포공항 심사과장	안숙열	'18. 1. 1.
김포공항 사무관	소근희	'18. 7. 23.
<b>&lt;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광주사무소장	우석환	'18. 1. 1.

직 위	성 명	발령일
광주 사무관	김재남	'18. 7. 23.
광주 사무관	오승석	'18. 1. 1.
광주 목포소장	주면식	'18. 7. 23.
광주 무안공항소장	서윤원	'18. 1. 1.
<b>&lt;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창원사무소장	백석현	'18. 9. 3.
창원 사무관	김호진	'18. 1. 1.
창원 사무관	김경수	'18. 7. 23.
창원 거제소장	이봉규	'18. 7. 23.
창원 통영소장	문병욱	'18. 7. 23.
창원 사천소장	이병철	'18. 1. 1.
<b>&lt;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춘천사무소장	전승우	'18. 1. 1.
춘천 사무관	염동종	'17. 9. 29.
춘천 동해소장	송은옥	'18. 7. 23.
춘천 속초소장	박을균	'17. 1. 9.
춘천 고성소장	최문정	'18. 1. 1.
<b>&lt;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청주사무소장	고동기	'18. 1. 1.
청주 심사과장	김상희	'18. 7. 23.
청주 사무관	정왕교	'18. 1. 1.
<b>&lt;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gt;</b>		
전주사무소장	이정욱	'18. 1. 1.
전주 사무관	유심희	'18. 1. 1.
전주 군산소장	이진수	'18. 1. 1.

직 위	성 명	발 령 일
<b>&lt;화성외국인보호소&gt;</b>		
화성보호소장	최영길	'18. 7. 16.
화성보호소 관리과장	안복영	'18. 1. 1.
화성보호소 사범과장	이종국	'18. 7. 23.
화성보호소 보호과장	김홍규	'18. 7. 23.
화성보호소 의무과장	이도형	'17. 10. 20.
<b>&lt;청주외국인보호소&gt;</b>		
청주보호소장	김수남	'18. 1. 1.
청주보호소 관리과장	연병인	'18. 1. 1.
청주보호소 사범과장	박정호	'18. 1. 1.
청주보호소 보호과장	김호중	'18. 1. 1.
청주보호소 의무과장	박은실	'17. 4. 24.
<b>&lt;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gt;</b>		
출입국지원센터장	김태수	'17. 1. 9.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김경숙	'18. 1. 1.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신양범	'18. 7. 23.
출입국지원센터 사무관	박재현	'17. 1. 9.

## 06 | 주요 보도자료

■ 2018년 보도자료 배포 일자

월 일	주 요 내 용
1. 8.	“법무부,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평창 열기 동참 돕는다.”
1. 16.	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확대 등 단속 강화 - 특별단속지역, 2017년 24개소 → 2018년 34개소로 확대 - - 2017년 불법체류자 31,237명과 불법고용주 6,657명을 적발 -
1. 19.	“법무부, 우수인재 유치로 튼튼한 국가기반 다진다” - 프로농구선수 라틀리프, 태극마크 달고 월드컵으로... -
1. 22.	바이오정보(얼굴사진·지문) 분석으로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 2015~2017년 개명여권 사용한 사증·국적신청자 4,790명 적발 - - 위험인물 입국 차단으로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
1. 24.	2017년 출입국자·체류외국인 수 역대 최다 - 총 출입국자 80,407,702 명, 체류외국인 218만 명 -
1. 25.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 더욱 촘촘해진다 - '18. 1. 29.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전국 확대 시행 -
1. 29.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8.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사진 공모전 개최 -
2. 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집에서 들어요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인터넷 학습 기반 구축 -
2. 12.	이낙연 국무총리,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 주재 -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 -
2. 21.	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유치 늘리고 불법취업 막는다 -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와 유학생 교육의 내실화 기대 -
2. 22.	2018. 3. 1.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 26.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법무부, 민·관협의체를 통해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 - - 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 6명 신규 위촉 및 결혼이민자 육아지원 위한 가족체류 요건 완화 등 논의 -
2. 28.	영주자격 외국인,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 영주증 갱신제도, 보호 일시해제 직권 심사제도 도입,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월일	주요 내용
3. 12.	평창올림픽 기간 외국인 입국자 전월 대비 10.2% 증가 - 일평균 입국자는 전월 대비 22.0% 증가 -
3. 13.	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 개선... 국산품 수출을 더욱 촉진한다 -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내국인 일자리 창출 견인 기대 -
3. 16.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선발기준 바꾼다 - 선착순 접수/허가 방식에서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 -
3. 21.	이주여성의 '외출 수 있는 미투', 법무부가 함께 합니다. -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
3. 23.	재한외국인의 든든한 동반자,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개소 10주년 맞아 - 박상기 법무부장관, 기관표창 수여 및 상담사 격려 -
3. 26.	"손주 돌보는 결혼이민자 부모 국내체류 더 쉬워진다" -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에 기여 예상 -
4. 9.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 7명 국적증서 수여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에 즈음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국적취득 지원 - - 60세 이상 유공자 후손 배우자 면접 면제, 생계능력 인정범위 확대 등 귀화절차 완화 -
4. 9.	탐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1년 - 승객은 안전하게, 국경관리는 철저히, 대한민국의 파수꾼 -
4. 11.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받는 이민자들도, 힘내세요!"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천사공익기금 전달 -
4. 17.	2018년 3월 외국인 입국·체류 동향 - 중국인 입국자는 회복세, 외국인 유학생은 최초로 15만 명 넘어 -
4. 17.	신산업 분야 등의 외국 전문인력은 적극 유치하고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업종은 취업요건 강화 - 법무부, 로봇공학 / 산업안전관리 / 전자상거래 분야 특정활동(E-7) 비자 직종 신설 -
4. 18.	법무부, 국가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개선권고 적극 수용 - 외국인보호소 시설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 추진 -
4. 19.	해외우수인재·관광객 유치.. '전자비자센터'가 이끌겠습니다. - 개소 3주년을 맞아, 법무부에서 전자고용추천·단기취업전자비자 제도 선보여-
5. 8.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꾼다 - 인천공항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칭 -

월 일	주 요 내 용
5. 14.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성공의 징검다리 역할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 및 결혼이민자 인권증진 등 효과 두드러져 -
5. 17.	“국민이 공감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방향 찾는다” - 법무부,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 개최 -
5. 17.	인권존중, 다양성의 시대 ...‘세계인의 날’ 맞아 모두가 함께 어울리다 - 5. 18.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제11주년 기념식 개최... 유공자포상 및 문화 행사 개최 - ‘세계인주간’ 기간 중 외국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제공(23-25일)
5. 24.	법무부, 정부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8천 3백여 명 적발 - 서민 대표일자리 건설분야 집중단속 -
5. 31.	“국가 미래를 대비한 출입국·외국인 행정 펼치기로...” - 「2018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 개최 -
6. 4.	전국 이민자네트워크 대표들, 사회통합 현장을 말하다 - 법무부, 현장 맞춤 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전국 이민자 네트워크 간담회 개최 -
6. 5.	제주를 사랑한 맥그린치 신부, 대한민국 품안에 잠들다 - 법무부, 맥그린치 신부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예국민증 헌정 (사후 헌정으로는 최초) -
6. 14.	법무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국적제도개선 자문 T/F」 가동 - ‘부모양계혈통주의 시행 (1998. 6. 14.)’ 20주년 즈음 -
6. 15.	법무부,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나서 - 유흥·마사지 업종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 -
6. 18.	난민심사관 전문성과 인프라 강화의 길을 찾다 -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2018 난민 학술포럼’ 개최 -
6. 18.	법무부,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 확대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
6. 19.	올해 난민신청 18,000명 예상, 3년내 12만명 넘어설 것으로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
6. 22.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10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였습니다. - 지난 해 출입국한 국민의 절반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
6. 27.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비자신청 관련 온라인 전자고용추천제 시행 - 전문인력(C4, E1~E7 비자) 초청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 기대 -
6. 28.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확대 시행 - 출국 당일 신청하세요, 희망하는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
6. 28.	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긴급 개최 예정

월일	주요내용
6. 29.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7. 4.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한국·태국 당국간 공동 대응 추진 - 법무부, 한-태 이민청간 실무협의회 1차 회의 참석 -
7. 5.	법무부,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 1천 1백여 명 적발 - 브로커·불법고용주 등 5명 구속, 61명 불구속 -
7. 5.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 순조롭게 진행 < 법무부 고위 관계자, 제주 방문하여 상황점검 > - 예멘인과 고용주에 대한 교육 실시 예정 - - 언론 및 SNS 게재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제공 -
7. 6.	법무부, 북방경제협력 3개국 및 몽골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확대 시행 - 관광,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리 기업인들의 해당국 진출 확대 기대 -
7. 10.	법무부 차관, 제주도 예멘인 난민심사 현장 방문 - 엄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 지시, 원희룡 지사와 난민 현안 협력방안 논의 -
7. 10.	법무부, 희망나눔 릴레이로 이민자 우리사회 적응 응원 -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 초기 이민자 돕기 활동 전개 - - 출입국·외국인 홈페이지에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연재 -
7. 23.	국내 비영리기관 초청 1회성 강연 등에 대한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시행 - 학술 진흥 및 해외석학들의 입국편의 증진 기대 -
7. 31.	마라토너 예루페 등 5명 특별귀화대상자로 선정 - 법무부, 2018년 제3차 국적심의회위원회 개최 -
8. 6.	법무부-외교부 국장급 첫 인사교류
8. 10.	법무부, 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개최 - 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해소 -
8. 13.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 허위, 박찬익, 이정, 최해, 계봉우 선생 후손 등 -
8. 17.	법무부 차관, 이산가족 상봉 남북출입심사 현장 방문 - 고령자 등의 편안한 상봉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간편한 출입심사 지시 -
9. 5.	법무부, 인도네시아 해외 주재관 회의 최초로 국내 유치 - '신남방정책'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 -
9. 12.	법무부, 9월 21일부터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영주증 발급 -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
9. 12.	법무부-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 해소 논의 -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월 일	주 요 내 용
9. 20.	법무부, 40~50대 가장의 마지막 피난처 건설현장 강력단속 -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 -
9. 20.	법무부,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구체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9. 21.) - 대한민국의 법령 준수 등 일정 조건 갖춰야 영주자격 취득 -
9. 28.	등록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에게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 -
9. 28.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관련 구직 비자 제도 개선한다 - 교수, 연구원, 고급 기술자 등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점수제 구직비자(D-10) 시행 - -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9. 28.	법무부, 태국 노동부와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등 긴밀한 협력 추진 - 법무부장관·태국 노동부장관 회담 -
10. 1.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 오늘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10. 8.	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 및 우수인재에게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10. 8.	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 법무부,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국제결혼 문화 조성 지원 -
10. 26.	내·외국인의 어울마당, 걷기축제 - 2018년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실시 -
10. 26.	법무부, 우수인재 영입으로 국가경쟁력 높인다 -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감독 등 5명 특별귀화대상자로 선정 -
11. 16.	2018년 10월 외국인 입국·체류 동향 - 중국인 입국자 전년 동월 대비 34.4%, 전월대비 8.7% 증가 -
11. 19.	법무부,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다 - 교육부 및 대학교 유학생 관계자 간담회 개최 -
11. 23.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국민으로 새롭게 나다 - 2018. 12. 20.부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 취득 -
11. 23.	신남방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한다 - 법무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 -
11. 26.	12월 1일 부터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작
11. 30.	직업소개소 등 알선자 및 불법취업자 724명 적발 - 브로커·불법고용주 등 1명 구속, 25명 불구속 -

월일	주요내용
12. 10.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소비자 교육 본격 실시 -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업무협약 체결 -
12. 14.	법무부, 할머니 목숨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 준다.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결정 -
12. 17.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 업무협약(MOU) 체결 - 서울 맞춤형 외국인 정책 수립, 서울 거주 외국인 교육·상담 등 지원 활성화, 외국인 이민행정 서비스 품질의 개선 도모 -
12. 18.	법무부, 최초로 모범귀화자 선정·격려 -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
12. 19.	법무부, 개정 「국적법령」 시행 (12. 20.) -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등 -
12. 19.	“법무부,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개설·국적홍보 강화 -